

연구보고 2016-01

#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Ⅱ)

이 세 정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보고 2016-01

#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Ⅱ)

이 세 정

#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Ⅱ)

A Study on Improvement of Coincidence on  
Laws, Regulations and Constitutional Law of  
Municipal Ordinance II

연구자 : 이세정(연구위원)  
Yi, Se-Jeong

2016. 10. 31.

## 요 약 문

### I. 배경 및 목적

- 지난 1991년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출범한 이래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경제의 변화 내지 지역개발의 추진에 따른 행정의 처리체제의 변화에 부응하여 다양성을 지닌 자치법규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자치법규도 지역의 창의성을 확립하는 수단으로 정착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자치입법권은 지역의 실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자치적 결정에 의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 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제정권을 행사하여 지방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계획성을 높일 수 있음
- 그런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 ① 상위 법령과 불일치 소지가 있는 경우, ②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위임 없는 경우, ③ 헌법상 명확성·평등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용어 사용, 법문장 구성 등 형식적 완결성이 떨어지는 경우 등이 다수 발견되고 있음
- 이상과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조례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고

과다한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하여 지방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 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대상으로 한 2015년도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현행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①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②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 ③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경우, ④ 기타(용어 사용이나 문장 구성 등 형식적 완결성이 떨어지는 경우 등) 등을 발굴·정비하고, 자치입법 관리 실태에 대한 자치입법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통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여 주민의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 지방행정의 법치행정의 원칙 구현을 제고하며, 조례의 법령 및 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함

## II. 주요 내용

- 제2장부터 제4장까지에서는 2015년도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와 마찬가지로 연구대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사 대상 분야별로 사례를 발굴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제5장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자치입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 방법(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활용하여 자치입법의 문제점 및 운영 현황, 자치입법의 개선을 위한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제6장에서는 발굴 사례의 현황을 정리하고 자치입법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Ⅲ. 기대효과

- 기초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법적 안정성·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예방하고, 자치행정의 투명성·공정성 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및 형식적 완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주제어 :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자치입법, 지방규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전문가 초점집단 인터뷰

# Abstract

## I . Background and Purpose

- Since the local government system was launched in 1991, each local government has created and enforced a diverse array of their own laws and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administrative processing systems and promotion of local development as well as changes in the society and economy. The local laws and regulations are fixed as a means for establishing the creativity of each region by corresponding to new administrative demands connected to the lives of local residents.
- The legislative power of local autonomy given to the local governments is the most basic legal assurance for giving local residents decision-making power in the implementation of local laws and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status of the region. Each local government is able to exercise enactment power over ordinances and to improve the predictability and planning of local administration.
- However, there are a lot of primary ordinances which 1) provide matters contrary to higher-level laws, 2) provide for, without proper authorization by acts, matters concerning rights or

obligations of residents or punishments against them, 3) violat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larity and equity, or, 5) do not conform with the Easy-to-understand Guideline for Improvement of Laws or the Manual for Drafting Self-governing Legislation published by the Office of Legislation.

- The ordinances, including the issues outlined above, cause unnecessary legal disputes to hinder the smooth execution of local administration and to incur excessive legal action costs that have negative impacts on the budgets of local governments.
- This study aims to seek and improve those current primary ordinances which 1) provide matters contrary to higher-level laws, 2) provide for, without proper authorization by acts, matters concerning rights or obligations of residents or punishments against them, 3) violat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larity and equity, or, 5) do not conform with the Easy-to-understand Guideline for Improvement of Laws or the Manual for Drafting Self-governing Legislation published by the Office of Legislation.
- And this study aims to collect the opinions of experts on local legislation regarding the status of local legislation controls through a focus group interview, to promote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residents, to improve the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administration governed by law



in local administration, and to create a proposal to enhance the alignment of local ordinances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Constitution.

## **II. Main Content**

- In Chapter 2 through Chapter 4, as with “Study on Improvement of Coincidence on Laws, Regulations and Constitutional Law of Municipal Ordinance(2015)”, cases of subject local governments have been found by research area, and their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and the ways to improve them have been suggested.
- In Chapter 5, collect the opinions of experts on local legislation, such as public servants in charge of affairs related to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ordinances of the primary local governments, regarding issues and the operational status of local legislation and plans to improve local legislation through a focus group interview.
- In Chapter 6, summarize the status of discovered cases and to suggest plans to improve the alignment of the primary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Constitution by considering the responses gathered from the focus group interviews with experts on local legislation.

### III. Expectations

- It is expected that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residents will be ensured and compliance with laws will be enhanced.
- It is expected that arbitrary implementation of ordinances by local governments will be prevented and clarity of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 will be ensured.
- It is expected that unnecessary friction, discord and legal conflicts between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s will be prevented.
- It is expected that conformity of ordinances with laws and the constitution as well as their formal completeness will be enhanced.

➤ **Key Words** : *The Primary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Autonomy Legislation, Local Governments Regulation, The Provisory Clause of Article 22 of the Local Autonomy Act, FGI*

# 목 차

요약문 .....	3
Abstract .....	7
제 1 장 서 론 .....	15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5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20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0
2. 연구의 구성 .....	28
제 2 장 국토·교통/산업·자원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31
제 1 절 국토·교통 관련 분야 .....	31
1.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	31
2.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	74
3.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	93
4. 기 타 .....	113
제 2 절 산업·자원 관련 분야 .....	141
1.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	141
2. 기 타 .....	148

### 제 3 장 보건·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157
제 1 절 보건·복지 관련 분야 .....	157
1.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	157
2.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	162
3.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	168
4. 기 타 .....	180
제 2 절 농수축산 관련 분야 .....	195
1.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	195
2.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	224
3.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	242
4. 기 타 .....	256

### 제 4 장 문화·체육·관광/환경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271
제 1 절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	271
1.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	271
2.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	279
3.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	283
4.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	293
5. 기 타 .....	295

제 2 절 환경 관련 분야 .....	306
1.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	306
2.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	329
3.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	350
4. 기 타 .....	352
제 5 장 자치입법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	361
제 1 절 조사 개요 .....	361
1. 조사 목적 .....	361
2. 조사 설계 .....	361
제 2 절 연구 방법 .....	363
1.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의 의미 .....	363
2. 초점집단인터뷰의 실시 .....	364
제 3 절 조사 결과 .....	369
1.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인식 ...	369
2.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의견 ...	385
제 6 장 결 론 .....	391
참 고 문 헌 .....	403

## 《부 록》 연구대상 조례 목록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409
2. 경기도 평택시 .....	417
3. 강원도 강릉시 .....	429
4. 강원도 원주시 .....	439
5. 경상북도 포항시 .....	451
6. 경상남도 창원시 .....	461
7. 충청북도 청주시 .....	475
8. 충청남도 아산시 .....	487
9. 전라북도 정읍시 .....	499
10. 전라남도 여수시 .....	511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적 사무를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역적 단체가 법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sup>1)</sup>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법규 또는 자치입법이란 국가에 의해 설립된 공법상 법인이 법률상 부여된 자치권에 근거하여 자치권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사무의 규율을 위하여 발하는 법규로서,<sup>2)</sup>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능을 가진 통치단체로서 당연히 자치권의 한 내용으로서 지역사무에 관하여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자치입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sup>3)</sup>

지난 1991년 3월 26일과 6월 20일에 기초 및 광역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어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출범하여 1995년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을 뽑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sup>4)</sup>된 이래 여러 제약과 한계 속에서도 자치법규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고,<sup>5)</sup>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경제의 변화 내지 지역개발의 추진에 따른 행정의 처리체제의 변화에 부응하여 다양성을 지닌 자치법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자치법규도 지역의 창의성을 확립하는 수단으로 정착되고 있다.<sup>6)</sup>

1) 김동희, 행정법 II, 박영사, 2015, 49쪽.

2) Gem, Alfons, Kommunalrecht, Baden-Württemberg, 9. Aufl., 2005, Rn. 111; Waibel, Gerhard, Gemeindeverfassungsrecht, Baden-Württemberg, 5. Aufl, 2007, Rn. 73.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15, 32쪽 재인용.

3) 김춘환, 법률과 조례의 관계, 토지공법연구 제24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4, 255쪽.

4) 기록으로 보는 지방자치의 발자취, “지방선거”, 국가기록원.

<<http://theme.archives.go.kr/next/localSelf/vote.do?page=2>> (최종접속 : 2016. 10. 10)

5) 문상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입법권 배분 - 자치입법권의 해석론과 입법론 -, 지방자치법연구 제12권 제4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2. 12, 50-51쪽.

6) 이세정,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10. 31,

좋은 정책과 제도를 실현하려면 좋은 입법이 있어야 하며 그 중 조례는 풀뿌리 입법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sup>7)</sup> 이 점에 비추어 조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나 조례는 다른 제도에 비하여 그다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분야라고 할 수 있다.<sup>8)</sup>

지난 2014년도부터 법제처와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지방규제의 개선 없이 국민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을 체감하기 곤란하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치입법 관리에 상당한 편차가 나타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방행정의 불균형 뿐 아니라 국가행정에도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4개년 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자치입법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sup>9)</sup>

이와 같은 자치입법의 개선 노력은 그 성과가 주목을 받고 있으나,<sup>10)</sup> 법제처와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단기간에 총 243개(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sup>11)</sup>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조례를 모두 조사하여 개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중앙정부

---

15쪽.

7) 최승원 외,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군(郡)소관 조례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연구, 법제처, 2015. 11, 571쪽.

8) 이세정,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15쪽.

9) 법제처, 보도자료(조례 등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인다 - 시·도 법무담당관 대상 조례 정비방안 논의 -), 2016. 4. 27.

<<http://www.moleg.go.kr/news/mglNews?searchCondition=AllButCsfCd&searchKeyword=%EA%B0%9C%EC%A0%95+%EC%95%8C%EB%A6%BC&x=0&y=0>>

(최종접속 : 2016. 10. 1)

10) 행정자치부·법제처, 보도자료(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13,946건 정비 완료- 2015년 자치법규 정비 및 법제협력관 운영 성과보고회 개최 -), 2015. 12. 24. <<http://www.moleg.go.kr/news/report?pstSeq=71226&pageIndex=20>>

(최종접속 : 2016. 10. 25)

11) 행정자치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2015년 1월 1일 현재), 2015, 4쪽.

<[http://www.moi.go.kr/fi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55&nttId=46105](http://www.moi.go.kr/fi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55&nttId=46105)> (최종접속 : 2016. 9. 5)



의 시각에서 자치입법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한 측면도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공감을 얻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고 생각된다.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우위의 원칙을 명문으로 확인하고 있다.<sup>12)</sup>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자치입법권은 국가의 행정의 전국적인 수준에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실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자치적 결정에 의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 보장으로서<sup>13)</sup> 헌법이 지방적 의미를 갖는 법규범의 정립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것은 지방문제는 해당 지방만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는 점, 지방문제를 해당 지방민이 자기책임으로 규율하도록 함으로써 규범정립자와 규범수범자 사이의 간격을 줄이고자 함에 있다.<sup>14)</sup> 이와 동시에 국가의 입법자는 그 인식이 용인하지 않은, 지역과 사항에 있어서의 상이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는 장점도 갖는다.<sup>15)</sup>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제정권을 행사하여 지방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규율을 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계획성을 높일 수 있다.<sup>16)</sup>

12) 이세정,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15~16쪽.

13) 박영도, 자치입법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1998, 16쪽.

14) BVerfGE 33, 125, 157f.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299쪽 재인용.

15) 조성규, 법치행정의 원리와 조례제정권의 관계 - 조례에 대한 법률유보의 문제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3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5. 5, 372쪽.

16) 이기우, 부담적 조례와 법률유보에 관한 비판적 검토, 헌법학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07. 9, 353쪽.

그런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 상위 법령과 불일치 소지가 있는 경우,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sup>17)</sup>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위임 없는 경우, 불명확하거나 애매모호한 용어·문구 등을 사용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그 밖에 용어 사용, 법문장 구성 등 형식적 완결성이 떨어지는 경우나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맞지 않는 경우 등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sup>18)</sup>

자치법규는 ① 해당 지역의 정책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정책의 계속성과 체계성을 부여하고, ② 해당 지역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고 지방정치를 활성화 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③ 입법권의 분권화를 통한 위험의 분산과 지역 간 정책경쟁을 촉진시키고, ④ 국회 또는 중앙정부의 입법능력의 한계로 인한 입법공백이 발생할 경우 조례는 그 공백을 보완하는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sup>19)</sup> 이상과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조례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고,<sup>20)</sup> 과도한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하여 지방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17) 1994년 3월 개정 전 구 「지방자치법」 제20조는 “시·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조례에 형사벌칙 규정권을 위임함으로써 형사벌칙 형량의 최고한도는 정했으나 범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조례에 백지위임함으로써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1994년 3월 16일자 「지방자치법」 개정 시 이 규정이 삭제되었고(홍정선, 신지방자치법, 317쪽; 김동희, 앞의 책, 87쪽; 이세정,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40쪽),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라고 정비되었다.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159-160쪽.

18) 이세정,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16~17쪽.

19) 이기우, 지방의회운영의 자율성 향상방안 - 자치입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09, 3-5쪽. 박순중, 자치입법 처리 소요기간의 영향요인 분석-광역자치단체 조례제정안을 중심으로 -,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16. 2, 14-15쪽 재인용.

20) 이세정,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16쪽.

또한 자치입법도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의 전체법질서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sup>21)</sup>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상과 같은 조례는 궁극적으로 국법 질서의 통일성·조화성을 저해할 수 있다.<sup>22)</sup>

자치법규의 개선은 지방자치 그 자체에 대한 변혁이기도 하며, 또한 이를 통하여 국가와 지방간의 행정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련 예산 및 전문인력의 확보의 측면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체계적인 정비는 보다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대상으로 한 2015년도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현행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①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②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 ③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헌법상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경우 등에 반하는 경우, ④ 기타(용어 사용이나 문장 구성 등 형식적 완결성이 떨어지는 경우나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조례 사례) 등을 발굴·정비하고, 자치 입법 관리 실태에 대한 자치입법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통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여 주민의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 지방행정의 법치행정의 원칙 구현을 제고하며, 조례의 법령 및 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21) 김동희, 앞의 책, 82쪽; 문상덕, 조례와 법률유보 재론, 행정법연구 제19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7. 12, 3쪽.

22) 이세정 외,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 방안, 법제처, 2013, 개조식 요약서, i ~ ii; 이세정,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16쪽.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연구기간 및 예산상의 제약으로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표와 같이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원칙적으로 시(市)를 조사 대상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자치구(自治區) 1개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선정을 위해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 당 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총 1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 개별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주요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sup>23)</sup>

연번	권역	기초지방자치단체명	특성
1	수도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치·금융
2		평택	항만물류(도농복합도시)
3	강원권	원주	군사
4		강릉	관광(도농복합도시)
5	영남권	포항	공업(특정시)(도농복합도시)
6		창원	공업
7	충청권	청주	교육(특정시)
8		아산	온천도시(도농복합도시)
9	호남권	정읍	농업(도농복합도시)
10		여수	해양(도농복합도시)

23) 조사대상 기초지방자치단체 선정 시 2015, 2016 법제처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조례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연구” 대상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도록 고려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 연구는 2015년도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와 마찬가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 주민의 복리증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① 국토·교통 관련 분야, ② 산업·자원 관련 분야, ③ 보건·복지 관련 분야, ④ 농수축산 관련 분야, ⑤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⑥ 환경 관련 분야로 나누어 해당 조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사 대상 분야별 조례의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기초지방자치단체	분 야	연구대상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토·교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7건
	산업·자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등 6건
	보건·복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등 43건
	농수축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등 2건
	문화·체육·관광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정금징수조례」 등 11건
	환 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등 10건
<b>소계 89건</b>		
경기도 평택시	국토·교통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 등 45건
	산업·자원	「평택시기업애로해소음부즈만운영조례」 등 14건

제1장 서론

기초지방자치단체	분 야	연구대상 조례
	보건·복지	「평택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등 46건
	농수축산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등 10건
	문화·체육·관광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 등 18건
	환 경	「평택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등 22건
<b>소계 155건</b>		
강원도 강릉시	국토·교통	「강릉시 건설기계 관리조례」 등 26건
	산업·자원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 10건
	보건·복지	「강릉시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1건
	농수축산	「강릉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등 24건
	문화·체육·관광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 등 25건
	환 경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2건
<b>소계 148건</b>		
강원도 원주시	국토·교통	「원주시 개발부담금채납정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등 30건
	산업·자원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 15건
	보건·복지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등 38건
	농수축산	「원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8건
	문화·체육·관광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 조례」 30건
	환 경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26건
<b>소계 167건</b>		

기초지방자치단체	분 야	연구대상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국토·교통	「포항시 건설공사의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4건
	산업·자원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6건
	보건·복지	「포항시 건강도시 조성 조례」 등 39건
	농수축산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등 23건
	문화·체육·관광	「포항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22건
	환 경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등 28건
<b>소계 162건</b>		
경상남도 창원시	국토·교통	「마산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등 55건
	산업·자원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등 14건
	보건·복지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 등 58건
	농수축산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등 20건
	문화·체육·관광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41건
	환 경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등 18건
<b>소계 206건</b>		
충청북도 청주시	국토·교통	「청원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3건
	산업·자원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5건
	보건·복지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등 56건

제1장 서론

기초지방자치단체	분 야	연구대상 조례
	농수축산	「청원군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등 15건
	문화·체육·관광	「청주시 1인 1책 퍼내기 운동 지원 조례」 등 38건
	환 경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25건
<b>소계 192건</b>		
충청남도 아산시	국토·교통	「아산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등 38건
	산업·자원	「아산시 기술연구집단지단화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5건
	보건·복지	「아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52건
	농수축산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등 9건
	문화·체육·관광	「아산 코미디홀 설치·운영 조례」 등 23건
	환 경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등 24건
<b>소계 161건</b>		
전라북도 정읍시	국토·교통	「정읍시 건축 조례」 등 29건
	산업·자원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등 9건
	보건·복지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9건
	농수축산	「정읍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40건
	문화·체육·관광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37건
	환 경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20건



기초지방자치단체	분 야	연구대상 조례
<b>소계 174건</b>		
전라남도 여수시	국토·교통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등 36건
	산업·자원	「여수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조례」 등 16건
	보건·복지	「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등 45건
	농수축산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등 17건
	문화·체육·관광	「여수민속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등 27건
	환 경	「여수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등 17건
<b>소계 158건</b>		
<b>총계 10개 기초자치단체 조례 1,612건</b>		

※ 조사 대상 조례는 2016. 1. 15.자를 기준으로 함

※ 2015년도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와 마찬가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산하기관 등 조직 설치 및 운영, 지방의회 설치 및 운영, 공무원제도, 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함

이 연구는 앞서 언급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15일부터 2016년 4월 14일까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중앙부처 소관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같거나 유사한 조례를 보유한 기초지방자치단체,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를 표를 이용하여 정리했고, 이를 부록으로 제시했다.

조사 분석 대상 조례의 선정기준일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시행일을 그 기준으로 했으며, 연구의 시작단계인 2016년 1월 15일을 기준

으로 하였지만, 추후 해당 조문이 개정된 조례의 경우에는 개정 조례를 고려하여 분석했다.

이후 정비의 필요가 있는 사례를 2015년도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와 마찬가지로 크게 ①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②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 ③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경우, ④ 기타(용어 사용이나 문장 구성 등 형식적 완결성이 떨어지는 경우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맞지 않는 조례 사례)로 나누어 발굴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2015년도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와 마찬가지로 법이론 및 실무 관련 전문가의 개별 자문, 전문가회의 및 워크숍 등을 통하여 사례 발굴의 적정성 검토와 개선방안의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를 도모했다.

다만, 2015년도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는 글자 그대로 조례 조항의 해석이나 적용의 범위 내에서 위법하거나 위헌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단지 제거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합법성·합헌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요건을 추가하여 적극적으로 그 조항의 내용을 합법적·합헌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이 연구는 해당 조례 조문이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충실하여 합법적·합헌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의 사전적·예방적 연구의 일환으로 해당 조례 조항의 위법성·위헌성의 내용과 정도 등을 검토하는데 그친다.<sup>24)</sup>

24) 박영도 외,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정비 방안 연구, 법제처, 2012, i.; 이세정 외,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 방안, 법제처, 2013, 34쪽.

또한 이 연구는 2015년도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2015년도 선행연구에서는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논리적 타당성을 뒷받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를 검토하고 정비의 필요가 있는 사례를 발굴하는 방법의 연구를 수행했으나, 이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이론적 연구는 수행하지 아니하고 2015년도 선행연구에서의 조례 정비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정비의 필요가 있는 사례를 곧바로 발굴하는 방법의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sup>25)</sup>

다만, 이 연구는 2015년도 연구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그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4조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래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는 구분되고 있으므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가 충돌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상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의 구분이 명백하지 않고 동일한 사무에 관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중첩적으로 권한을 갖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질서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인데,<sup>26)</sup> 기초지방자치단체

25)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논리적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설명은 이세정,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2015 제2장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26)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317쪽;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15, 186쪽.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것이 자치조례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그 효력이 없지만,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여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사무처리의 모순·저축을 방지하고 지방자치행정의 전체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으로서<sup>27)</sup> 효력규정으로 해석하여 시·도 조례에 반하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무효가 된다<sup>28)</sup>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연구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 반하는 사례 역시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sup>29)</sup>

## 2. 연구의 구성

이상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2장부터 제4장<sup>30)</sup>까지에서는 2015년도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와 마찬가지로 연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대상 분야별로 ①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②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 ③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헌법상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경우, ④ 기타(용어 사용이나 문장 구성 등 형식적 완결성이 떨어지는 경우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

---

대판 2006. 10. 12, 2006추38; 대판 2000. 11. 24, 2000추29.

27)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II, 법문사, 2015, 126쪽; 김동희, 앞의 책, 85쪽.

28) 김동희, 앞의 책, 85쪽;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317쪽;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15, 160쪽; 한귀현, 독일 지방자치법상의 조례론에 관한 소고 - 그 역사적 구조를 중심으로 -, 독일학연구 제14권, 동아대학교 독일학연구소, 1998, 194쪽.

29)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는 그 발굴 사례의 수가 많지 않아 관련 문제 사례에 포함하여 정리했다.

30) 2015년도 선행연구인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와 마찬가지로 보고서 장, 절 구성의 편의상 국토·교통 관련 분야와 산업·자원 관련 분야(제2장), 보건·복지 관련 분야와 농수축산 관련 분야(제3장),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와 환경 관련 분야(제4장)를 각각 1개의 장으로 묶은 뒤, 다시 분야별로 절로 나누어 조례 정비사례를 발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준」,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맞지 않는 조례 사례) 등을 중심으로 사례를 발굴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자치입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 방법(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활용하여 자치입법의 문제점 및 운영 현황, 자치입법의 개선을 위한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제2장부터 제4장까지에서 발굴한 사례의 현황을 정리하고, 제5장에서의 자치입법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 내용 및 전문가 초점 집단 면접 조사 참석이 곤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별 의견 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고려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 2 장 국토·교통/산업·자원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제 1 절 국토·교통 관련 분야

#### 1.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1) 평택시건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제4조 관련<sup>31)</sup>

#### 【관련 조례 및 조문】

평택시건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p><b>제 4 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b>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 【관련 법령 및 조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p><b>제23조(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b>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p>

31) 이 사례는 이세정,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이하 “2015 연구”라 한다) 중 “대구광역시 건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관련” 사례(63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이 보고서에서 검토하는 사례 중 2015년 연구에서 검토한 사례와 유사한 사례의 경우 검토이유 및 정비방안의 내용이 2015년 연구와 같거나 유사할 수 있음을 밝힌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장을 제외한다. 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는데 외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② 관할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대행법인등을 지정한 때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경찰서 또는 시·군·구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대행업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은 5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행법인등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공탁을 하여야 하며,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대행업지정증을 교부하는 때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1) 검토의견

- 「평택시건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제4조 제1항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평택시건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의 상위법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에서는 대행법인등의 대

행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장에게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 등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자칫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아산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정읍시 견인자동차운영 조례」 제4조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 4 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 5 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의 견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아산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 7 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대행법인 등의 업무의 대행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②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 등을 지정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대행법인 등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정읍시 견인자동차운영 조례】 제 4 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의5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등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경상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 4 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규칙 제13조의5 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정비방안

- 「평택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제4조를 삭제한다.

**【 평택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제 4 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 <u>도로교통법 시행규칙</u> 」제23조 제1항 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삭 제>

현 행	개정안
<p><u>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u></p> <p><u>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u></p>	

(2) 평택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2조 제3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평택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p><b>제 2 조(과태료의 부과기준)</b> ①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p> <p>② 제1항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토지가격은 과태료 부과 당해연도의 당해토지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p> <p>③ 과태료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p><b>제17조(과태료의 부과)</b>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p>③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국세징수법
<p><b>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b>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p> <p>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p>

국세징수법
<p>2. <u>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u></p> <p>3. <u>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u></p> <p>4. <u>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u></p> <p>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p> <p>6. <u>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u></p> <p>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p> <p>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 또는 세액의 분할 고지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납세자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p>

1) 검토의견

- 「평택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2조 제3항에서는 “과태료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3항에서는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사업에 현

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④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 ①부터 ④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태료를 분할하여 납부하지 못하도록 한 「평택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2조 제3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3항에 반할 수 있다.

2) 정비방안

- 「평택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2조 제3항을 삭제한다. 과태료의 분할 납부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되므로 조례에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sup>32)</sup>

32)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 28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 제2조 제1항은 상위법령을 단순반복 규정한 정도의 의미밖에 없을 수 있으므로 이들 조항을 둘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p><b>제1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b> ① 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8과 같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횡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8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p>

**【 평택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제 2 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4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과태료의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p> <p>② 제1항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토지가격은 과태료 부과 당해연도의 당해 토지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p> <p>③ 과태료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p>	<p>제 2 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44조제1항의 경우: 1천만원</li> <li>2. 법 제144조제2항의 경우: 5백만원</li> </ol>

(3)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제29조의2 관련<sup>33)</sup>

【관련 조례 및 조문】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p><b>제2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일괄협의회)</b> 법 제61조의2 및 영 제59조의2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평택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를 준용한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p><b>제61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b> ①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61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u>                  ② <u>제61조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u></p>	<p><b>제5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b> ①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1조의2에 따라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인가·허가·승인·면허·협의·해제·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의 협의를 위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u>                  ②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협의회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을 법 제61조제3</u></p>

33)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18조 관련” 사례(67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p>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인·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61조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p>

1) 검토의견

-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제29조의2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에 따른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평택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실무중합심의회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평택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민원실무중합심의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와는 그 입법취지를 달리하고 민원의 성질도 다른 것인바 개발행위복합민



원 일괄협의회를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률에 부합하지 아니하다.

## 2) 정비방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4) 포항시 건축 조례 제6조 제1항 단서, 제3항 단서 및 제5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포항시 건축 조례
<p><b>제 6 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u>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하여 구성한다.</u></p> <p>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3명 이내의 시의원을 포함하여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u>다만,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심의를 건축위원회와 동시에 개최할 경우에 필요한 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별도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p>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한다.</p> <p>⑤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⑦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p><b>제 5 조의5(지방건축위원회)</b>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각 호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p>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위원의 임명·위촉 기준 및 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 가.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할 것
  -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할 것

2. 심의등에 관한 기준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것
  - 나. 삭제 <2014.11.11.>
  - 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목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릴 것
  - 마. 삭제 <2014.11.28.>
  - 바.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다목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알릴 것
  - 사.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것
  - 아.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
  - 자.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것
  - 차. 건축구조 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것(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 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1) 검토의견

- 「포항시 건축 조례」 제6조 제2항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5 제5항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례 제6조 제2항은 상위법령의 규정과 맞지 아니하다.

- 「포항시 건축 조례」 제6조 제6항에서는 공무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6항 제1호 마목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역시 상위법령의 규정과 맞지 아니하다.
- 「포항시 건축 조례」 제6조 제1항 단서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하여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위원회의 특정 회의 때 위원을 추가로 구성하는 것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일반적인 입법례에 비추어 보면 매우 이례적이고, 해당 위원은 해당 회의에만 참석하는 위원인지, 임기가 있는 위원인지 불명확하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라도 특정 회의를 위해서 위원을 추가로 구성하는 것은 매우 어색하다.
- 같은 조례 제6조 제3항 단서에서는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심의를 건축위원회와 동시에 개최할 경우 필요한 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별도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심의를 건축위원회와 동시에 개최할 경우”가 법문상 무슨 의미인지 불명확할 뿐 아니라, 이 경우에도 필요한 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별도로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도 위에서 설명한 제6조 제1항 단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sup>34)</sup>

34) “다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를 건축위원회 심의와 동시에 개최할 경우 출석위원의 4분의 1 이상은 교통전문가 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포항시 건축 조례」

- 그 밖에 같은 조례 제6조 제5항에서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은 자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 「청주시 건축 조례」 제4조 제3항 제2호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청주시 건축 조례】 제 4 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5조의5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8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영 제5조의5제5항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과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및 건축·소방·도시계획·도시설계·교통·조경·문화·예술·색채·환경·역사·방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른 위원회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와 4개 이상 중복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제2항 단서도 마찬가지로의 문제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정비방안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특정회의 때 관계 전문가를 추가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는 것 보다는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위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포항시 건축 조례」 제6조 제5항은 삭제한다.

**【포항시 건축 조례 정비안】**

현 행	개정안
<p><b>제 6 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u>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하여 구성한다.</u></p> <p>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u>위원 중</u>에서 호선한다.</p>	<p><b>제 6 조(구성)</b> ① ----- ----- ----- <u>&lt;단서 삭제&gt;</u></p> <p>② ----- <u>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u></p>





(5) 포항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4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포항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3 조(구성)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당사자간의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포항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포항시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관련 법령 및 조문】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p><b>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b></p> <p>①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li> <li>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li> <li>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li> <li>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li> <li>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li> <li>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li> <li>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li> </ol> <p>③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p> <p>④ <u>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u></p>	<p><b>제67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b> ① 법 제5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li> <li>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li> <li>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li> <li>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li> <li>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li> </ol> <p>②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p> <p>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p>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p>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p>	

1) 검토의견

- 「포항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4항에서는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조례의 상위 법률인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해서 직접 규정하거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한바, 조례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반할 뿐 아니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도 문제가 있다.
- 한편, 「주택법」은 2016년 1월 19일자로 전부개정되어(법률 제13805호, 2016년 8월 12일 시행) 종전에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2015년 8월 11일자 「공동주택관리법」 제정(법률 제13474호, 2016.8.12.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관

리법」 제71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도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sup>35)</sup>

2) 정비방안

- 포항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4항을 삭제한다.

**【 포항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b>제 3 조(구성) ①~③ (생략)</b>  <u>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 한다.</u>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b>제 3 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b>  <u>&lt;삭 제&gt;</u></p>

35) 「포항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이하에 맞게 전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

(6) 청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 제2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p><b>제 3 조(과태료)</b> ① 청주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도로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li><li>2.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li><li>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li><li>4. 그 밖에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li></ol> <p>② 과태료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은 「지방자치법」 제14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도로법 시행령
<p><b>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b>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1) 검토의견

-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 제2항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과태료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에서는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 가목·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과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할 소지가 있다.

2) 정비방안

-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도록 한 부분은 삭제한다.

**【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b>제 3 조(과태료)</b> ① 청주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1. 도로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p>	<p><b>제 3 조(과태료)</b> ① (현행과 같음)</p>

제 2 장 국토·교통/산업·자원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현행	개정안
<p>행위</p> <p>2.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p> <p>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p> <p>4. 그 밖에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p> <p>② 과태료 부과·징수는 <u>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은 「지방자치법」 제14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p>	<p>② <u>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u></p> <p>③ (현행과 같음)</p>

(7)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8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p><b>제18조(지정개발자의 정비 사업비 예치 등)</b> ① <u>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인가서의 정비 사업비 100분의 20으로 한다.</u></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시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li><li>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li><li>3. 「주택법」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한 보증서</li><li>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li></ol>

【관련 법령 및 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p><b>제29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b> ① <u>시장·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은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에 이를 반환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p>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5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정비사업비의 10퍼센트로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치금의 예치통지를 받은 지정 개발자는 지체 없이 당해 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시·군의 금고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법」 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1) 검토의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시장·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예치금은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에 이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서는 예치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비사업비 예치금의 예치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이고, 도조례를 반복하여 규정하는 차원에서 청주시 조례에서 규정하더라도 충청북도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그대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는 예치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제18조 제1항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을 정비사업비의 10퍼센트로 규정한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5조 제1항과 달리 사업시행인가서의 정비 사업비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어 도조례에도 반하는 문제가 있다.

2) 정비방안

- 정비사업비 예치금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5조에 따르도록 하거나 도조례를 반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면 도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여 규정한다.

**【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제18조(지정개발자의 정비 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인가서의 정비사업비 100분의 20으로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시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p> <p>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p> <p>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p>	<p>제18조(지정개발자의 정비 사업비 예치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비 예치 등에 관해서는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5조에 따른다.</p>

제 2 장 국토·교통/산업·자원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현 행	개정안
<p><u>국채 또는 지방채</u>                      3. 「주택법」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                      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한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                      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p>	

(8)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3조 제3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p><b>제43조(공공관리의 적용범위 및 비용부담 등)</b> ① 시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시까지 공공관리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비용</li> <li>2. 위탁관리 수수료</li> </ol> <p>②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77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 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77조의4제1항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 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p><b>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지원과 정보공개)</b> ① <u>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투명 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 “공공지원”이라 한다)하거나 주택공사등, 신탁업 자,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공공지원하는 시장·군수 및 공공지원을 위탁 받은 자(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업무 지원</li> <li>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위탁관리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에 한한다)</li> <li>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li> </ol>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제30조제4호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 대책을 포함한다) 수립에 관한 지원
5.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6.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③ 시장·군수는 위탁관리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조사,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자의 행위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은 시장·군수에게 있다.
  - ④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군수가 부담하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추진위원회가 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1.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항 중 시공자의 공사비
    2.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3.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⑦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제16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본다.
    1. 조합이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⑨ 제8항제1호의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1) 검토의견

-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공공관리’를 신청할 수 있고, 시장은 신청을 받으면 같은 법 제77조의4 제1항의 기관 중에서 공공관리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 같은 조례 제43조 제3항에서는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의 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제4항에서는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군수가 부담하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공관리 위탁의 경우에도 그 비용은 시장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이 위탁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이 조례 제43조 제3항 부분은 상위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다.

## 2) 정비방안

-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3조 제3항 중 조합이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삭제한다.

【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제43조(공공관리의 적용범위 및 비용부담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시까지 공공관리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p> <p>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비용</p> <p>2. 위탁관리 수수료</p> <p>②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77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77조의4제1항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p>	<p>제43조(공공관리의 적용범위 및 비용부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한다.</p>

(9)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5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p><b>제15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b>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영 제25조제4항의 각 호로 한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p><b>제25조(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 ①~③ (생략)</b></p> <p>④ <u>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 · 용도지구 또는 도시 ·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u></li> <li>2. <u>가구(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u></li> <li>3. <u>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u></li> <li>4. <u>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li> <li>5. <u>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u></li> <li>6. <u>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u></li> <li>7. <u>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u></li> </ol>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8.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10.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
  14.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⑤ · ⑥ (생략)

1) 검토의견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5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각 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조례에서 “시행령 ~에 따른 ~은 시행령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조례의 법문으로는 매우 어색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단서에서는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례 제15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14호의 경우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상위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다.

2) 정비방안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제15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영 제25조제4항의 각 호로 한다.</p>	<p>제15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p>

(10) 아산시 건축 조례 제18조 관련<sup>36)</sup>

【관련 조례 및 조문】

아산시 건축 조례
<p><b>제2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b>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서 개최할 수 있으며,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p><b>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b> ①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u></p> <p>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이 요구되는 법</p>	<p><b>제1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b></p> <p>① (생략)</p> <p>② 허가권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p> <p>③ 허가권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서 관계 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p>

36)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18조 관련” 사례(67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p>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10조제 7항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p>	<p>⑤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는 그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u>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u></p>

1) 검토의견

- 「아산시 건축 조례」 제22조에서는 「건축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서 개최할 수 있으며, 민원실무종합심의를 개최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실무종합심의회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와는 그 입법취지를 달리하고 민원의 성질도 다른 것인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실무종합심의를 개최한 경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한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은 2015.8.11., 법률 제13459호(전부개정)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6.2.12.부터 시행 중인바, 「아산시 건축 조례」에서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는 것은 법률 개정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아니한 문제도 있다.

## 2) 정비방안

- 「아산시 건축 조례」 제22조에서 「여수시 건축 조례」 제17조 등을 참고하여 「건축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 참고 입법례

- 【여수시 건축 조례】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건축법상 규정된 의제·검토 법령에 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회 개최보다 관계부서 간 서면협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며, 간사는 건축 관련 업무담당자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담당자가 된다.
- ④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협의대상 부서의 담당 또는 담당자로 한다.
- ⑤ 협의회의 회의는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 ⑥ 그 밖에 협의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1) 정읍시 건축 조례 제15조 제3항 관련<sup>37)</sup>

【관련 조례 및 조문】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p><b>제1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b>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자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와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li> <li>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건축사가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li> <li>3.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li> <li>4.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li> <li>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li> </ol> <p>③ 제2항의 업무대행자 지정 및 방법은 관내 건축사중 시장이 지정한 자가 대행하도록 한다.</p> <p>④ ~ ⑤ (생략)</p>

【관련 법령 및 조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p><b>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b>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p>	<p><b>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b>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p>

37)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23조 제1항 관련” 사례(71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p><u>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p>	<p>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u>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u></li> <li>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p>

1) 검토의견

- 「정읍시 건축 조례」 제15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의 업무대행자 지정 및 방법은 관내 건축사중 시장이 지정한 자가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후단 및 제1호에서는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선정할 때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아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읍시 건축 조례」 제15조 제2항처럼 업무대행자 지정은 관내 건축사 중 시장이 지정한 자가 대행하도록 하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가 업무대행자로 지정될 수 있어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반할 소지가 있다.

2) 정비방안

- 시장이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한 부분을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맞게 해당 건축물의 설계건축사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대행하도록 명시한다.

**【 정읍시 건축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제1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②(생략)</p> <p>③ 제2항의 업무대행자 지정 및 방법은 관내 건축사중 시장이 지정한 자가 대행하도록 한다.</p> <p>④ ~ ⑤ (생략)</p>	<p>제1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②(현행과 같음)</p> <p>③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의 대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인 건축사를 업무대행자로 한다.</li> <li>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0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는 해당 공사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업무대행자로 한다.</li> </ol> <p>④ ~ ⑤ (현행과 같음)</p>



## 2.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제3항 관련

####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p><b>제 2 조의2(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b> ① 구청장은 공영노상주차장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차량운행제한장치가 설치된 해당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당해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p> <p>③ 삭제 &lt;2007.06.01.&gt;</p> <p>④ 제2항에 따라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는데 드는 비용(이하 “해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p> <p>1.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해제하는 경우 : 해제비용 미 징수</p> <p>2.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제하는 경우 : 해제비용 3만원 징수 (사전고지 후 해제)</p>

####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의2 제1항에서는 영등포구청장은 공영노상주차장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주차장법령에서는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거나 조례로 위임한 바 없는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 2) 정비방안

-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가 주차요금 징수를 위해서 필요최소한의 조치라고 한다면 상위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포항시 건축 조례 제12조제2항 단서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포항시 건축 조례
<p><b>제1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b>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 시장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 라 한다)를 건축사(이하 “업무대행 건축사” 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대행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전 현장조사업무.</li> <li>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신청전 현장조사업무.</li> <li>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전 현장조사업무.</li> <li>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li> </ol> <p><b>②</b> <u>업무대행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사람으로서 업무정지처분이 없거나 최근 2년간 업무정지처분을 합산하여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선임된 업무대행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건축사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건축사로의 재선임은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최근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통산하여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u></li> <li>2. <u>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u></li> </ol> <p><b>③</b>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신청서를「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록하여야 하고, 협회는 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신청을 받아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단, 「주택법」에 따라 「건축법」이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포항시 건축 조례
<p>④ 시장은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따라 제1항제4호에 대한 현장조사업무를 대행(「건축사법」제28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업무정지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게 할 수 있으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지정하는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시장(市長)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p><b>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b>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p> <p><b>제109조(벌칙)</b>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p>	<p><b>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b>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li> <li>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p>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p>를 거짓으로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b>제113조(과태료)</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 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li> <li>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 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li> <li>3.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li> </ol> <p>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 지 아니한 공사감리자</li> <li>2. <u>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u></li> <li>3.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li> <li>4.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li> <li>5.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 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모니터링보 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니 터링보고서를 제출한 건축주 또는 소유자</li> <li>6.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 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li> </ol>	<p><u>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u></p>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7. 제79조제5항을 위반한 자 8.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삭제 <2009.2.6.> ⑤ 삭제 <2009.2.6.>	

1) 검토의견

- 「포항시 건축 조례」 제12조 제2항 본문에서는 “업무대행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사람으로서 업무정지처분이 없거나 최근 2년간 업무정지처분을 합산하여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건축법령에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의 경우 ①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②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이라는 제한만 두고 있을 뿐, 영업정지처분과 관련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영업정지처분이 없거나 최근 2년간 업무정지처분을 합산하여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만 업무대행 건축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건축사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

- 또한 「포항시 건축 조례」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는 선임된 업무대행건축사가 ① 최근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통산하여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같은 조례 제12조 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업무대행건축사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건축사로의 재선임은 1년이 경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업무대행건축사 자격박탈 및 재선임 금지는 업무대행건축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상위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한 것으로 ‘자격박탈 및 재선임 금지’에 관한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 2) 정비방안

- 영업정지처분이 없거나 최근 2년간 업무정지처분을 합산하여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만 업무대행 건축사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한 「포항시 건축 조례」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업무대행건축사의 자격박탈 및 재선임 금지에 관해서 규정한 같은 항 단서, 각 호는 삭제한다.

【 포항시 건축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제1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 시장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 라 한다)를 건축사(이하 “업무대행 건축사” 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대행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전 현장조사업무.</li> <li>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신청전 현장조사업무.</li> <li>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전 현장조사업무.</li> <li>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li> </ol> <p>② 업무대행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사람으로서 업무정지처분이 없거나 최근 2년간 업무정지처분을 합산하여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선임된 업무대행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p>	<p>제1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p><u>건축사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건축사로의 재선임은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u></p> <p>1. <u>최근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통산하여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u></p> <p>2. <u>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u></p> <p>③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신청서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록하여야 하고, 협회는 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신청을 받아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단, 「주택법」에 따라 「건축법」이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④ 시장은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따라 제1항제4호에 대한 현장조사업무를 대행(「건축사법」제28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업무정지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게 할 수 있으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지정하는 건축사로 하</p>	<p>② ~ ④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p>

현 행	개정안
<p>여금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시장(市長)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p>	

(3) 청주시 주차장 조례 제21조 제4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청주시 주차장 조례
<p><b>제21조(과징금 처분)</b>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9와 같다.</p> <p>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분명하게 적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④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고 <u>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u></p> <p>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p><b>제24조의2(과징금처분)</b> ①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b>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b> ① 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p> <p>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규모, 노외주차장 설치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p>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p>횡수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그 5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p> <p><b>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b>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p> <p>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횡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6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p>

1) 검토의견

- 「청주시 주차장 조례」 제21조 제4항에서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장법」 제24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과징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이지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아니므로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 제3항, 「정읍시 주차장 조례」 제21조 제4항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징수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정읍시 주차장 조례】 제21조(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에 따른 과징금가감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과징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 정비방안

- 「청주시 주차장 조례」 제21조 제4항 중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한 부분은 삭제한다.

【 청주시 주차장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b>제21조(과징금 처분)</b>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9와 같다.</p> <p>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분명하게 적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④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p> <p>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b>제21조(과징금 처분)</b>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발급한다.</p>

(4)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sup>38)</sup> 제13조 제2항 관련<sup>39)</sup>

【관련 조례 및 조문】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p><b>제13조(한옥 등의 보존기간)</b> ① 한옥의 소유자 등은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존기간 동안 임의로 철거·멸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제16조에 따라 한옥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지원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날부터 5년</li><li>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li></ol> <p>② <u>제1항의 보존기간 중에 등록된 한옥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변경된 소유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u></p> <p>③ 한옥의 소유자 등은 한옥수선 등의 보조지원을 받은 한옥 등을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에 마치못해 철거·멸실할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p>

1) 검토의견

-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에서는 보존기간 중에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한옥의 소유권

38) 한편,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서는 “한옥수선 등의 보조신청을 한 사람은 조례 제17조제2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3항 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통지를 받기 전에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상위 조례에 반할 뿐 아니라, 법률의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문제가 있다.

39)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관련” 사례(82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변경된 소유자가 승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옥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 2) 정비방안

- 한옥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옥의 소유권 변경에 따른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 상위법률에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5) 정읍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sup>40)</sup>

【관련 조례 및 조문】

정읍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p><b>제 4 조(자동차표지 발급 등)</b>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② <u>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중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표지 미 부착 차량에 임산부가 탑승 시에는 예외로 한다.</u></p>
<p><b>제 6 조(위반차량 조치)</b>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와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하거나 견인조치 할 수 있다.</p>

1) 검토의견

- 「정읍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서는 상위법률의 근거 없이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중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표지 미 부착 차량에 임산부가 탑승 시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6조에서는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와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하거나 견인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0)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2항 및 제7조 관련” 사례(88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 금지, 위반 자동차에 대한 다른 장소로의 이동 주차, 견인조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려면 상위법률의 위임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 2) 정비방안

-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임산부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면 상위법률에 위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15.7.29.] [법률 제13109호, 2015.1.28., 일부개정]) 제17조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의 경우 주차 금지 및 단속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를 참고하여 이 법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제도를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sup>41)</sup>

### 참고 입법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

41) 이세정,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90쪽.

### 참고 입법례

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1)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8조 제4호 관련<sup>42)</sup>

**【관련 조례 및 조문】**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p><b>제 8 조(사용허가의 취소)</b>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6조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li> <li>2.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li> <li>3. 제7조를 위반한 경우</li> <li>4. <u>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u></li> </ol>

1) 검토의견

-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8조 제4호에서는 원주시 공용차고지의 사용허가 취소 사유의 하나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 ‘명확성의 원칙’이란 법률에서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를 가능한 명확하게 규정하여 일반국민이 어떠한 행위가 법에서 금지되고 또한 그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이 과해지는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sup>43)</sup>을 말하는데, 명확성의 요청은 규범 자체의 명확성, 적용가능성, 수범자에 대한 인식가능성을 요구하는 것이다.<sup>44)</sup>

42)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호 관련” 사례(94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43)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 2014, 479쪽.

44) 박영도 외, 앞의 보고서, 54쪽; 이세정, 조례의 법령 및 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 조례의 내용은 충분히 명확하여야 하고 자명하여야 한다.<sup>45)</sup> 조례의 수범자가 그 규범내용을 인식할 수 없으면, 그 조례는 명확성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sup>46)</sup>
- 통상 헌법상의 명확성의 정도는 개개의 법률이나 법 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조례 규정이 부담적·침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해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sup>47)</sup> 사용허가의 취소를 비롯한 각종 행정처분을 규정하는 조례에서도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 적용 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8조 제4호처럼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는 매우 불명확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사유로서 자칫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가져오고 주민의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소지가 있다.
-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호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8 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연구, 95쪽.

45)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344쪽; 이세정, 조례의 법령 및 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95쪽.

46) R. Stober, Kommunalrech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3. Aufl., 1996, S. 272; BVerfGE 5, 31 f.; 22. 346.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344쪽 재인용.

47) 이세정 외,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 방안, 법제처, 2013, 108쪽.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 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이 경우 6개월 유예기간을 줄 수 있고, 즉시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입주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제6조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4. 제7조에 따른 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6. 임금 미지급 등 경영상 불안정으로 안전운행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2) 정비방안

-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취소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8조 제4호를 삭제하여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예방하고, 주민의 예측가능성·법적안정성을 제고한다.

(2) 평택시 도시재정비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호 관련<sup>48)</sup>

【관련 조례 및 조문】

평택시 도시재정비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p><b>제 7 조(위원의 위촉해제)</b>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위원이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li><li>2. 특별한 사정이 없이 3회 이상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나 정당한 회의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li><li>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li><li>4. 품위를 해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li><li>5. 회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협의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li><li>6. 협의회에서 취득한 정보를 투기 등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li></ol>

1) 검토의견

- 「평택시 도시재정비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 4호에서는 “품위를 해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평택시 도시재정비촉진 사업협의회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품위를 해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사유로서 매우 불명확하고 주관적·가치 비중립적이어서 주민의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자의적 범집행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48)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 제3호 관련” 사례(318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2) 정비방안

- 주민의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 도모를 위하여 평택시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협의회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평택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관련<sup>49)</sup>

【관련 조례 및 조문】

평택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p><b>제 4 조(부담금의 반환 등)</b> ①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괴하지 아니하며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li><li>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li><li>3. <u>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u></li></ol> <p>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p> <p>③ 도로복구에 소요된 비용증감에 따른 정산은 상·하반기 연2회 반기별로 정산할 수 있다.</p>

1) 검토의견

- 「평택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의 환급 사유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 여기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는 매우 불명확한 사유로 주민들 사이에 불평등을 발생시키거나 행정의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할 소지가 있다.

49)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대구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 제3호 관련” 사례(102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제9조 제2항 제4호 및 「아산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12조 제3호, 「정읍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제7조 단서도 이와 유사하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 5 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치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손괴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 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처음의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복구공사 시행자에게 재시공 명령을 하거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 5 조(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괴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부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제 9 조(부담금 환부)** ① 시장은 원인자가 손괴부분을 복구 완료하고 원상회복공사 완료 확인을 한 후 부담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자 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직접 복구할 경우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취소를 하였을 때
- 2.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착수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 3. 도로공사 복구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1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을 때
-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아산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12조(부담금의 환부)** 시장은 굴착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기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 1. 시의 공익상 또는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 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정읍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제 7 조(부담금 환부)** 기납부된 부담금 등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2) 정비방안

-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의 환급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예방하고, 주민의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

(4)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7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2호 및 제5호 관련50)

【관련 조례 및 조문】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p><b>제15조(지원금액의 환수)</b>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된 사업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환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li><li>2. <u>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u></li><li>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li><li>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경우</li><li>5. <u>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u></li></ol>

1) 검토의견

-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호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지원금액의 환수 사유로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명확성의 원칙’이란 법률에서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를 가능한 명확하게 규정하여 일반국민이 어떠한 행위가 법에서 금지되고 또한 그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이 과해지는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sup>51)</sup>을 말한다.

50)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25조 제5호 관련” 사례(96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51)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479쪽. 이 보고서의 검토의견란에서 논거가 되는 원칙, 기준, 사유 등과 관련하여 각주를 달 경우 최초로 언급하는 부분에서 각주를 달고 그 이후에는 재차 각주를 달지 아니함을 밝힌다.

- 통상 헌법상의 명확성의 정도는 개개의 법률이나 법 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조례 규정이 부담적·침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해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sup>52)</sup> 지원금액의 환수를 비롯한 각종 제재적 행정처분을 규정하는 조례에서도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 적용 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sup>53)</sup>
-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사유로서 매우 불명확하여 자칫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가져오고 주민의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소지가 있다.

## 2) 정비방안

- 지원금액의 환수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호 및 제5호를 삭제하여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예방하고, 주민의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

---

52) 이세정 외,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 방안, 108쪽.

53) 이세정, 조례의 법령 및 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97쪽.

(5)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6항 제2호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p>제 6 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등) ① ~ ⑤ (생략)</p> <p>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때</li><li>2. <u>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u></li><li>3.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li></ol>

1) 검토의견

-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는 강릉시장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공영주차장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강릉시장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 공영주차장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매우 불명확하여 공영주차장 수탁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여 행정청과 수탁자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 「포항시 어린이 교통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1항 제1호도 이와 유사하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포항시 어린이 교통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위탁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수탁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정비방안

- 공영주차장 위탁 취소 사유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6항 제2호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포항시 건설공사의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포항시 건설공사의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
<p>제 7 조(명예감독관의 의무) ①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보안유지에 책임을 진다.</p> <p>② <u>명예감독관은 각종 민원사항과 공사추진 및 제반업무에 노력한다.</u></p>

1) 검토의견

- 「포항시 건설공사의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서는 “명예감독관은 각종 민원사항과 공사추진 및 제반업무에 노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위 조문의 문장은 문법에 맞지 아니하고 명예감독관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2) 정비방안

- 명예감독관의 노력 의무를 문법에 맞게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포항시 건설공사의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을 삭제한다.

(7) 청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제17조 제6호 관련<sup>54)</sup>

【관련 조례 및 조문】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p><b>제17조(지급 제외)</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익명이거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li> <li>2.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신고한 경우</li> <li>3.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신고한 경우</li> <li>4.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감독공무원이나 감리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해당 신고사항이 수사 중에 있는 경우</li> <li>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공사관계자와 사전에 공모하여 신고한 경우</li> <li>6. <u>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u></li> </ol>

1) 검토의견

- 「청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제17조 제6호에서는 청주시부실공사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특별한 사유를 열거하지 아니하고 단지 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면 매우 불명확한 사유로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하게 되어 위원회의 자의적인 결정을 초래하거나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할 소지가 있다.

---

54)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제13조 제5호 관련” 사례(106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2) 정비방안

- 포상금 미지급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를 삭제하여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예방하고, 주민의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

(8)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0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p><b>제10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b>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단위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 · 확정 내용에 따른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p><b>제43조(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 · 관리)</b> ① 지상 · 수상 · 공중 · 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 명칭 · 위치 · 규모 등을 미리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 · 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 ·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p>
<p><b>제47조(도시 · 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b> ① 도시 · 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 · 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垓)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 광역</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 · 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 · 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②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이하 “도시 · 군계획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채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 ③ 도시 ·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④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 ·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 도시 · 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채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⑦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4조, 제58조와 제6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6항에 따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2. 제6항에 따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 검토의견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0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단위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확정 내용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확정 내용에 따른다”라는 문장만으로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이 어느 정도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도시계획시설채권으로 매수 대금을 받은 토지소유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조례의 집행상 혼란을 가져다 줄 소지가 있다.

2) 정비방안

-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행정부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면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제14조 등을 참고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한다.

### 참고 입법례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제14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 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사항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4. 기 타

-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관련

##### 【관련 조례 및 조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 7 조(건축디자인위원회의 자문)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시설물정비계획은 사업 시행 전에 건축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축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시설물정비계획은 「건축법」 등 제반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서는 같은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수립한 시설물정비계획은 사업 시행 전에 건축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7조 제2항에서는 건축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시설물정비계획은 「건축법」 등 제반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건축디자인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갖고, 위원회의 자문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바, 건축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건축법」 등 제반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 정비방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을 삭제하되, 구청장은 건축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비안】**

현 행	개정안
<p>제 7 조(건축디자인위원회의 자문) ① 제 6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시설물정비계획은 사업 시행 전에 건축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p> <p>② 건축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시설물정비계획은 「건축법」 등 제반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p>제 7 조(건축디자인위원회의 자문) ① (현행과 같음)</p> <p>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시설물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交通安全대책위원회설치조례 제3조 및 제5조 제4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交通安全대책위원회설치조례
<p><b>제 3 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영등포구 부구청장(이하 “부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기획예산과장</u></li> <li>2. <u>교통행정과장</u></li> <li>3. <u>도시계획과장</u></li> <li>4. <u>건설관리과장</u></li> <li>5. <u>도로과장</u></li> <li>6. <u>영등포경찰서 교통과장</u></li> <li>7. <u>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위촉한 자</u></li> </ol> <p><b>제 5 조(회의)</b>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p> <p>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p> <p>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p>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交通安全대책위원회설치조례」 제3조 제1항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交通安全대책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

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장은 ‘영등포구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① 기획예산과장, ② 교통행정과장, ③ 도시계획과장, ④ 건설관리과장, ⑤ 도로과장, ⑥ 영등포경찰서 교통과장, ⑦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위촉하는 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상에 따르면 15인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8명이 되고, 민간 위원은 7명이 되는바,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에 공무원인 위원들의 견해에 의해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의 내용이나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 또한 같은 조례 제5조 제4항에서는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장도 위원이므로 표결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은 매우 비민주적이라 할 것이다.

## 2) 정비방안

- 민간위원의 수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를 개정하고, 특히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주도록 한 부분은 삭제한다. 민간위원의 수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려면 위원회의 정원을 늘리거나 당연직 위원 중 일부를 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영등포구의 정책적 판단이 개입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주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만 정비안으로 제시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정비안】

현행	개정안
<p><b>제 5 조(회의)</b>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p> <p>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u>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u></p> <p>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p>	<p><b>제 5 조(회의)</b> ①~③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④ (현행 제5항과 같음)</p>

(3) 평택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장 관련<sup>55)</sup>

【관련 조례 및 조문】

평택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p><b>제 3 장 공간정보의 자료관리 및 운영</b></p> <p><b>제12조(업무지정)</b>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전담부서<ol style="list-style-type: none"><li>가. 공간정보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li><li>나. 신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li><li>다. 프로그램 개발 및 주 전산기 장비 유지보수</li><li>라. 수치지형도 수정·갱신</li><li>마. 공간정보 자료제공</li></ol></li><li>2. 현업부서<ol style="list-style-type: none"><li>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수정·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갱신</li><li>나. 공간정보의 구축(갱신) 시 전담부서 통보</li><li>다. 단말기 관리 및 유지보수</li></ol></li></ol> <p><b>제13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b> ① 주 전산기는 전담부서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p> <p>②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p> <p>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p> <p><b>제14조(자료의 관리)</b> ① 시장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도로굴착과 관련 도로기반시설물 DB구축(갱신)에 관하여 평택시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p>

55)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부산광역시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제9조 관련” 사례(127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 평택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② 공간정보의 DB구축(갱신)은 사업 준공일로 한다.
- ③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형자료와 속성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도로기반시설물도의 작성 및 수정)** ①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준공 후 50일 이내에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전산화일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을 첨부하여 전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처리기한 내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전담부서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접수 후 20일 이내에 현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현업부서의 장은 전담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화일(전산화된 수치도)을 시공사에 전달하여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전산화일을 시공사로부터 성과물로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받은 서류가 전담부서의 장을 경유 하였는지 확인 후 준공처리 하여야 한다.
- ④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 변경, 폐지에 관한 사업 추진 시 자료갱신에 필요한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관리)** ① 도로기반시설물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시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며 유관기관은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극 협조한다.
- ③ 통합 구축된 도로기반시설물의 자료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은 각각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 하며, 갱신자료 발생 시 유관기관은 15일 이내에 통합관리기관인 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제출요구)**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전산화일의 관리 및 복구)** ① 전산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의 장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검토의견

- 「평택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장(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는 공간정보체계의 운영·관리에 관한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 역할 등 행정 내부적인 사항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 이상과 같은 행정 내부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라기보다는 훈령으로 규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4장 및 제27조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 4 장 공간정보업무 지정 및 시스템 운영**

**제15조(업무지정)** 시장은 공간정보 자료관리 및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서, 관리부서의 담당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총괄부서

- 가. 공간정보체계 구축·관리의 기획 및 총괄
- 나. 공간정보시스템 관련 시설(H/W, S/W, 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 다.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갱신, 유지관리
- 라. 관리부서의 공간정보체계 구축,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따른 협조·조정 및 지원
- 마.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 관련 계획수립, 교육, 관리 총괄
- 바. 수치지도 수정·갱신
- 사. 공간정보 자료제공
- 아. 자문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 2. 관리부서

-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 신설·수정·삭제 등 최신의 자료 상태 유지를 위한 신속한 자료 갱신 또는 파일제출
- 나. 도시기반시설물을 신설·추가·보완·변경 공사할 때 위치와 속성값이 표시된 시설물도 파일 생성 및 총괄부서에 결과 파일 제출
- 다. 입력된 공간정보데이터 확인 점검
- 라. 해당 업무와 관련된 공간정보 자료의 활용
- 마. 자료유출 금지 등 공간정보 보안사항 준수
- 바. 관리부서 공간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 사. 단말기 운영 및 유지관리

**제16조(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① 공간정보 관련 주전산기 등은 총괄부서의 주전산실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관리부서에 설치한다.

② 관련 프로그램의 설치가 필요한 관리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설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요구사항 및 설치 장소 등을 검토하고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 관련업무 추진상 효율성 및 공간정보 구축자료의 공동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 부서에서는 개별적 DB운용 또는 시스템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유지·관리책임자는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은 장비별·업무별 실무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도형 및 속성자료 유지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17조(공간정보데이터의 통합관리)** ① 공간정보는 총괄부서에서 주관하여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며 각 관리부서 및 관계 기관에서는 이를 공동 활용 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에 대한 계획수립·통합시스템 구축 및 유지 운영 등을 위하여 관리부서 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 및 시스템 등록·수정·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부서 및 관계 기관에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제18조(지하시설물도의 작성 및 수정)** ① 관리부서의 장은 도시기반시설물의 설치·변경·폐지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때 공간정보 DB구축 및 공공측량 성과심사 등에 따른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부서 및 관계 기관은 지하시설물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하시설물도를 반드시 작성하거나 수정하여 주전산기에 입력 또는 총괄부서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하시설물에 대한 조사, 탐사 및 측량은 절대측량으로 한다.

**제19조(공공기준점 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공공기준점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측량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의 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 및 관리부서의 장은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갱신하여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며 자료입력 담당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형 및 속성자료의 신규, 수정, 삭제 등 갱신요인이 발생하면 관리부서에서는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처리기한까지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도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총괄부서에서 제공받은 수치지도를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전산파일을 성과물로 제출받아 확인 후 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자료의 백업 등 전산파일의 보존 및 파손 방지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자료의 안정성 확보 및 복구)**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의 멸실, 훼손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분(백업파일)을 제작·보관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이 파괴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2) 정비방안

- 「평택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장을 삭제하  
되, 행정내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훈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평택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22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평택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22조(수수료의 반환)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제공 받은 자가 자료 사용 중 사정이 변경되어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검토의견

- 「평택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22조에서는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제공 받은 자가 자료 사용 중 사정이 변경되어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수수료는 “행정기관의 서비스를 받을 때 부담하는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이익을 얻는 특정인에 대하여 부과·징수한다는 점에서 개별적·구체적인 대가성(代價性)이 있는 것이다.<sup>56)</sup>
- 공간정보관련 자료 사용 중 사정이 변경되어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반납한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면 행정기관의 서비스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되어 주민은 재산권의 침해를 당하게 되고 행정은 부당이익을 누리는 것이 된다.

56)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411쪽.

2) 정비방안

- 일정한 수수료 반환 기준을 정하여 공간정보관련 자료 사용 중 사정이 변경되어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반납한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일부는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제7조 제2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p><b>제 7 조(공청회등에 대한 비용부담)</b> ①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p>

1) 검토의견

-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제7조 제2항에서는 “시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공청회는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행정절차법 제2조 제6호)으로 공청회에 드는 모든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비민주적이다(이 조례에서는 제안자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될 제안자가 누구인지도 명확하지 아니하다).

2) 정비방안

- 공청회의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지울 수 있도록 한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제7조 제2항을 삭제한다.

【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제 7 조(공청회등에 대한 비용부담) ①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p>	<p>제 7 조(공청회등에 대한 비용부담) (현행 제1항과 같음)</p> <p>&lt;삭 제&gt;</p>

(6)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제2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p><b>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b>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를 별표29와 같이 지정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별표 29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추가로 관리부서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이 지정한다.</p> <p>③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평택시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평택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평택시 사무위임규칙』,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및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p><b>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b> ①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p> <p>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p>

1) 검토의견

-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제10조 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를 별표29와 같이 지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별표 29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추가로 관리부서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이 지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조직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무엇보다도 추가로 관리부서 지정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 업무 담당 국장이 관리부서를 지정하도록 한 것은 시장의 보조기관인 국장이 시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역시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2) 정비방안

-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한다.

【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를 별표29와 같이 지정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가</p>	<p>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lt;삭 제&gt;</p> <p>&lt;삭 제&gt;</p>



제 2 장 국토·교통/산업·자원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현행	개정안
<p><u>불분명하거나 별표 29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추가로 관리부서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이 지정한다.</u></p> <p>③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평택시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평택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평택시 사무위임규칙』,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p>	<p>(현행 제3항과 같음)</p>

(7) 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4장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p><b>제 4 장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b></p> <p><b>제17조(이동편의 시설의 사전점검)</b>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도로의 허가, 시공, 사용승인, 준공 등에 있어 설치 이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직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을 사전 점검토록 함에 있어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p> <p><b>제18조(사전점검 대상)</b> 이동편의 시설의 사전점검 대상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과 공원, 공중이용시설, 도로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점검대상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을 말한다.</p> <p><b>제19조(시설 주와의 협력)</b> ① 시장은 해당 부서에서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p> <p>② 해당 부서에서는 이동편의시설 준공 이전에 점검부서에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p> <p><b>제20조(시설주의 의무)</b> ① 시설 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 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② 시설주는 법률이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p> <p><b>제21조(사전 점검 보고서의 작성)</b> ① 센터는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p>

**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사전점검결과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만일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즉시 시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22조(사전 점검 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 시설이 잘 설치될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점검부서의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권의 확보와 교통약자의교통안전을 도모하는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평택시는 차량중심의 교통환경에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녹색교통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검토의견

- 「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4장(제17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조례는 “평택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권의 확보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평택시는 차량중심의 교통환경에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녹색교통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조례로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보행권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항인바, 이 조례 전체의 목적, 체계 및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 무엇보다도 2007년 12월 28일자로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경기도평택시조례 제858호)가 제정되어 「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4장에서 규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4장은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2) 정비방안

- 「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4장(제17조부터 제22조까지)을 삭제한다.

**【 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u>제 4 장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u>	<삭 제>
<u>제17조(이동편의 시설의 사전점검)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도로의 허가, 시공, 사용승인, 준공 등에 있어 설치 이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u> <u>② 시장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u>	<삭 제>

현행	개정안
<p><u>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직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을 사전 점검토록 함에있어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u>제18조(사전점검 대상) 이동편의 시설의 사전점검 대상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과공원, 공중이용 시설, 도로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사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민간 시설에 대한 점검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을 말한다.</u></p> <p><u>제19조(시설 주와의 협력) ① 시장은 해당 부서에서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u>  <u>② 해당 부서에서는 이동편의시설 준공 이전에 점검부서에 통보하여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u></p> <p><u>제20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 주는 사전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u>  <u>② 시설주는 법률이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u></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p><b>제21조(사전 점검 보고서의 작성)</b> ① 센터는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결과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만일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즉시 시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p> <p><b>제22조(사전 점검 결과의 반영)</b> ① 시장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잘 설치될수 있도록 노력한다.</p> <p>② 시장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점검부서의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8)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 관련<sup>57)</sup>

【관련 조례 및 조문】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p><b>제15조(교육 및 홍보)</b> ① 시장은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u></li> <li>2. <u>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기술에 관한 사항</u></li> <li>3. <u>특별교통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에 관한 서비스 교육</u></li> <li>4. <u>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li> </ol> <p>② 제1항의 교육은 강원도지사 및 인근 시군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주민과 교통약자에게 홍보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p><b>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b> ① <u>교통사업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u></p> <p>② <u>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u></p>

57)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9조 관련” 사례(163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검토의견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교통사업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 그런데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에서는 교통사업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에 관한 대강의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방법이나 경비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있다.

2) 정비방안

-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교통사업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방법,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한다.



(9) 청주시 대중교통정책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청주시 대중교통정책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시민모니터단 구성) ① 위원회에는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모니터단을 둘 수 있다.  
② 시민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1. 시내버스의 안전운행, 서비스 실태 점검  
2. 시내버스 노선 및 배차시간에 대한 점검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1) 검토의견

- 「청주시 대중교통정책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3조 제1항에서는 “위원회에는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모니터단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청주시대중교통정책시민위원회는 청주시 대중교통정책에 관해서 시장에게 자문하는 기구로 위원회의 자문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나 실무위원회 등을 두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원회에 ‘위원’이 아닌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모니터단을 두는 것은 위원회의 일반적인 구성·운영에 관한 입법례에 비추어 부적절하다.

2) 정비방안

- 시민모니터단을 시장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민모니터단의 자격, 구성, 임기,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모니터단의 실질적 운용을 도모한다.

(10) 정읍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정읍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과태료처분 통지 등)** 시장은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3 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별표”의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 “별표” 과태료부과기준의 토지가격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다.

**제 4 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은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 제3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법원에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 5 조(과태료의 귀속)** ① 법 제33조의2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6 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정읍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제 7 조(준용규정)**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관련 법령 및 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시행 2003.1.1.] [법률 제6655호, 2002.2.4., 타법폐지]

국토이용관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검토의견

- 「정읍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은 2002년 2월 4일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6655호, 2003. 1. 1.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었는바, 「정읍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례이다.

2) 정비방안

- 「정읍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한다.

## 제 2 절 산업 · 자원 관련 분야

### 1.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1)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5조 제4호 관련<sup>58)</sup>

【관련 조례 및 조문】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p><b>제35조(위탁의 취소 등)</b>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강릉시장은 시설물 관리·운영 위탁을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관리자 지정을 받은 때</li> <li>2. 시장의 승인없이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을 변경 또는 목적외로 사용하였을 때</li> <li>3. 사용료 부당징수, 시정명령 위반이 3회에 달한 때</li> <li>4. <u>관리·운영능력이 불량한 자 등 시장관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u></li> </ol>

#### 1) 검토의견

-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5조 제4호에서는 강릉시장은 ‘관리·운영능력이 불량한 자 등 시장관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강릉시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위탁을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강릉시장이 “관리·운영능력이 불량한 자 등 시장관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시설물 관리·운영 위탁을 취소하

58)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호 관련” 사례(180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거나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매우 불명확하여 시설물 수탁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여 행정청과 수탁자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호, 「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 제19조 제1호 및 제3호,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제29조 제3호 및 「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8조 제3호, 제4호 및 제33조 제1호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창업지원센터의 공동 운영 및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와 제11조의 지도·감독 관련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4. 기타 공동 운영 및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市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제29조(관리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관리의 위탁을 취소하거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이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2.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8조(임시시장의 영업정지)** 시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신고한 경우
-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 4.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다만,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2) 정비방안

- 시설물 관리·운영 위탁 취소 또는 사용 정지 사유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5조 제4호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호 관련<sup>59)</sup>

【관련 조례 및 조문】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p><b>제 6 조(예우·지원 중단)</b>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li><li>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게 된 경우</li><li>3.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li><li>4.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li></ol>

1) 검토의견

-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호에서는 포항시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 중단의 사유로 “산업 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위와 같은 사유는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중단 사유로서 매우 불명확하고, 무엇보다도 과연 어느 정도로 직업병이 발생한 경우에 이 조에서 말하는 “직업병 다발”에 해당하는 것인지 매우 불명확하여 자칫 행정의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소지가 있다.
-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 제4호, 제5호 및 제7호,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

59)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호 관련” 사례(181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제1호 및 제3호,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호, 「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호 및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 6 조(예우·지원 중단)**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게 된 경우
3.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4.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선정취소)** 시장은 유망 강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에서 취소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선정대상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휴·폐업 중인 경우
4.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5. 세금체납, 임금체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6. 제13조에 따른 평가 결과 성과가 저조하거나 육성 의지가 없는 경우
7. 시장이 선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예우 및 지원의 중단)**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제14조에 따른 기업이나 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의 합병, 법인전환 등으로 그 동일성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기업이나 기업인의 과실로 중대한 재해나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금융기관 여신규정상 대기업체열 기업군에 속하는 중소기업이나 기업인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이나 기업인
4. 업종변경 등으로 당초 지정 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은 기업이나 기업인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 기관에서 신용정보 관리대상자로 규제된 경우

**【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 6 조(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정비방안

-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중단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예방하고, 주민의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

(3) 포항시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제34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포항시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제34조(지원 제외 대상)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다수인관련민원을 야기하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검토의견

- 「포항시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제34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다수인관련민원을 야기하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말하는 ‘다수인’이 몇 명을 말하는지 매우 불명확하고, ‘다수인관련민원’이 다수인에 의해서 제기된 민원을 말하는 것인지, 다수인에 관한 민원을 말하는 것인지가 매우 불명확하여 중의적(重義的) 해석이 가능한 문제가 있다.

2) 정비방안

-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예외하고 주민의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 제외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다.

## 2. 기 타

###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관련

#### 【관련 조례 및 조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7 조(부담금) ① 입주자는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이외의 자가 회의실 등 창업지원센터 공동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 구청장은 별표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공익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을 참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벤처기업의 창업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는 ‘부담금’이라는 조명(條名) 하에 “입주자는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을 ‘부담금’으로 약칭하고 있다.
- 그런데 이상과 같이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을 ‘부담금’으로 약칭할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부담금’(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과 혼동될 수 있는바, 이 조례에서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을 부담금으로 약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 2) 정비방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서 약칭한 ‘부담금’을 ‘보증금 등’ 정도로 수정한다.

(2) 포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포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p><b>제 4 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b> <u>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b>제 2 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 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li><li>2. “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li></ol>

1) 검토의견

- 「포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법상 권리·의무의 주체는 ‘인(人)’만 될 수 있는바, ‘지역건설산업체’를 의무의 주체로 규정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정비방안

- 「포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 제2호에서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건설산업체”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 조례 제4조의 책무의무의 대상을 건설산업체로 규정한 것은 이 조례 제2조 제2호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조례에서 말하는 “건설산업체”는 ‘건설사업자’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포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정비안】**

현 행	개정안
<p><b>제 2 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p> <p>2. “<u>건설산업체</u>”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p>	<p><b>제 2 조(정의)</b> (현행과 같음)</p> <p>(현행과 같음)</p> <p>2. “<u>건설사업자</u>”----- ----- ----- -----.</p>
<p><b>제 4 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b> <u>지역건설산업체</u>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b>제 4 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b> <u>지역건설사업자</u>----- ----- ----- -----.</p>

(3)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20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p><b>제20조(사업의 점검 등)</b> 시장 및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감독과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p>
<p><b>제12조(위원회의 설치)</b> 도시가스 공급설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p>
<p><b>제13조(위원회 기능)</b>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원 대상지역 및 사업의 선정,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li> <li>2. 보조금 지원금액 등과 관련된 사항</li> <li>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1) 검토의견

-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20조에서는 “시장 및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감독과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위원회는 시장에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자문을 해주는 자문기구로서 행정청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추진상황 점검,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2) 정비방안

-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21조 중 위원회가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감독과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삭제한다.

**【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제20조(사업의 점검 등) 시장 및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감독과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사업의 점검 등) 시장은----- ----- ----- -----.



(4)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4조 제1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p><b>제14조(재정지원)</b> ① <u>시장은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②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 사업자, 에너지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당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p>

1) 검토의견

-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4조 제1항에서는 “시장은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추진은 시장이 하는 것인바, 시장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 정비방안

-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4조 제1항은 삭제한다.

【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b>제14조(재정지원)</b> ① 시장은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 사업자, 에너지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당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p>	<p><b>제14조(재정지원) &lt;삭 제&gt;</b></p> <p>② · 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p>

## 제 3 장 보건·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제 1 절 보건·복지 관련 분야

#### 1.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1) 정읍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6조 제1호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정읍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p><b>제 6 조(자격과 임용)</b> 제3조에 따른 상담복지센터 직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장은 시정조정위원회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li> <li>2. 팀장과 팀원(행정원 포함)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시장이 특별임용할 수 있다.</li> <li>3. 직원 등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 과 같다.</li> <li>4. 비상근 소장은 지역유지로서 신망과 덕망을 갖춘 자로 한다.</li> </ol>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p><b>제 1 조(목적)</b>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b>제 2 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p>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p>③ 당연직위원은 안전도시국장 및 과장 10명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p> <p>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p><u>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원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p>	<p><b>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b></p> <p>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li> <li>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li> <li>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li> <li>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li> <li>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li> </ol>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p>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p> <p>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p> <p>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p> <p>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p> <p>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p> <p>②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생활지도를 하는 직원을 둔다.</p> <p>③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p> <p>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	
<u>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제14조제4항 관련)</u>	
2.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 분	자 격 기 준
가. 센터의 장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구 분	자격기준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1급 5)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1) 검토의견

- 「정읍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6조 제1호에서는 정읍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센터장의 자격이나 채용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임명 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다.

2) 정비방안

- 정읍시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을 채용할 때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과 결부된 별표 2.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채용하면 될 것 인바, 정읍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도록 한 「정읍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6조 제1호는 삭제한다.

**【정읍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정비안】**

현 행	개정안
<p><b>제 6 조(자격과 임용)</b> 제3조에 따른 상담복지센터 직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장은 <u>시정조정위원회</u>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li> <li>2. 팀장과 팀원(행정원 포함)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시장이 특별임용할 수 있다.</li> <li>3. 직원 등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 과 같다.</li> <li>4. 비상근 소장은 지역유지로서 신망과 덕망을 갖춘 자로 한다.</li> </ol>	<p><b>제 6 조(자격과 임용)</b>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li> </ol>

## 2.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관련

####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p><b>제12조(고용승계)</b>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수탁자가 고용했던 전문직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단, 사업수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p>

#### 【관련 법령 및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p><b>제21조의2(시설의 위탁)</b>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li> <li>2. 위탁계약기간</li> <li>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li> <li>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li> <li>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li> </ol> <p>5의2. <u>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li> <li>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li> </ol> <p>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p>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p>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li> <li>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li> </ol>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서는 상위법률의 근거 없이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수탁자가 고용했던 전문직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단, 사업수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상과 같은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은 새로 수탁자가 된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계약자유 원칙에 반할 소지도 있다.
- 한편,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 제5호의2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례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기보다는 위탁계약에 포함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 정비방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를 삭제하고,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은 개별 위탁 시 위탁계약에서 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정비안】**

현 행	개정안
<p><u>제12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수탁자가 고용했던 전문직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단, 사업수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u></p>	<p><u>&lt;삭 제&gt;</u></p>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p><b>제18조(제공인력)</b> 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활동지원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활동지원사업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p> <p>② 활동지원인력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서를 활동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활동지원인력은 소속된 제공기관을 통하여 4대 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p><b>제26조(활동지원인력의 요건 등)</b>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 활동지원인력의 범위·업무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27조(활동보조인)</b>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한다)이 되려는 사람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서 교</p>	<p><b>제19조(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b>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 활동지원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인</li> <li>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문목욕을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사람</li> </ol>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 교육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 간호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p> <p>나.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 간호보조 업무 경력이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p> <p>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p>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8조 제2항에서는 상위법률의 근거 없이 “활동지원인력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서를 활동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활동지원인력은 소속된 제공기관을 통하여 4대 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활동지원인력에게 이상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려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 2) 정비방안

- 활동지원인력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감염병 등에 걸릴 위험이 있으면 상위법률에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상위법률의 근거를 마련하고, 활동지원인력의 서비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면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2조 제4항을 참고하여 임의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구청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참고 입법례

-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2조(활동보조인 지원 등) ①** 장애인 및 보호자는 센터에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활동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센터에 등록하며,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센터는 활동보조인의 활동시간에 준하는 활동비를 시장에게 지급하도록 요청한다.
- ④ 센터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시장은 이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3.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관련<sup>60)</sup>

#####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p><b>제24조(위탁의 취소)</b>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탁자가 법규를 위반 하였을 때</li> <li>2.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li> <li>3. 수탁자가 제22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li> <li>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li> <li>5. 시설장, 위탁운영체 관계자등이 사회적, 경제적인 물의 및 품위손상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과태료 처분 및 형사처벌을받았을 때</li> </ol> <p>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에 대하여는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를,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시설장, 위탁운영체 관계자등이 사회적, 경제적인 물의 및 품위손상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에는 영등포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영등포구 보육

60)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강원도 사회복지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호 관련” 사례(225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위와 같은 위탁 취소 사유는 매우 불명확하여 수탁자의 수탁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여 행정청과 수탁자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 특히 시설장, 위탁운영체 관계자 등이 사회적, 경제적인 물의 및 품위손상으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칫 수탁자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제재를 받게 되어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할 소지도 있다.
-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제2호,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제1항 제1호,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 제3호,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제2호,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청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리·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센터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4.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제8조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복지시설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이용을 한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의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기관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3. 수탁기관이 제10조에서 정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수탁운영기관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수탁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수탁 계약사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정지 및 취소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7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민원불편을 초래하여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위탁의 취소 결정일 30일 전에 수탁자에게 취소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청원할 수 있다. 다만, 기간 내 청원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청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위탁의 취소와 지원 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시설사용이 쉼터의 기능에 위배된 경우
6. 시장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자료·장비와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정비방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어린이집 위탁 취소 사유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6조 제1항 관련<sup>61)</sup>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p><b>제 6 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b> ① <u>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u></p> <p>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p><b>제 9 조(금연을 위한 조치)</b> ① <u>삭 제 &lt;2011.6.7.&gt;</u></p> <p>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p> <p>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각 호 생략)</p> <p>⑤ <u>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u></p>

61)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6조 제1항 관련” 사례(218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국민건강증진법
<p>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⑥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⑦ 삭제 &lt;2011.6.7.&gt;</p>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6조 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는 이 조례에 따른 흡연구역의 설치 등에 관한 주민의 권리·의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사유가 매우 불명확하여 자칫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초래하고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하게 저해함으로써 행정청과 주민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7조 제1항 및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 7 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 5 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정비방안

-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서는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 법령 차원에서 금연구역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기본적 사유를 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62)</sup>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정비안】**

현 행	개정안
제 6 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 6 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62) 이세정, 조례의 법령 및 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219쪽.

제 3 장 보건·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현행	개정안
<p><u>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u></p> <p>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u>우(or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li> <li>2.</li> <li>3.</li> <li>.</li> <li>.</li> </ol> <p>② (현행과 같음)</p>

(3) 원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제2호 관련<sup>63)</sup>

【관련 조례 및 조문】

원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p>제12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li><li>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li><li>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li><li>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li></ol> <p>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해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p>

1) 검토의견

- 「원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원주시장은 원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시장이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매우 불명확하여 자칫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초래하거나 수탁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함으로써 행정청과 수탁자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63)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강원도 사회복지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호 관련” 사례(225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아산시 치매관리·지원 조례」 제12조 제1항 제1호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복지시설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이용을 한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의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아산시 치매관리·지원 조례】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는 사업비,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도 수탁재산으로 본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2) 정비방안

- 원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취소 사유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원주시 종합사회복지회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한다.

## 4. 기 타

###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 관련

#### 【관련 조례 및 조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 제 7 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의 수입금과 사용재산·장비 등을 시설의 운영에 적정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신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그 밖의 위·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제13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시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⑧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에서는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신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신축에 드는 비용을 수탁자가 조달한 경우에도 시설을 구에 기부 채납하도록 하는 것은 영등포구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5항에 비추어 보더라도 모든 경우에 기부 채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청주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18조 제7항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 【청주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맞게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복지관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 ⑤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에 든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 ⑥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22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전부를 인도하여야 한다.
- ⑦ 수탁자가 시설을 증축·개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다만, 칸막이 공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⑧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명령, 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2) 정비방안

-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신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 채납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거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 제5항처럼 기부 채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2)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제7조 제3호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p><b>제 7 조(지원의 제한)</b>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된 경우</li><li>2. 영업주의 주소가 포항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li><li>3. <u>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u></li><li>4.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li></ol>
<p><b>제 4 조(지원사업)</b>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u>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주방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u></li><li>2. 각 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컨설팅 및 교육 지원사업</li><li>3. 안전한 위생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li><li>4.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문화 및 홍보사업 지원</li><li>5. 식품위생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ol>

1) 검토의견

-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제7조 제3호에 따르면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①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주방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② 각 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사업, ③ 안전한 위생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④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문화 및 홍보사업 지원, ⑤ 식품위생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데, 이 중 ①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주방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건물 그 자체와 무관한 지원이므로 건물주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서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 정비방안

-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지원 제한 대상 사업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제 7 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p> <p>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된 경우</p>	<p>제 7 조(지원의 제한) ① ----- ----- -----.</p> <p>1. · 2. (현행과 같음)</p>

제 3 장 보건·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현행	개정안
<p>2. 영업주의 주소가 포항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p> <p>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괄호 신설)</p> <p>4.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p>	<p>3. ----- ----- -----<u>(제4조제1호에 따른 사업만 해당한다)</u></p> <p>② (현행 제4호와 같음)</p>



(3)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6조 제1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p><b>제 6 조(사용료)</b> ① <u>화장장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포항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은 사용료의 100분의 800을 징수한다. 다만, 영덕·울릉군민에게는 포항시 관내 거주자에 준한다.</u></p> <p>② 사용료는 포항시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다만, 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금으로도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b>제 4 조(사용자)</b> <u>시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라 화장장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시민이 아닌 사람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u></p>

1) 검토의견

-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6조 제1항에 첫 번째 단서에서는 “포항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은 사용료의 100분의 800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포항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포항시민이 납부하는 사용료보다 8배나 많은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포항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나 포항시민에게 우선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을 고려하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다하여 사실상 이용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이는 시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민이 아닌 사람도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같은 조례 제4조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도 문제가 있다.

2) 정비방안

- 포항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사용료 금액을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한다.

(4) 청주시 보육 조례 제16조 제2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청주시 보육 조례
<p><b>제16조(위탁 취소)</b>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처분을 받은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처분을 받은 경우</li> <li>2.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3.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 하였을 때</li> <li>4. 수탁자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 밖의 공익상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li> </ol>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u>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u></p> <p>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 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p>

1) 검토의견

- 「청주시 보육 조례」 제16조 제2항 본문에서는 시립어린이집 관리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단서에서는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의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행정청의 주관적인 의사나 독단과 편견에 의한 결정을 방지하

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인바,<sup>64)</sup> 수탁자가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행정청이 임의로 운영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고, 수탁자에게는 운영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확정적이지 않는 의사를 전제로 의견진술을 생략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의견진술제도를 두고 있는 조례의 취지를 몰각시킬 소지가 있다.

## 2) 정비방안

- 수탁자의 의견진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 의견진술을 생략하도록 하기 보다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처럼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 【 청주시 보육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b>제16조(위탁 취소)</b>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처분을 받은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p> <p>1.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처분을 받은 경우</p>	<p><b>제16조(위탁 취소)</b> ① (현행과 같음)</p>

64) 이세정, 행정절차법 개선을 위한 청문제도 내실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6, 75쪽.

현 행	개정안
<p>2.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p> <p>3.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p> <p>4. 수탁자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 밖의 공익상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p> <p>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 ----- ----- 다만, 수탁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5) 청주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청주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b>제10조(운영요원)</b> ① 수탁자는 대학생, 퇴직공무원 및 교사, 주부 등을 활용하여 공부방에 1명의 상근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지역실정을 감안한 1~2명의 일일 보조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p> <p>② 수탁자가 상근자를 채용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③ 상근자는 청소년들의 학습지도와 생활고충 상담 등의 활동을 실시한다.</p> <p>④ 상근자는 공부방 분위기를 해치는 청소년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매일 운영 일지를 기록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p> <p><b>제 9 조(공부방운영위원회 구성운영)</b> ① 수탁자는 공부방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 공부방에 공부방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부방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li> <li>2. 공부방 분위기 쇄신을 위한 협의</li> <li>3. 위원회를 통한 자원봉사자 확보</li> <li>4. 공부방 운영실태 분석 및 연말결산</li> </ol> <p>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5명 이상 9명 이하의 청소년전문가, 교육전문가, 지역인사,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의 위촉 및 위원장 선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1) 검토의견

- 「청주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서는 청소년공부방 수탁자가 상근자를 채용할 때에는 공부방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공부방운영위원회는 청소년공부방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 공부방에 두는 일종의 자문위원회로서, 조례에서 수탁자에게 상근자 채용 시 공부방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수탁자의 자율적인 인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2) 정비방안

- 수탁자의 자율적 인사권 보장을 위하여 수탁자가 상근자를 채용할 때에는 공부방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청주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은 삭제하거나 청소년공부방 상근자 채용 시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부방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정도로 수정한다.

(6) 청주시 귀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청주시 귀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p><b>제 3 조(지원 대상)</b> ① 귀농·귀촌인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가진 귀농인 및 귀촌인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세부적 선정기준 및 자격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p>

1) 검토의견

- 「청주시 귀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서는 귀농·귀촌인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가진 귀농인 및 귀촌인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세부적 선정기준 및 자격요건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청주시 귀농인, 귀촌인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그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자격요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에 제정된 것으로 그 동안 약 2년이 경과하였는데, 규칙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문제가 있다.

2) 정비방안

- 청주시 귀농인, 귀촌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자의 세부적 선정기준 및 자격요건에 관한 규칙을 마련한다.



## 제 2 절 농수축산 관련 분야

### 1.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1)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7조 관련<sup>65)</sup>

【관련 조례 및 조문】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 7 조(지정조건)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 5호에 의하여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관련 법령 및 조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도매 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	제17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도매시장 개설자는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65)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3조 제3항 및 제 4항 관련” 사례(241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仲都賣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3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과반수 이상 양수(이하 “인수”라 한다) 하고 양수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양도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u>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li> <li>2.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li> <li>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li> <li>4. 임원 중 제82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li> <li>5. <u>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u></li> </ol>	<p>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li> <li>2. 주주 명부</li> <li>3. 임원의 이력서</li> <li>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li> <li>5. 사업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li> <li>6. <u>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u></li> </ol> <p>② <u>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업무규정으로 정한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의 범위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u></p>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p><u>정</u>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것</p> <p>④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된 후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⑤ 도매시장법인은 해당 임원이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p> <p>⑥ <u>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1) 검토의견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7조에서는 포항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조례의 상위법률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서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요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것”을 그 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

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의 범위를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 등”에 관하여 업무규정으로 미리 정해 두어야지 지정할 때마다 임의로 지정조건을 붙이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

-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7조 및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7조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 7 조(지정조건)**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법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 시행규칙 제16조제5호에 따라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운전자금,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 7 조(지정조건)**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시설사용계약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 7 조(지정조건)**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원의 자격·자본금 규모·시설사용계약·보증금·운전자금·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2) 정비방안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7조를 삭제하고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법인 지정요건은 시장이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u>제 7 조(지정조건)</u>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 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p>	<p>&lt;삭 제&gt;</p>

(2)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20조 관련<sup>66)</sup>

【관련 조례 및 조문】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p><b>제20조(휴·폐업 신고)</b> ① 도매시장법인은 제4조에서 정한 정기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예정일 10일 전까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업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휴·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의 폐업 결정시 이를 당해 도매시장의 게시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제1항의 휴·폐업의 관리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지방자치법
<p><b>제22조(조례)</b>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p>

1) 검토의견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20조 제1항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은 같은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정기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예정일 10일 전까지, 영업을 폐업

66)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2조 제4항 관련” 사례(280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업예정일 30일 전까지 휴·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 이와 같은 휴업·폐업 신고 의무 부과는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주민에 대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부적절하다.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50조,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항 및 제37조 제1호,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19조 제1항 및 제42조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50조(휴·폐업 신고)** 시장도매인의 휴·폐업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휴·폐업 신고) ①** 도매 법인은 제4조에서 정한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거나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휴·폐업의 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신고)**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중도매업무를 휴 폐업하거나 휴업 후 이를 재개할 경우
2. 제28조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19조(휴업·폐업 신고) ①** 도매시장 법인은 제4조의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려는 경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는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휴업·폐업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주시보, 일간신문,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2) 정비방안

- 도매시장법인의 휴업·폐업 시 이를 행정청이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바,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 20조 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 규정은 상위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으므로 곧바로 삭제할 것이 아니라 상위 법률에 도매시장법인의 휴업·폐업 신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0조 관련<sup>67)</sup>

【관련 조례 및 조문】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p><b>제40조(지정조건)</b> 시장은 시장도매인을 지정할 경우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p><b>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b> ①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시장도매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li> <li>2. 임원 중 해당 도매시장에서 시장도</li> </ol>	<p><b>제18조(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 등)</b>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장도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도매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 관</li> <li>2. 주주 명부</li> <li>3. 임원의 이력서</li> <li>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li> </ol>

67)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관련” 사례(250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p> <p>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p> <p>4. 임원 중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p> <p>5. <u>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것</u></p> <p>③ 시장도매인은 해당 임원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p> <p>④ <u>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우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p> <p>5. 사업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p> <p>6. <u>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u></p> <p>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업무규정으로 정한 시장도매인의 적정수의 범위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p>

1) 검토의견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0조에서는 시장은 시장도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조례의 상위법률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에서는 시장도매인 지정요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것”을 그 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는 시장도매인의 적정수의 범위를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시장도매인의 적정수 등에 관해서 업무규정으로 미리 정해 두어야 할 것이지 지정할 때마다 임의로 지정조건을 붙이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34조 및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16조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허가조건)** 시장은 중도매업을 허가할 때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최저거래금액,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등의 허가조건을 정할 수 있다.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34조(지정조건)** 시장은 시장도매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 가입, 시설사용계약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16조(허가조건)** 개설자는 중도매업 허가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최저거래금액·시설사용계약·보증금 등의 허가조건을 정할 수 있다.

2) 정비방안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0조를 삭제하고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시장도매인 지정요건은 시장이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u>제40조(지정조건)</u> 시장은 시장도매인을 지정할 경우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 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p>	<p><u>&lt;삭 제&gt;</u></p>

(4)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6조 관련<sup>68)</sup>

【관련 조례 및 조문】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p><b>제36조(보조경매참가자 운영)</b> ① <u>중도매인(중도매법인 포함)이 본인 또는 대표자 외의 자로 하여금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② <u>시장은 신청 중도매인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중도매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종업원 중 1명에 한하여 보조경매 참가자 운영을 승인할 수 있다.</u></p> <p>③ <u>보조경매 참가자 운영의 조건 및 기간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시행한다.</u></p>

【관련 법령 및 조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p><b>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b> ① ~ ④ (생략)</p> <p>⑤ <u>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1.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p> <p>2. <u>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주는 행위</u></p> <p>⑥ (생략)</p>

1) 검토의견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6조 제1항에서는 중도매인(중도매법인 포함)이 본인 또는 대표자 외의 자로 하여금

68)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5조 관련” 사례 (254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대신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보조경매 참가자 운영의 조건 및 기간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중도매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보조경매참가자에 관한 사항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보조경매인을 중도매인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률에 부합하지 아니하다.
-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6조 및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30조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6조(보조경매 참가자 운영)** 중도매인이 본인 또는 대표자 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를 3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30조(보조경매참가자 운영) ①** 중도매인이 다른 사람에게 본인이나 대표자를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써 입증자료를 붙여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1. 질병, 장기 출타, 장기 해외체류
  2.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매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② 시장은 보조경매참가자의 질서문란 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 참여를 금지하도록 한다.

2) 정비방안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6조를 삭제하거나 만일 중도매인의 경우 보조경매참가자를 인정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상위법률에 이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입법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8장 관련<sup>69)</sup>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p><b>제 8 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b></p> <p><b>제92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b> ①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농수산물 유통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78조에 따라 도매시장별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p> <p>②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li><li>2.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 제반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li><li>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li><li>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li><li>5. 정가·수의매매 거래, 운영특례 적용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 기준에 관한 사항</li><li>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li><li>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ol> <p><b>제93조(구성)</b> ① 위원회는 도매시장별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 및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산물도매시장은 수산진흥과장으로 한다.</p> <p>④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며 농수산물유통 관련전문가 및 농어민단체의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도매시장입주업체 대표 및 유통종사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⑤ 간사는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해당 업무담</p>

69)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42조 관련” 사례(258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p>당자, 포항시 수산물도매시장은 수산진흥과 해당 업무담당으로 한다.</p>	
<p><b>제94조(직무)</b>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p>	
<p><b>제9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b>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해당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b>제96조(위원의 위촉 해제)</b>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이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 장기 여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li> <li>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li> <li>3. 직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li> </ol>	
<p><b>제97조(회의소집 및 의결)</b> 회의소집은 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b>제98조(수당)</b>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b>제78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b> ①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p>	<p><b>제54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등)</b>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운</p>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삭제 &lt;2008.12.26.&gt;</p> <p>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각 호 생략)</p> <p>④ <u>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u></p>	<p>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u>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u></p>

1) 검토의견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8장(제92조부터 제98조까지)조에서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서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한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8장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다.
-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장,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11장,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0조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2) 정비방안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8장을 삭제하고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u>제 8 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u></p> <p><u>제92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①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농수산물 유통 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78조에 따라 도매시장별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u></p> <p><u>②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u></li> <li><u>2.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 제반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u></li> <li><u>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u></li> <li><u>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u></li> <li><u>5. 정가·수의매매 거래, 운영특례 적용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u></li> <li><u>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u></li> </ol>	<p>&lt;삭 제&gt;</p> <p>&lt;삭 제&gt;</p>



현 행	개정안
<p><u>제9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u>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해당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lt;삭 제&gt;</p>
<p><u>제96조(위원의 위촉 해제)</u>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위원이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 장기 여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u></li> <li>2. <u>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u></li> <li>3. <u>직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u></li> </ol>	<p>&lt;삭 제&gt;</p>
<p><u>제97조(회의소집 및 의결)</u> 회의소집은 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lt;삭 제&gt;</p>
<p><u>제98조(수당)</u>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lt;삭 제&gt;</p>

(6)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9장 관련<sup>70)</sup>

【관련 조례 및 조문】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p><b>제 9 장 거래분쟁조정위원회</b></p> <p><b>제99조(거래분쟁조정위원회)</b> ① 시장은 농수산물의 거래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법 제78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별 <u>거래분쟁조정위원회</u>(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p> <p>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낙찰자결정에 관한 분쟁</li><li>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li><li>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li><li>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li></ol> <p><b>제100조(구성)</b> ① 조정위원회는 도매시장별로 구성하며,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 및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창조경제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포항시 수산물도매시장은 수산진흥과장으로 한다.</p> <p>④ 위촉직 위원은 변호사 1명 및 출하자 대표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며 도매시장 입주업체 대표 및 유통종사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⑤ 간사는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해당 업무담당자, 포항시 수산물도매시장은 수산진흥과 해당 업무담당으로 한다.</p> <p><b>제101조(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 등)</b> 조정위원회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94조부터 제9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정위원회”로 본다.</p>

70)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43조 관련” 사례 (261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및 조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p><b>제78조의2(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b> ①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각 호 생략)</p> <p>③ <u>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b>제36조의2(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b> ①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p> <p>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각 호 생략)</p> <p>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⑤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u>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u></p>

1) 검토의견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9장(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에서는 농수산물의 거래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도매시장별 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 제3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6항에서는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매시장별 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 조례 제9조는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다.
-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장,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30조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2) 정비방안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9장을 삭제하고 도매시장별 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u>제9장 거래분쟁조정위원회</u>	<u>&lt;삭 제&gt;</u>





제 3 장 보건·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현 행	개정안
<p><u>담당자, 포항시 수산물도매시장은 수산진흥과 해당 업무담당으로 한다.</u></p> <p><b>제101조(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 등) 조정</b>  <u>위원회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 위원</u>  <u>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94조부터</u>  <u>제9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u>  <u>우 “위원회”는 “조정위원회”로 본다.</u></p>	<p><u>&lt;삭 제&gt;</u></p>

(7)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관련<sup>71)</sup>

【관련 조례 및 조문】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p><b>제 6 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취소)</b> ① 제5조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법 제15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즉시 임시 동물보호센터를 별도로 지정하고 보호 중인 동물을 이동 보호하여야 하며, 지정 취소 후 3개월 이내에 적합한 동물보호센터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동물보호법
<p><b>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b> ① ~ ⑤ (생략)</p> <p>⑥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u>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li> <li>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li> <li>3. 제5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li> <li>4.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li> <li>5. 제22조를 위반한 경우</li> <li>6. 제39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li> <li>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li> </ol> <p>⑦ ~ ⑨ (생략)</p>

71)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9조 제2항 관련” 사례(264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1) 검토의견

-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서는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동물보호법」 제15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동물보호법」 제15조 제6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정 취소를 의무화 하고 있는바, 조례에서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률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자칫 법률의 입법 취지를 왜곡할 소지가 있다.
-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 6 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전년도 기준으로 유기동물 처리 마릿수가 2천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는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에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법 제15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즉시 임시



## 2.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 (1)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9조 제3항 관련<sup>72)</sup>

#### 【관련 조례 및 조문】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p><b>제 9 조(재지정)</b>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지정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법인의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지정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을 재지정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li> <li>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의 평가점수가 법인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li> <li>3.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정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li> </ol> <p>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에 해당되어 재지정하지 않는 경우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 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p>

#### 【관련 법령 및 조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p><b>제77조(평가의 실시)</b>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물류체계 개선 등 운영·관리와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시장도매인의 거래 실적, 재무 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평가에 필요한</p>

72)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4조 제3항 관련” 사례(274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의 거래 실적, 재무 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권고를 할 수 있다.

1. 부진한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
2. 부진한 도매시장의 관리를 관리공사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 권고
3.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한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 명령

⑤ (생략)

#### 1) 검토의견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9조 제2항에서는 시장은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에 따른 중앙평가결과 지정기간 동안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 평가를 받은 경우, ② 같은 법 제77조 제2항에 따른 중앙평가결과 중 재무건전성 부문에서 해당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평가 점수가 지정기간 내 3회 이상 업체 평균의 3분의 2수준 이하인 경우, ③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지연으로 지정기간 내 업무정지 1개월 이상(과징금 부과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받은 경우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에서는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 법인에 대하여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① 부진한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 ② 부진한 도매시장의 관리를 관리공사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 권고, ③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을 뿐이다.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의 규정 내용과 다를 뿐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의 재지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 없는 새로운 규제로서 국민의 기본권(영업의 자유)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
- 도매시장법인 평가 결과는 재지정과 결부지울 것이 아니라 법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 9 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 법인의 지정)**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법인은 지정기간 만료 3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도매법인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매법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법 제77조에 따른 평가결과 5년 평가기간동안 3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 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중앙평가 중 재무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 당해 도매법인의 평가점수가 지정기간 내 3회 이상 업체 평균의 2/3 수준 이하인 경우
  - 3. 대금정산 지연으로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 내 업무정지 1월 이상(과징금 부과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 외에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재지정 하지 않는 경우 개설자는 공모를 통하여 신규법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공모를 통하여 신규법인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공모 전 경상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재지정 및 공모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정비방안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제 9 조(재지정)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지정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9 조(재지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② 시장은 법인의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지정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을 재지정할 수 없다.</p> <p>1. <u>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u></p> <p>2. <u>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의 평가점수가 법인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u></p> <p>3. <u>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정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u></p> <p>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에 해당되어 재지정하지 않는 경우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 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p>	<p>&lt;삭 제&gt;</p> <p>④ (현행과 같음)</p>

(2)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4조 제2항 관련<sup>73)</sup>

【관련 조례 및 조문】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p><b>제34조(중도매법인의 관리)</b> ① 중도매법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경매에 참가하고, 영업하여야 한다.</p> <p>② <u>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③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도매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p><b>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b> ① · 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u></li> <li>2. <u>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u></li> <li>3. <u>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u></li> <li>4. <u>임원 중 제82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u></li> <li>5.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것</li> </ol>

73)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5조 제1항 관련” 사례(278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p>④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된 후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⑤ 도매시장법인은 해당 임원이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p> <p>⑥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1) 검토의견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4조 제2항에서는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에서는 이상과 같은 사항을 직접 정하거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한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보고 의무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 제2항 및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18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중도매법인의 관리) ① 중도매법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경매에 참가하고, 영업하여야 한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 ②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필요하면 중도매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청주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18조(도매시장법인 관리)** 도매시장법인은 정관의 변경, 주주·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정비방안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4조 제2항을 삭제하거나 만일 중도매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상 정관의 변경, 주주 및 임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 상위법률에 이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입법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9조 제2항 관련<sup>74)</sup>

【관련 조례 및 조문】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p><b>제49조(시장도매인의 관리)</b> ① 시장도매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영업하여야 한다.</p> <p>② <u>시장도매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③ 시장은 필요시 시장도매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p><b>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b> ① · 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u>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u></li><li>2. <u>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u></li><li>3. <u>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u></li><li>4. <u>임원 중 제82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u></li><li>5. <u>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것</u></li></ol>

74)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5조 제1항 관련” 사례(278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p>④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된 후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⑤ 도매시장법인은 해당 임원이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p> <p>⑥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1) 검토의견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9조 제2항에서는 시장도매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에서는 이상과 같은 사항을 직접 정하거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한 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보고 의무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40조 제2항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p><b>【청주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40조(시장도매인의 관리)</b> ① 시장도매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영업하여야 한다.</p> <p>② 시장도매인은 정관 변경, 주주·임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

2) 정비방안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0조 제2항을 삭제하거나 만일 시장도매인에 대한 관리감독상 정관의 변경, 주주 및 임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 상위법률에 이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입법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7조 및 제8조 관련<sup>75)</sup>

【관련 조례 및 조문】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p><b>제 7 조(분석결과와 광고 등 금지)</b>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 받은 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p>
<p><b>제 8 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b> 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광고 또는 선전·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p>

1) 검토의견

-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7조에서는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에게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8조에서는 이를 위반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와 같은 광고·선전, 용기·포장 등에의 표시 금지,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 사용 금지는 상위법률의 근거 없이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정정 또는 취소”라는 제재가 예정되어 있는바, “주

75)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 관련” 사례(293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 2) 정비방안

- 상위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7조 및 제8조를 삭제하거나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분석 결과를 이용한 광고 또는 선전·표시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제재조치 등을 할 정책적 필요가 있으면 상위법률에 이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입법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청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제15조 관련<sup>76)</sup>

【관련 조례 및 조문】

청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p><b>제15조(명칭사용의 금지)</b>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거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할 경우 즉시 철거·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1) 검토의견

- 「청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제15조에서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지 아니하는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거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할 경우 즉시 철거·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서 특정 자격을 부여하면서 해당 자격을 갖춘 자 외에는 이러한 자격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에 두는 규정이다.<sup>77)</sup>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은 특정 자격자에 독점적 명칭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특정자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무자격자의 명칭 사칭에서 오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sup>78)</sup>

76)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관련” 사례(296쪽 이하) 및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 관련” 사례(361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77)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465쪽.

78)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465쪽.

-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르면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이에 관한 규정을 두되,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sup>79)</sup>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 제한(금지)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인바, 상위법률의 근거 없이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강릉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제13조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강릉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제13조(명칭 및 표지판의 사용금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이 아닌 경우에는 명칭과 표지판을 사용할 수 없다.

#### 2) 정비방안

- 향토음식점을 지정하여 지원을 하는 것은 청주시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발굴·육성·보전하고자 하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지정제도에 부수하여 명칭사용 금지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인바, 상위법률에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79)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465쪽.

(6) 평택시 농업인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15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평택시 농업인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p><b>제11조(가공사업의 시설 기준 설정 및 점검)</b> ① <u>시장은 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목별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u></p> <p>② <u>사업자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시장이 점검을 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u></p> <p>③ <u>가공사업의 품목별 시설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u></p>

1) 검토의견

- 「평택시 농업인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에서는 평택시장은 가공사업(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목별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자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물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시장이 점검을 할 때 제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 이상과 같은 사항들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서 이미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어 불필요하거나 이중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상위법률의 근거가 없는 새로운 규제인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보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 「강릉시 농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의 3, 「포항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창원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8조 및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강릉시 농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 7 조의3(식품가공사업 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① 시장은 농업인의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가공원료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가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포항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 6 조(시설기준 및 점검)** ① 농업인 등이 식품가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식품제조·가공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농업인 등은 가공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별지 제 1호 서식의 가공원료 및 가공품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보관하고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창원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8 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①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하려는 농업인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③ 사업자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7 조 (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목 별 시설기준을 설정하고 점검하여야 하며,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시설의 시설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농업인 등은 가공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보관하고 시장이 점검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③ 농업인 등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2) 정비방안

- 「평택시 농업인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삭제하거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에 대한 불필요하거나 이중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품위생법」 등 유사 법령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3.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 (1)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2항 관련

##### 【관련 조례 및 조문】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p><b>제20조(인증대상)</b> ① 인증 대상은 농산물과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시장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고 농식품의 안정성을 홍보하기 위한 장소인증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u>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u></p>
<p><b>제23조(인증의 취소 등)</b> ① 시장은 인증을 부여받은 사람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에 대한 시정명령, 표시정지,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인증상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한 경우</u></li> <li>2. <u>인증 받은 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u></li> <li>3.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및 시장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li> </ol>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소당한 사람은 취소당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p>

#### 1) 검토의견

-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2항에서는 “시장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고 농식품의 안정성을 홍보하기 위한 장소인증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는 어느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인증받은 자의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 또한 같은 조례 제23조 제1항에서는 시장은 인증을 부여받은 사람이 ① 인증상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한 경우, ② 인증 받은 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및 시장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에 대한 시정명령, 표시정지,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른 취소와 같은 조례 제23조 제1항에 따른 취소가 어떤 관계인지도 명확하지 아니한 문제가 있다.

## 2) 정비방안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부분을 어느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하나의 인증에 대하여 조례에서 2개의 조문에서 취소의 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부적절하므로 제20조 제2항에 따른 취소와 제23조 제1항에 따른 취소를 통합하여 규정한다.

(2)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16조 관련<sup>80)</sup>

【관련 조례 및 조문】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16조(재해시의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게 물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검토의견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16조에서는 포항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게 물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어떤 재해가 발생하여 어떤 물품의 확보가 필요한 때 어떤 지시를 할 수 있는지가 매우 불명확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의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조례 제116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에게 시장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도출될 수 있는데, 이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의무로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반할 소지가 있다.

80)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55조 관련” 사례(304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6조,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100조 및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56조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6조(재해시의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물품확보를 위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100조(재해발생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게 물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56조(재해시의 물품확보)** 개설자는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게 물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2) 정비방안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16조를 삭제하거나 만일 일정한 재해가 발생, 특정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여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상위법률에 이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입법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또한 이로 인하여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게 손해·손실이 발생한다면 그에 대해서 배상·보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14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p><b>제14조(지정취소)</b> 도매시장법인이 제7조에 따른 지정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개설자는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p>

1) 검토의견

-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14조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이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정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개설자는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사유로서 매우 불명확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2) 정비방안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14조 중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부분을 삭제한다.

(4)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28조 제3항 제2호 관련<sup>81)</sup>

【관련 조례 및 조문】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p><b>제28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b> 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등록변경신청서를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개설자는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③ <u>개설자는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u></p> <p>1. 농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도매시장내에서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경우</p> <p>2. <u>그 밖에 관련법령 및 업무규정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u></p> <p>④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거나 이의 취소를 하고 그 명단을 통보할 경우 해당 행위의 효력은 우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p><b>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b> 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p> <p>2. 도매시장법인이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p> <p>3. 중도매인이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p>

81)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9조 제3항 제2호 관련” 사례(301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p>4. 시장도매인이 제37조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p> <p>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②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주어야 한다.</p> <p>④ <u>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에의 출입을 금지·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유통인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b>제82조(허가 취소 등) ① ~ ④ (생략)</b></p> <p>⑤ <u>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중도매인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지유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u></p> <p>1. ~ 3. (생략)</p> <p>4. <u>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판매·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하였을 때 (이하 생략)</u></p>

1) 검토의견

-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28조 제3항에서는 개설자는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자가 ① 농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도매시장내에서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경우, ② 그 밖에 관련법령 및 업무규정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관련법령 및 업무규정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사유로서 매우 불명확하여 산지유통인의 예측 가능성·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2) 정비방안

-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28조 제3항 제2호를 삭제한다.

【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제28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p> <p>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등록변경신청서를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개설자는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③ 개설자는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자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u></p> <p>1. <u>농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경우</u></p> <p>2. <u>그 밖에 관련법령 및 업무규정 등에</u></p>	<p>제28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였</u> -- -----.</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제 3 장 보건·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현행	개정안
<p><u>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u></p> <p>④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거나 이의 취소를 하고 그 명단을 통보할 경우 해당 행위의 효력은 우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p>	<p>④ (현행과 같음)</p>



(5) 정읍시 농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 관련<sup>82)</sup>

【관련 조례 및 조문】

정읍시 농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p><b>제 4 조(보조대상 범위)</b>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사업신청일 현재 3년이상 정읍시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u></li> <li>2. <u>외지 관광객 방문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u></li> </ol>

1) 검토의견

- 「정읍시 농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서는 “외지 관광객 방문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정읍시 농촌민박 보조사업 신청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외지관광객 방문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농촌지역”이 어떤 지역을 말하는지 매우 불명확하여 농촌민박 보조사업을 하려는 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또한 “외지 관광객 방문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보조사업 신청 대상자로 할 경우 정읍시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어 “사업신청일 현재 3년이상 정읍시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를 신청 대상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 취지를 몰각시킬 가능성도 있다.

82)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9조 제3항 제2호 관련” 사례(301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2) 정비방안

- 정읍시 농촌민박 보조사업 신청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정읍시 농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를 삭제한다.

(6)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제3호 관련<sup>83)</sup>

【관련 조례 및 조문】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p><b>제11조(사용허가 및 위탁의 철회)</b>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허가 및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li> <li>2. 허가조건 또는 위탁운영 약정을 위반한 경우</li> <li>3. <u>관련 법규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u></li> <li>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li> </ol>

1) 검토의견

-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제3호에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사용허가 및 위탁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관련 법규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매우 불명확하여 사용자의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2) 정비방안

-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사용허가 및 위탁 철회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제3호를 삭제한다.

---

83)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대구광역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 제3호 관련” 사례(306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7)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9조 제5호  
관련<sup>84)</sup>

【관련 조례 및 조문】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p><b>제 9 조(위탁의 취소)</b> <u>수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수탁운영자가 제8조의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 하였을 경우</li><li>2. 위탁시설물을 목적 외 사용의 경우</li><li>3. 시장의 지도·감독 및 시정요구에 불응의 경우</li><li>4. 위탁시설물에 대한 재 임대외의 경우</li><li>5. <u>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u></li><li>6. <u>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읍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u></li></ol>

1) 검토의견

-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9조 제5호에 서는 정읍시장은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의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에서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읍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에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시장이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읍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기준

84)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4호 관련” 사례(378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이 매우 불명확하여 수탁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자칫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초래함으로써 수탁자와 행정청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 2) 정비방안

-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의 위탁 취소 사유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9조 제5호 및 제6호를 삭제한다.

## 4. 기 타

### (1)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제9조 제2항 관련

#### 【관련 조례 및 조문】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p><b>제 9 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b>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 사용을 해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이 조례를 위반한 때</li><li>2. 사용허가,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li><li>3. 부정한 수단으로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거짓 신고를 하였을 때</li><li>4. 시장이 영업상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한 때</li><li>5.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때</li><li>6. <u>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장 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때</u></li><li>7. 허가 후 1개월 이내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한 때</li><li>8.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때</li><li>9.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li><li>10. 공중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li><li>11. <u>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u></li></ol> <p>② <u>제1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u></p>

#### 1) 검토의견

-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제9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는 취소의 원인을 제공한 시장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나, “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장 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때”나 “시장이 필요한 때”(만일 공익적 사유에 의한 것일 경우)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 해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을 시장(市場) 자신이 제공한 것이 아닌바, 이 경우에도 시장(市長)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비추어 매우 부당하다.

2) 정비방안

-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제9조 제2항은 삭제한다.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정비안】**

현 행	개정안
<p>제 9 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p> <p>① (생략)</p> <p>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제 9 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p> <p>(현행 제1항과 같음)</p> <p>&lt;삭제&gt;</p>

(2) 포항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항 등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포항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p><b>제 3 조(위원회 설치)</b>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르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u>몽리자 총회</u>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사업지구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b>제 4 조(위원회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기본구성 인원은 30인으로 하되 <u>몽리자수가 30인이상인 경우에는 매 20인마다 1인을 추가</u>)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사업지역의 시의원과 각 사업지구내의 법 제11조의 자격자 및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관계가 있는 기관의 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④ 제3항의 법 제11조의 자격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이하 “지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재직 위원총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지구위원은 <u>몽리자 회의</u>에서 선출된 자(자연부락단위로 호선도 가함)를 시장이 위촉한다.</p>
<p><b>제 6 조(위원회의 기능)</b>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종전토지 및 환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li> <li>2. 일시 이용지 및 환지지정에 관한 사항</li> <li>3. 법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 보상금 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li> <li>4. <u>몽리자 부담금</u>(노력, 현물 등 포함)의 결정과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li> <li>5.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 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p>
<p><b>제14조(손실 보상금의 징수교부)</b>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보통 생길 손실은 보상한다.</p> <p>②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p>



<b>포항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b>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 결정하되 몽리자 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1) 검토의견

- 「포항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제3조에서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몽리자’ 총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사업지구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4조 제1항, 제4항, 제6조 제1항 제4호, 제14조 제3항 등에서도 ‘몽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sup>85)</sup>
- 몽리자(蒙利者)의 사전적 의미는 “이익을 얻는 사람 또는 덕을 보는 사람”인데,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2 등에서 사용된 용어이나,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아니하는 매우 어려운 한자 용어에 해당한다.

## 2) 정비방안

- 「포항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몽리자’라는 용어를 보다 쉬운 용어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참고로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으나, 「민법」 개정안에서는 ‘몽리자’<sup>86)</sup>라는 용어를 ‘이용자’로 수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sup>87)</sup>

85) 이 조례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2 등에서 사용된 ‘몽리자’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6) “농, 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233조).

87) “민법 어려운 한자·일본식 표현 57년 만에 사라진다”, 법률저널, 2015. 8. 28.

(3)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항 등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p>제 5 조(보상 제외대상) 피해농업인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총 피해보상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li><li>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li><li>3.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li></ol>

1) 검토의견

-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호에서는 “총 피해보상금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를,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그런데 피해보상금 제외 대상 금액 상한으로서 ‘30만원’은 다소 높고,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더라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금액이 큰 경우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것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811>> (최종접속 : 2016. 8. 31);

“‘일본식’ 민법 표현, 57년 만에 사라진다” 헤럴드경제, 2015. 8. 25.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825000975&md=20150826003218\\_BL](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825000975&md=20150826003218_BL)>

(최종 방문 2016. 8. 31);

“궁박? 구거? 어려운 민법 표현 사라진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투데이, 2015. 8. 25.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187082>>

(최종접속 : 2016. 8. 31)

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려는 이 조례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수 있어 보인다.

- 참고로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서는 “총 피해보상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외 소득 유무에 관한 사항은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경우에는 피해 금액에 관한 제한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 참고 입법례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보상 및 피해예방 시설 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해보상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2.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각종 법령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등을 재배한 경우
4.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5.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6.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7. 최근 5년 이내에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은 경우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 8 조(보상 및 피해예방 시설 지원 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2.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3. 피해예방 시설은 최근 5년 이내 지원 받은 경우
4. 농경지 방치 등 농지관리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참고 입법례

5. 산림자원 불법채취, 입산금지구역 무단출입 등 금지사항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6.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활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7.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8. 자동차, 이륜차, 자전거 등 교통수단 이용 중에 발생한 피해, 직접피해가 아닌 2차 피해 또는 간접 피해를 입은 경우
9.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 또는 피해예방시설 보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조치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할 대상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 2) 정비방안

- 피해 보상금 지급은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인근에 있는 강릉시나 원주시에 비추어 포항시의 경우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어 포항시 주민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인바, 재정 상황이 고려하는 범위에서 “총 피해보상금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와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보상금 제외 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입법례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 제 5 조(보상의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해농가의 농외소득이 전체 소득의 80% 이상인 경우
2. 법령 등에서 경작을 금지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3. 「농어업재해대책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4. 제4조에 따라 해당연도에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등 예산지원을 받은 경우

(4) 포항시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포항시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
<p><b>제 5 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b> ① <u>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요청서에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요청 내용이 제3조제2항 각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1) 검토의견

- 「포항시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서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요청서에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주무부장관’은 포항시의 ‘상급행정기관’으로서 조례에서 상급행정기관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 이 조문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상북도지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주무부장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

2) 정비방안

-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시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포항시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 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는 삭제한다.

**【포항시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 정비안】**

현 행	개정안
<p><b>제 5 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b></p> <p>①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요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외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그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요청 내용이 제3조제2항 각호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lt;삭 제&gt;</p>

(5) 정읍시 농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정읍시 농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재산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5년경과 전에 건축물을 양도·교환할 수 없다.

1) 검토의견

- 「정읍시 농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서는 농촌민박 보조사업자는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5년 경과 전에는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교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5년 경과 전까지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교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이미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한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사업에 종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행정목적에 비추어 보조사업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2) 정비방안

-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5년 경과 전에는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교환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정읍시 농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는 삭제한다.



## 【정읍시 농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비안】

현 행	개정안
<p><u>제16조(재산처분의 제한)</u> 보조사업자는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5년경과 전에 건축물을 양도·교환할 수 없다.</p>	<p><u>&lt;삭 제&gt;</u></p>

(6)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9조 제4호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p><b>제 8 조(수탁운영자의 의무)</b> 수탁운영자는 시설물을 위탁 운영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포도체험센터”내에서는 정읍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및 친환경 농산물 취급 및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타지역 농·특산품 및 친환경농산물을 취급 판매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li> <li>2. “위탁시설물”운영 및 사용에 따른 운영·관리 비용은 수탁운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망실에 대하여 수탁운영자가 변상하여야 한다.</li> <li>3. 수탁운영자가 “위탁시설물”을 증축하거나 개보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수탁운영자가 부담하고, 위탁계약 만료할 때 그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청구할 수 없으며,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li> <li>4. 수탁운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과 시장의 처분·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li> <li>5. 수탁운영자는 수탁기간에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포도체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일부를 타인에게 전대할 수 있다.</li> <li>6. 수탁운영자는 위탁사업 추진을 보증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관련기준을 정하여야 한다.</li> </ol> <p><b>제 9 조(위탁의 취소)</b> 수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탁운영자가 제8조의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 하였을 경우</li> <li>2. 위탁시설물을 목적 외 사용의 경우</li> <li>3. 시장의 지도·감독 및 시정요구에 불응의 경우</li> <li>4. 위탁시설물에 대한 재 임대외의 경우</li> </ol>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 5.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6.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읍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1) 검토의견

-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9조 제4호에 따르면 정읍시 청정유기농포도체험센터의 운영 수탁자가 위탁시설물에 대한 재임대를 한 경우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같은 조례 제8조 제5호에서는 “수탁운영자는 수탁기간에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포도체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일부를 타인에게 전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례 제9조 제4호는 전대(재임대)를 허용하는 같은 조례 제8조 제5호에 부합하지 아니하다.

2) 정비방안

-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8조 제5호에서 전대(재임대)를 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여 같은 조례 제9조 제4호는 위탁시설물에 대한 시장의 승인 없이 재임대한 경우 위탁계약을 취소하는 것으로 수정한다.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정비안】**

현 행	개정안
<p><b>제 9 조(위탁의 취소)</b> 수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탁운영자가 제8조의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 하였을 경우</li> <li>2. 위탁시설물을 목적 외 사용의 경우</li> <li>3. 시장의 지도·감독 및 시정요구에 불응의 경우</li> <li>4. <u>위탁시설물에 대한 재 임대</u>의 경우</li> <li>5.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li> <li>6.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읍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li> </ol>	<p><b>제 9 조(위탁의 취소)</b>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 (현행과 같음)</li> <li>4. <u>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탁시설물을 전대한 경우</u></li> <li>5. · 6. (현행과 같음)</li> </ol>

## 제 4 장 문화 · 체육 · 관광/환경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제 1 절 문화 · 체육 · 관광 관련 분야

#### 1.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 (1)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3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
<p><b>제14조(위탁운영)</b>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재단지 전체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및 주차장관리 운영을 개인, 법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경영자에게 필요한 임대료 징수 및 필요한 시설을 명할 수 있다.</p> <p>③ 위탁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위탁운영자와 시장이 협약에 따라 결정하며, <u>협약 기간 만료 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p> <p>④ 위탁운영자는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p><b>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b>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p>	<p><b>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b>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p>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p>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p> <p>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p> <p>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p>	<p>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p> <p>② <u>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u></p> <p>③ <u>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u></p> <p>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li> <li>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li> <li>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li> </ol>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p>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p> <p>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li> <li>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li> <li>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li> <li>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li> <li>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p>

1) 검토의견

-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3항에서는 “위탁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위탁운영자와 시장이 협약에 따라 결정하며, 협약기간 만료 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말하는 문화재단지터의 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위탁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협약기간 만료 시 문화재단지의 위탁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다.

- 「청주시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3항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청주시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4 조(운영)** ① 청주시장은 전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목적에 적합한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계약보증 등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같다.

③ 청주시장은 위탁운영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설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운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설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위탁운영자와 시장의 협약에 따라 결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동의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없이 기본 설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제4항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자는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⑥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운영자에게 공예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위탁운영에 따른 계약위반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2) 정비방안

- 문화재단지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탁하면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5년 이내의 기간 동안)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하면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5년 이내의 기간 동안)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한다.

(2)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 제10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
<p><b>제10조(시설변경)</b> ① <u>수탁자는 시설물의 구조와 사용용도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② <u>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아 특별한 시설이나 설비·설치 등을 할 경우, 위탁기간·수탁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지체 없이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존치하기로 허가나 승인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p> <p>③ <u>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고 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한다.</u></p>

【관련 법령 및 조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p><b>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b> ① <u>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② <u>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1) 검토의견

-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에서는 “수탁자는 시설물의 구조와 사용용도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나,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가 아닌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에 보고하지 않더라도 직접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인 경우에도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 없이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면 되는 바, 어느 경우에도 시장의 허가나 승인이 없으면 시설의 구조나 사용용도 등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다.
- 「청주시 명암관망탑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청주시 명암보트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청주시 명암관망탑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시설 변경 금지) ①**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용도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할 경우, 위탁·수탁 기간 종료와 동시에 지체 없이 이를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합리하여 존치하기로 허가 또는 승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한다.

**【청주시 명암보트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시설 변경 금지) ①**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용도 등을 임의로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할 경우, 위탁·수탁 기간 종료와 동시에 지체 없이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합리하여 존치하기로 허가 또는 승인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한다.

2) 정비방안

-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 제10조는 삭제한다.

**【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u>제10조(시설변경)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구조와 사용용도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u>②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아 특별한 시설이나 설비·설치 등을 할 경우, 위탁기간·수탁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지체 없이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존치하기로 허가나 승인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p> <p><u>③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고 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한다.</u></p>	<p><u>&lt;삭 제&gt;</u></p>

## 2.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제4조 관련

####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p><b>제 4 조(가산금 및 독촉)</b> ① <u>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u></p> <p>② 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p>

####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제4조 제2항에서는 “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조례의 상위법률인 「관광진흥법」에서는 이와 같은 가산금 부과에 관해서 규정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가산금을 부과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정비방안

-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에 관해서 규정하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제4조는 삭제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정비안】**

현 행	개정안
<p><b>제 4 조(가산금 및 독촉)</b> ① 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p> <p>② 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15일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20일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p>	<p><b>&lt;삭 제&gt;</b></p>

(2)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제5조 제3항 관련<sup>88)</sup>

【관련 조례 및 조문】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p><b>제 5 조(사업위탁 및 재정지원 등)</b>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생활체육 진흥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체육회 또는 종목별연합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체육진흥사업을 행하는 생활체육회 또는 종목별연합회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u>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은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p>

1) 검토의견

-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제5조 제3항에서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은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 그런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와 같은 사전 협의 의무를 부과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협의의무를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단체에게 부과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88)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부산광역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제7조 관련” 사례(363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2) 정비방안

-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단체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수립 등과 관련한 사전 협의 의무를 부여하는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제5조 제3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제 5 조(사업위탁 및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생활체육 진흥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체육회 또는 종목별연합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체육 진흥사업을 행하는 생활체육회 또는 종목별연합회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u>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은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p>	<p>제 5 조(사업위탁 및 재정지원 등) ① · ②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p> <p>&lt;삭 제&gt;</p>



### 3.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제12조 제1호 관련<sup>89)</sup>

####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p><b>제12조(위탁 취소)</b> 구청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li> <li>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li> <li>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제12조 제1호에서는 영등포구청장은 생활체육교실, 건전여가교실의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구청장이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매우 불명확하여 수탁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자칫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초래함으로써 수탁자와 행정청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89)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4호 관련” 사례(378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호,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1항 제1호,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운영 조례」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제 18조 제1항 제1호,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9 조(위탁의 철회)**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관리·운영협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위탁계약을 철회하려면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사유와 철회 일자를 철회 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철회할 경우에는 철회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위탁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수탁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할 수 있다.

1.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2.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운영 조례】 제13조(위탁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운영이 곤란할 경우
- ② 시장은 체험관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③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④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제18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7조 및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이 파손되거나 망실되는 경우에는 원상 회복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는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 제 8 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 또는 전대(轉貸)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 한 경우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2. 수탁자 또는 전대(轉貸)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체육공원 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반할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5. 수탁자 또는 전대(轉貸)자가 제5조나 제13조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와 입점자 또는 전대(轉貸)자 상호 간의 계약권리에 관한 모든 문제는 수탁자 책임으로 한다.

### 2) 정비방안

- 생활체육교실, 건전여가교실의의 위탁 취소 사유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제12조 제1호를 삭제한다.

(2)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p><b>제 4 조(사용허가)</b> ① 회관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1) 검토의견

-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제4조 제1항에서는 “회관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설치할 때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별한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신청 접수 순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는 어떤 사유인지가 매우 불명확하고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에서도 이에 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주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주민들 사이에 불평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고, 자의적인 행정을 가능하게 할 소지가 있다.

2) 정비방안

- 시설을 설치할 때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별한 시설’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신청 접수 순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필요가 있으면 그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3) 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1호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b>제18조(대관허가의 취소)</b>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이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 등을 한 때</u></li> <li>2.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li> <li>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li> <li>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미술관 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li> </ol>

1) 검토의견

- 「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1호에서는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 등을 한 때”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 등을 한 때”는 어느 정도 그 내용이 상이할 경우를 의미하는지 매우 불명확하여 자칫 행정의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여 대관자와 행정청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2) 정비방안

- 「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1호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내용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대관을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제1호 관련<sup>90)</sup>

【관련 조례 및 조문】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p><b>제16조(위탁의 철회)</b>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li> <li>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li> <li>3. 도서관 설립취지에 현저히 위반되는 행위가 있었을 때</li> <li>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li> </ol>

1) 검토의견

-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제1호에서는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의 위탁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는 수익적 처분의 철회(취소) 사유로서 매우 불명확하여 주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
-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4조 제1호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90)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4항 제3호 관련” 사례(370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4조(위탁의 철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위탁을 철회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탁의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수탁기관이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도서관 설립 취지에 위반하는 활동이 있을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 2) 정비방안

- 주민의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전문도서관 위탁 철회 사유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제1호를 삭제한다.

#### 4.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 (1)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 제1호 관련

##### 【관련 조례 및 조문】

#####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7 조(위촉연령) 지휘자 및 연출자를 제외한 단원의 위촉연령은 55세 이하로 한다.

##### 1) 검토의견

-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서는 “지휘자 및 연출자를 제외한 단원의 위촉연령은 55세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와 같은 위촉연령 제한은 ‘능력’에 따른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고 55세 이상의 사람은 합창, 연주, 연극 등을 할 수 없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자칫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

##### 2) 정비방안

- 단원의 위촉연령을 제외하는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를 삭제한다.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정비안】**

현 행	개정안
<p>제 7 조(위촉연령) <u>지휘자 및 연출자를 제외한 단원의 위촉연령은 55세 이하로 한다.</u></p>	<p><u>&lt;삭 제&gt;</u></p>

## 5. 기 타

### (1)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관련

#### 【관련 조례 및 조문】

####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 설치와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수화”란 청각장애인들이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시각언어를 말한다.
3. “농문화”란 수화를 중심으로 언어공동체를 이루고 청각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화통역사”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음성언어를 수화로, 수화를 음성언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5. “속기사”란 발언자의 음성을 듣고 그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문자로 기록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6. “자막 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수화통역 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수화로 통역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평택시가 설치한 공연장·관람장·체육관·운동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 3 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각장애인 편의 증진과 수화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

**제 4 조(청각장애인 편의증진)** ①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평택시는 자막 및 수화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공 시설 등에 자막 스크린과 수화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평택시 시정뉴스와 평택시의회 의정활동 영상물에 대하여 수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④ 평택시 지역 내 관공서에 수화영상서비스와 일상생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 5 조(수화활성화)** ① 시장은 수화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수화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화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 또는 공공기관 직원 등의 수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화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수화책임관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제 6 조(수화통역사 및 속기사의 보호)** 시장은 수화통역사 인력확대와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화통역사와 속기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조(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화 활성화 등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화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택시의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화 활성화에 관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화활성화의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화활성화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

- 4. 수화 활성화를 위하여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시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 5. 수화통역사 및 속기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8 조(지원)**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요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화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화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화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 9 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정보통신·의사소통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화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① 시장은 수화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평택시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 법령 및 조문】**

**한국수화언어법**

**제 1 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수화언어법

**제 3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 4 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수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2 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 6 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한국수어 관련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한국수화언어법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모든 생활영역에서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의 연구 및 전문용어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어 통역에 관한 사항
7.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9. 한국수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0. 남북한 한국수어의 교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1. 한국수어의 발전을 위한 민간 부분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2. 한국수어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한국수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 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한국수화언어법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 조(보고)** 정부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3 장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급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의 교육에 있어서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농인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들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한국수화언어법**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4 장 보칙 (생략)**

1) 검토의견

-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는 평택시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 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18일자로 제정·시행 중인 조례로서 무엇보다도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수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선도적이고 의미 있는 조례이다.
- 그런데 2016년 2월 3일자로 「한국수화언어법」(법률 제13978호)이 제정되어 같은 해 8월 4일자로 시행될 예정인바, 이 조례 중 ‘수화’에 관한 사항은 「한국수화언어법」이 상위법률이 되게 된다.
- 따라서 이 조례 중 ‘수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예컨대, 제2조 제2호, 제3호나 제7조의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의 경우 「한국수화언어법」과 달리 규정한 부분이 있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상위법률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정비방안

-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 중 「한국수화언어법」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법률에 맞게 수정한다.

(2)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p><b>제 5 조(조직 및 인력)</b> ① 시장은 도서관에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직원을 둔다.</p> <p>② <u>시장은 관장을 임명할 때 5급~6급 상당으로 한다.</u></p> <p>③ <u>시장은 청주시기적의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복수로 추천한 자 중에서 1명을 관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u></p> <p>④ <u>시장은 제3항에 따른 추천자 중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에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p> <p>⑤ <u>시장은 관장을 해임·면직 및 변경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u></p> <p>⑥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한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도서관법
<p><b>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b> ① <u>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u></p> <p>② <u>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u></p> <p>③ <u>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p>

1) 검토의견

-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에서는 청주시장은 관장을 임명할 때 5급~6급 상당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청주시장은 관장을 임명할 때 청주시적의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복수로 추천한 자 중에서 1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청주시장은 관장을 해임·면직 및 변경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조례의 상위법률인 「도서관법」 제30조에서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의 자격요건이나 임명방법·절차 등에 관해서 직접 규정하거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다.
-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관장 임명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장의 임명권자인 청주시장의 인사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

2) 정비방안

-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중 시장의 관장 임명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관장의 임명은 「도서관법」 제30조에 따라 시장이 사서직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

【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b>제 5 조(조직 및 인력)</b> ① 시장은 도서관에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직원을 둔다.</p> <p>② <u>시장은 관장을 임명할 때 5급~6급 상당으로 한다.</u></p> <p>③ <u>시장은 청주시기적의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복수로 추천한 자 중에서 1명을 관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u></p> <p>④ <u>시장은 제3항에 따른 추천자 중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에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p> <p>⑤ <u>시장은 관장을 해임·면직 및 변경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u></p> <p>⑥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한다.</p>	<p><b>제 5 조(조직 및 인력)</b>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시장은 관장을 임명할 때 사서직으로 한다.</u> &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③ (현행 제6항과 같음)</p>

## 제 2 절 환경 관련 분야

### 1.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 (1)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6조 관련<sup>91)</sup>

#### 【관련 조례 및 조문】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p><b>제24조(권리, 의무의 승계)</b> ① <u>사업장의 소유권이 양도·상속·합병 등의 사유로 이전된 경우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u></p> <p>② <u>경매·파산 등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을 인수한 자는 승인·변경승인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u></p> <p>③ 사업장을 양도·상속·합병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승계 이전에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p>

#### 【관련 법령 및 조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p><b>제49조의3(권리·의무의 승계)</b> <u>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양수 전에 이 법에 따라 양도자에게 발생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u></p>

91)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6조 관련” 사례(410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 1) 검토의견

-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4조 제1항에서는 “사업장의 소유권이 양도·상속·합병 등의 사유로 이전된 경우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경매·파산 등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을 인수한 자는 승인·변경승인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조례의 상위법률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서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양수 전에 이 법에 따라 양도자에게 발생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여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을 경우’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고, 부담금 이외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 조례 제24조는 상위법률과 다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신규사업자에게 기존 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다.
-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7조,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5조, 「포항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제29조,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4조 제1항,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7조도 이와 유사하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7조(권리·의무의 승계)** 양도·상속·합병·법원경락 등으로 사업장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5조(권리·의무의 승계)** 처리구역 안에서 폐수나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취득 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포항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제29조(권리·의무의 승계)** 본 처리구역내에서 폐수나 오수를 배수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취득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사업장의 소유권이 양도·상속·합병·법원경락 등의 사유로 이전된 경우에는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등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법원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기존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신설로 간주하여 제17조에 따라 시설설치비를 부과한다.

② 사업장을 양도·상속·합병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승계 이전에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7조(권리·의무의 승계)** 양도, 상속, 합병, 법원경락 등으로 사업장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정비방안

-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4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맞게 수정한다.

【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제24조(권리, 의무의 승계) ① 사업장의 소유권이 양도·상속·합병 등의 사유로 이전된 경우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lt;단서 신설&gt;</p> <p>② 경매·파산 등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을 인수한 자는 승인·변경 승인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p>	<p>제24조(권리, 의무의 승계) ① ----- ----- ----- -----</p> <p>--. 다만, 양도·합병의 경우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2)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4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p><b>제14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b> ① <u>주민신고로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u>는 위반 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u>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u>는 1회만 부과한다.</p> <p>③ <u>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정해진 납부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부과한다.</u></p>

【관련 법령 및 조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별표 8]</p> <p style="text-align: center;"><b>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b></p> <p>1. 일반기준</p> <p>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u>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u></p> <p>나. <u>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u>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li> <li>2) <u>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u></li> <li>3) <u>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u></li> </ol>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 제1항제1호	100	200	300
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 제1항제2호	100	200	300
(이하 생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p><b>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b>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p> <p>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p>

1) 검토의견

-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서는 “주민신고로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는 위반 회수와 관계 없이 항상 1차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를 부과”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와 결부된 별표 8 1. 개별기준에서는 위반 회수에 따라 과태료를 달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주민신고로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경우에는 위반 회수와 관계 없이 1차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다.
- 또한 같은 조례 제14조 제2항에서는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와 결부된 별표 8 1. 일반기준 가.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 마지막으로 같은 조례 제14조 제3항에서는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정해진 납부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와 결부된 별표 8 1. 개별기준 나에서는 부과권자는 ①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④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정해진 납부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다(이 조례 제14조 제3항은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후 50퍼센트를 환불하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데, 50퍼센트를 감액하여 부과한다는 것은 문맥상 부적절하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에는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정해진 납부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하도록 규정한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3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 2) 정비방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없고, 조례로 정하더라도 상위법령과 다른 내용을 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4조는 삭제한다.

【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u>제14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 주민신고로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는 위반 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p> <p><u>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u></p> <p><u>③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정해진 납부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부과한다.</u></p>	<p>&lt;삭 제&gt;</p>



(3) 청주시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청주시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p><b>제 5 조(위탁운영)</b>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선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p>
<p><b>제 7 조(위탁기간)</b> ① 위탁기간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3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재위탁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20일 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p><b>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b>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p>	<p><b>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b>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p> <p>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p>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p>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p> <p>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p> <p>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p> <p>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p>	<p>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li> <li>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li> <li>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li> </ol> <p>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p>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p>원할 수 있다.</p> <p>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li> <li>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li> <li>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부담</li> <li>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li> <li>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여야 한다.</p>

1) 검토의견

- 「청주시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서는 청주시재활용(3R)센터의 위탁기간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3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말하는 청주시재활용(3R)센터의 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위탁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는 공개모집에 따라 위탁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조례 제7조 제1항은 상위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다.

2) 정비방안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위탁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청주시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제 7 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3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재위탁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20일 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 7 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p> <p>② ----- 갱신을 하고자 ----- ----- 갱신 -----.</p>

(4)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 관련<sup>92)</sup>

【관련 조례 및 조문】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p><b>제 3 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b> 법 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지역은 50미터 이내로 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하수 유입 입지 여건, 장래 하수관거 설치 계획 등을 고려하여 따로 지정할 수 있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하수도법
<p><b>제15조(사용의 공고 등)</b>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류식하수관로 및 분류식하수관로의 현황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p> <p>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1) 검토의견

-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에서는 「하수도법」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sup>92)</sup>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관련” 사례(408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 그런데 이와는 달리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에서 정하되”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수관거로부터 30m 이내로 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같은 법 제15조 제2항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다.
-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조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 2 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 2) 정비방안

- 청주시의 경우 그 실정을 고려하여 법령과 달리 규율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수도법」 제15조 제2항에 맞게 하수관로<sup>93)</sup>로부터 직선거리 30m 이내로 하도록 수정한다.

93) 종전에 ‘하수관거’로 표현하던 것은 2013.7.16.자 「하수도법」 개정(법률 제11915호, 2014.7.17. 시행)에 따라 ‘하수관로’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5) 청주시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청주시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p><b>제 9 조(수탁자의 의무)</b> ① 수탁자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및 전대, 권리설정은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p> <p>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p> <p>④ 수탁자는 위탁 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p><b>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b>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p>	<p><b>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b>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u>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p>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p> <p>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p> <p>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p> <p>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li> <li>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li> <li>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li> </ol>	<p><b>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b>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p> <p>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li> </ol>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p>충당</p> <p>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p> <p>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p>	<p>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p> <p>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p> <p>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p> <p>⑤ <u>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u></p>

## 1) 검토의견

- 「청주시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서는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및 전대, 권리설정은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4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보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서는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주시재활용(3R)센터의 전대 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청주시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은 상위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다.

- 또한 「청주시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서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나,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가 아닌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더라도 직접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인 경우에도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 없이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면 되는 바, 어느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이 없으면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다.
-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 제2항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성실히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축·개축·신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또는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으며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정비방안

- 「청주시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은 삭제한다.

【 청주시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b>제 9 조(수탁자의 의무)</b> ① 수탁자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및 전대, 권리설정은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p> <p>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p> <p>④ 수탁자는 위탁 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b>제 9 조(수탁자의 의무)</b> ①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③ · ④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p>

(6)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0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p><b>제30조(소멸시효)</b> 제15조의 하수도사용료와 제21조의 하수도점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 제16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3년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그 밖의 납부금과 가산금, 과태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민법
<p><b>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b>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li> <li>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li> <li>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li> <li>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li> <li>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li> <li>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li> <li>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li> </ol>

지방재정법
<p><b>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b>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p>

## 지방재정법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 1) 검토의견

-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0조에서는 “제15조의 하수도사용료와 제21조의 하수도점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3년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그 밖의 납부금과 가산금, 과태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법관계에서 원칙적인 시효기간은 5년이고, 이에 대한 예외는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조례의 상위법률인 「하수도법」에서는 소멸시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이 조례 제30조는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아니하다.

## 2) 정비방안

- 하수도 사용료와 점용료의 소멸시효에 관해서 「지방재정법」 제82조와 달리 규정한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0조는 삭제한다.

【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u>제30조(소멸시효) 제15조의 하수도사용료와 제21조의 하수도점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3년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그 밖의 납부금과 가산금, 과태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u></p>	<p><u>&lt;삭 제&gt;</u></p>

## 2.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 (1)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제20조 제3항 관련<sup>94)</sup>

#### 【관련 조례 및 조문】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p><b>제20조(급수 중지와 폐전)</b>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p> <p>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p> <p>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p> <p>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p> <p>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p> <p>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해야 한다.</p>

#### 1) 검토의견

-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제20조 제3항에서는 상위법률의 근거 없이 시장은 ①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③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94)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2조 제2항 관련” 사례(421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 그런데 이상과 같은 급수설비 폐전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급수설비 폐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1조,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24조,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25조,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26조,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27조,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7조,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27조 및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1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24조(급수설비 폐전)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공사의 승인을 신청한 자나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 소유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자는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설비 폐전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법원의 소송(가처분 결정을 포함한다)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됨에 따라 다른 사람의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급수중지 또는 폐전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2014.11.07.>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삭제 <2014.11.07.>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수·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 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 2) 정비방안

-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등의 경우 급수설비를 폐전할 필요가 있다면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곧바로 없애는 것보다는 상위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급수설비 폐전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급수설비 폐전의 필요성, 적절성, 최소침해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제21조 제2항 관련<sup>95)</sup>

【관련 조례 및 조문】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p><b>제21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b> ① 수도사용요금(이하“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p> <p>② <u>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u></p>

【관련 법령 및 조문】

수도법
<p><b>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b> ① <u>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u></p> <p>② 제4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강제징수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p> <p>③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주어야 한다.</p>

1) 검토의견

-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제21조 제2항에서는 상위법률의 근거 없이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95)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 제3항 관련” 사례(423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 그런데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려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고, 「수도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도요금을 체납한 자가 있으면 그 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면 될 것이다.
-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2조 제2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27조 제2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 제2항,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8조 제2항,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28조 제2항 및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27조 제2항도 이와 유사하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2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27조(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2) 정비방안

- 수도사용자 등에게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제21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p> <p>② <u>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u></p>	<p>제21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3)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제17조 관련<sup>96)</sup>

【관련 조례 및 조문】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p><b>제17조(신고)</b>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li> <li>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li> <li>3. 제25조제2항과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li> <li>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li> </ol> <p>② 기타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p>

1) 검토의견

-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제17조 제1항에서는 상위법률의 근거 없이 수도사용자 등은 ①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하는 때, ②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③ 같은 조례 제25조 제2항과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④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96)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1조 관련” 사례(426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 그런데 이상과 같은 신고 의무 부과 및 그 불이행 시의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제재적 처분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8조,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20조,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21조,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21조,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21조,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1조,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21조 및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20조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8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등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6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신고) ①** 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4.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5. 급수설비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때
  6.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신고하도록 정하는 사항
- ② 삭제<2000.12. 8>

2) 정비방안

- 급수설비 사용 개시·중지·폐지 신고 등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제17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신고의무 부과와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처분 발령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면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곧바로 없애는 것보다는 상위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4)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제38조 관련<sup>97)</sup>

【관련 조례 및 조문】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p><b>제38조(정수처분)</b>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시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u></li> <li>2. <u>급수를 도용(盜用)한 자</u></li> <li>3. <u>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u></li> <li>4. <u>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u></li> <li>5. <u>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u></li> <li>6. <u>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u></li> <li>7. <u>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u></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p> <p>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1) 검토의견

-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제38조 제1항에서는 상위법률의 근거 없이 시장은 ①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② 급수를 도용한 자, ③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

97)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 관련” 사례(428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행한 자, ④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⑥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⑦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정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상과 같은 정수처분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43조,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4조,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6조,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45조,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44조 및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3조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정수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시민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등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요금을 독촉을 받고 납부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8.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9.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0.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1. 기타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 ② 삭제<2007.12.14.>

#### 2) 정비방안

-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정수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면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곧바로 없애는 것보다는 상위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수처분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급수설비 폐전의 필요성, 적절성, 최소침해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0조 관련<sup>98)</sup>

【관련 조례 및 조문】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p><b>제20조(가산금 및 증가산금)</b> ① 시설설치비와 유지관리비 및 적립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p> <p>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부과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p> <p>③ 기본배출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1조를 준용한다.</p>

1) 검토의견

-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0조 제1항에서는 시설설치비와 유지관리비 및 적립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가산금에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8)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0조 제1항 관련” 사례(432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 그런데 이 조례의 상위법률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 및 적립금 미납의 경우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조례로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신설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1조,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1조, 「포항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제25조,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8조,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3조 및 「정읍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14조도 이와 유사하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1조(가산금 및 증가산금)** ①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1조(가산금 및 증가산금)** ①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포항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제25조(가산금 및 증가산금) ①**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장은 그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정비방안

-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 및 적립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및 증가산금 신설에 관해서 규정하는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한다.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정비안】**

현행	개정안
제20조(가산금 및 증가산금) ① 시설설치비와 유지관리비 및 적립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20조(가산금 및 증가산금) <삭제>

현행	개정안
<p><u>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u></p> <p><u>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부과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u></p> <p><u>③ 기본배출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1조를 준용한다.</u></p>	<p>&lt;삭제&gt;</p> <p>(현행 제3항과 같음)</p>

(6) 원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13조 관련<sup>99)</sup>

【관련 조례 및 조문】

원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p><b>제13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b> ① <u>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② <u>수도시설에 인접하여 타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한 경우 시장은 이를 철거 또는 이설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u></p> <p>③ <u>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 요구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u>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다른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으며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징수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타 시설물의 강제 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있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수도법
<p><b>제71조(원인자부담금)</b> ① <u>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99)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 15조 관련” 사례(418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수도법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1) 검토의견

- 「원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13조 제1항 본문에서는 상위법률의 근거 없이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타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한 경우 시장은 이를 철거 또는 이설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 요구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서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지우고 있을 뿐 다른 시설물의 수도시설과 인접 설치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한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다른 시설물의 수도시설과 인접 설치 금지, 다른 시설물의 철거 또는 이설 요구, 그 불응에 따른 강제 철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정비방안

- 다른 시설물의 수도시설과 인접 설치 금지, 다른 시설물의 철거 또는 이설 요구, 그 불응에 따른 강제 철거 등이 수도시설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곧바로 없애는 것보다는 상위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7)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p><b>제 8 조(가산금 및 독촉)</b>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되, 납부기간을 10일 이내로 한다.</p>

1) 검토의견

-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서는 상위법률의 근거 없이 “시장은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조례의 모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행업자의 수수료 미납 시 가산금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가산금 부과·징수를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정비방안

- 대행업자의 수수료 미납 시 가산금 부과·징수에 관해서 규정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8조는 삭제한다.

##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정비안】

현행	개정안
<p><u>제 8 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u></p> <p><u>② 제1항의 경우에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되, 납부기간을 10일 이내로 한다.</u></p>	<p>&lt;삭 제&gt;</p>

### 3.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 (1)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제41조 단서 관련

##### 【관련 조례 및 조문】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b>제41조(과태료)</b>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u>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u>

##### 1) 검토의견

-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제41조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하되,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불명확하여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가져올 소지가 있고,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자들 사이에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로 차별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42조 단서,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4조 단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7조 단서, 「청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49조 단서,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48조 단서,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47조 단서 및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6조 제1항 단서도 이와 유사하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42조(과태료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가 징수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4조(과태료 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7조(과태료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사람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 2) 정비방안

- 과태료 경감 사유를 조례에서 직접 정하거나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다.

## 4. 기 타

### (1)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제2항 관련

#### 【관련 조례 및 조문】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p><b>제 6 조(관계 공무원의 출장 범위)</b> ① 제5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현장출장은 관련 법령 및 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사업소 소속직원이 검사기구를 지참하여 검체를 채취하거나 출장 검사를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수질검사를 위한 출장은 공무원 2명 1개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검사용 검체 및 기구 등의 과다 등으로 1개조의 인원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p>

#### 1) 검토의견

-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수질검사를 위한 출장은 공무원 2명 1개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검사용 검체 및 기구 등의 과다 등으로 1개조의 인원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상과 같은 공무원의 출장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복무에 관한 사항’의 일종으로서 조례로 정할 사항이라기보다는 시장이 훈령으로 정할 사항으로 보인다.

#### 2) 정비방안

-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를 삭제하고, 출장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으면 시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정비안】

현 행	개정안
<p>제 6 조(관계 공무원의 출장 범위) ① 제5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현장출장은 관련 법령 및 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사업소 소속직원이 검사기구를 지참하여 검체를 채취하거나 출장 검사를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수질 검사를 위한 출장은 공무원 2명 1개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검사용 검체 및 기구 등의 과다 등으로 1개조의 인원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p>	<p>제 6 조(관계 공무원의 출장 범위) (현행 제1항과 같음)</p> <p>&lt;삭 제&gt;</p>

(2)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지원결정 통보)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관련 법령 및 조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21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p> <p>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p> <p>2.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p>	<p>제23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p> <p>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1. 법 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비의 규모</p> <p>2.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지침 및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준 이내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p> <p>3.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p> <p>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li> <li>2. 수도시설의 설치지원 등 복지증진사업</li> <li>3. 교육기자재 공급 등의 지원사업</li> <li>4.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li> <li>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금지나 제한으로 그 구역에서 어로행위(漁撈行爲), 선박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li> <li>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간접 지원사업</li> </ol> <p>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u>승인을 받아 4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별표 3의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li> <li>2.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li> </ol> <p>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u>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 중 사업규모, 주민지원사업비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재심을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다.</p> <p>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연도의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결과를 다음</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④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와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해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⑦ 위원회는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결과를 분석·심의하고, 향후 사업 계획의 심의·조정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p> <p>⑧ 제7항에 따른 추진결과의 분석·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p>

1) 검토의견

-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서는 시장은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위원회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시장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확정하는 것으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승인이 있는 경우 바로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것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오인하는 것이다.

2) 정비방안

-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주도록 한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삭제한다.

【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u>제10조(지원결정 통보)</u>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p>	<p><u>&lt;삭 제&gt;</u></p>

(3) 청주시 중수도 운영조례

【관련 조례 및 조문】

청주시 중수도 운영조례
<p><b>제 1 조(목적)</b> 이 조례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대상으로 중수도의 적절한설치·관리 및 요금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용수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생략)</p>

【관련 법령 및 조문】

하수도법
<p><b>제26조</b> 삭제 &lt;2010.6.8.&gt;</p>

【관련 법령 및 조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p><b>제 9 조(중수도의 설치·관리)</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p>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 2의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 또는 개발사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 ③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및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물 사용량의 산정기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 연면적 및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④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라 한다)에게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에게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⑥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을 분기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⑧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1) 검토의견

- 「청주시 중수도 운영조례」는 「하수도」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중수도의 적절한 설치·관리 및 요금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이다.
- 그런데 구 「하수도법」 제26조의 중수도 설치에 관한 규정은 2010. 6. 8.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59호) 제정에 따라 삭제되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었는바, 이 조례는 구법에 따라 제정된 조례이므로 현행성이 확보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2) 정비방안

- 「청주시 중수도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중수도 설치·관리 및 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새로 정한다.

## 제 5 장 자치입법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 제 1 절 조사 개요

#### 1. 조사 목적

이상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등의 사례를 발굴,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법령 및 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다수의 사례들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인식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관련 법제전문가의 심층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들과의 집단심층인터뷰를 통해 조례의 운영 현황과 조례 제·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 2. 조사 설계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 법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점집단인터뷰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입법관리의 현실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구성하였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에 대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지역, 직급 등에 따라 인터뷰 대상자 목록을 정리하였다. 목록에 있는 대상자들 가운데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기로 한 일정에 참석 가능한 사람들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대상자를 각 분야별로 나누어보면 의회와 관련하여 전 국회사무처 전문가, 종전 법제 업무 경험을 기반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자문관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기초지방자치단체 법무팀 팀장 또는 법률자문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하여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법률자문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특성, 직책, 업무영역으로 인해 보다 다채로운 의견을 얻을 수 있었다.

전체 7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3시간에 걸쳐 인터뷰를 실시하여 이들로부터 다양하고 심도 깊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초점집단인터뷰에 대한 개요는 아래의 다음의 표와 같다.

<초점집단인터뷰(FGI)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방법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실시(FGI)
조사 표본 수 (총 7명)	- 전 국회사무처 전문가 : 1명 -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법률자문관 : 1명 - 기초지방자치단체 법무팀 팀장 또는 법률자문관 : 총 3명 - 광역지방자치단체 법률자문관 : 2명
표본 추출 방법	분야·직급·업무수행기간 등을 고려한 임의할당 추출법
조사 일시	2016년 9월 23일 15:00~18:00

이번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에서의 조사 내용은 ① 현행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파악, ②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의 개선방안 도출 관련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제 2 절 연구 방법

### 1.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의 의미

초점집단(Focus group)에서는 대략 7명에서 12명 정도의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 한 방에 모이게 된다. 연구 대상자들은 연구 중인 주제와의 관련성에 기초하여 선정된 사람들이다.<sup>100)</sup> 참가자들은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들로서 해당 주제에 관하여 관련성 정도가 매우 높은 집단이다.

초점집단의 참가자들은 엄격한 확률표본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선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른 정량적 조사방법에서 얻어진 결과물들처럼 어떤 모집단의 의견을 통계적으로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다. 조사 결과를 전체적 현상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에서 초점집단인터뷰를 이용하는 목적은 어떤 결정적인 측면을 기술하는데 있기 보다는 ‘탐색’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리처드 크루거(Kruger, R. A.)에 따르면 초점집단인터뷰 방법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① 사회 현상에서 일어나는 실제 생활을 포착하는 사회적으로 지향된 연구방법이라는 점, ② (다른 정량적 조사방법에 비해) 유연성을 지닌다는 점, ③ 초점집단인터뷰는 높은 타당도를 가진다는 점(인터뷰 참가자들의 말을 통해 포괄적으로 측정하고 관찰을 통해 개념화하고 그 심층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베이나 실험연구와 비교하여 타당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④ (대규모 서베이의 달리)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⑤ (대규모 서

100) 이세정, 행정절차법 개선을 위한 청문제도 내실화 방안 연구, 37쪽.

베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 면에서 저렴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sup>101)</sup>

## 2. 초점집단인터뷰의 실시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는 사전준비작업 → 인터뷰의 실시 → 자료 분석 → 보고서 작성의 단계로 실시된다. 사전준비작업 단계에서는 참가자 선정 및 수배, 인터뷰 지침서 작성, 장소 섭외, 녹음 준비 등 인터뷰를 위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점검한다. 인터뷰의 실시 단계에서는 사회자가 참가자들과의 좌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 것이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는 녹음을 풀고 정리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sup>102)</sup>

### (1) 사전 준비

#### 1) 조사 대상자 선정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그룹의 속성, 그룹의 수, 그룹별 참석자 수에 관한 내용을 결정한다. 그룹별로 동일한 속성을 지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해야 참가자들 사이에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며 심층적인 의견 및 새로운 의견의 도출이 가능하다. 참석자의 수가 많아지면 심도 깊은 토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너무 적다면 집단 토의의 장점을 살리기 어려울뿐더러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일반적으로 8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되, 다뤄야 할 내용의 깊이에 따라 심도 깊은 경우는 6명 이하, 간단한 경우는 10명 정도로 하는 것이 무방하다.

101) R. A. Krueger, *Focus Groups*. Newbury Park, CA: Sage, 1988, p. 47; 이세정, 행정절차법 개선을 위한 청문제도 내실화 방안 연구, 37~38쪽 재인용.

102) 이세정, 행정절차법 개선을 위한 청문제도 내실화 방안 연구, 38~39쪽.

## 2) 일정 및 장소 선정

사회자 한 명이 초점집단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는 횟수는 1~2회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자가 집중하여 참석자들을 제어하며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피로를 유발한다. 따라서 제대로 사회를 볼 수 있는 횟수는 1~2회에 그친다. 일정은 참석자들의 속성에 따라 참석하기 쉬운 요일이나 시간대를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직장인의 경우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로 시간을 정해야 하는데 반해, 대학생이나 주부들의 경우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시간대를 정하는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장소는 참석자들이 모이기 쉽고, 다양한 의견을 이끌어내기 위해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된 곳을 선택한다.

## 3) 사회자 및 보조원 선정

초점집단인터뷰는 사회자의 기량에 좌우된다. 원활한 인터뷰의 실시를 위해 일정 정도 이상의 인터뷰 경험이 있으면 좋다. 또한 인터뷰를 돕기 위해 인터뷰 중 참석자들의 발언을 메모하고, 인터뷰 후 녹음한 내용을 풀어 정리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보조원이 필요하다.

## 4) 참석자 수배

참석자 수배는 위에서 정한 대상자 속성을 지닌 사람들 중 조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이루어진다. 적합성 정도를 판단한 후 조사 목적을 알려주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참석 여부를 묻고 최종 참석자로 선정한다.

## 5) 인터뷰 지침 마련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회자가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질문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지침서에 따라 인터뷰를 실시하고 결론을 유도한다. 이번 조사에서도

크게 현행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문제점 및 운영현황 파악, 기초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의 개선방안 도출 관련 내용 등을 순서대로 묻고자 지침서를 마련하였다.

인터뷰 지침서는 꼭 정해진 순서와 내용을 따를 필요 없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펼쳐지는 상황에 따라 보다 적절하게 필요한 질문이나 순서가 있으면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 6) 기타 준비

인터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회자는 참석자들의 좌석 배치도와 같은 메모 용지와 인터뷰 과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내용을 메모할 수 있는 메모 용지도 필요하다. 이러한 보조 도구를 통해, 앞서 나왔던 질문에 대한 각 참석자들의 응답을 헛갈리지 않고 이어 새로운 질문으로 원활하게 이어가는 것이 가능하다.

그밖에 녹음 장비, 필기도구, 참석자에 대한 사례 등의 준비도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 (2) 인터뷰 실시

### 1) 오리엔테이션

참석자가 모이자마자 바로 인터뷰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자가 조사 목적, 주요 내용, 사회자에 대한 소개, 참석자에게 인터뷰를 위해 몇 가지를 알리고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 당부할 내용으로는 ‘솔직하게 응답할 것’,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할 것’, ‘진행 중이라도 중간에 생각나면 언제든지 이야기 할 것’ 등이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것들이다.

## 2) 인터뷰 실시

인터뷰에서 사회자는 대화를 주도한다기보다는 사회자가 던지는 주제에 대해 참석자들이 주제와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다양한 각도에서 심층적인 의견을 도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각 단계에서 잠정적인 판단을 통해 정리하고 참석자들에게 반응을 청취하여 보다 발전시킬 수 있다.

사회자는 대략 다음과 같은 역할 및 유의할 점을 신경을 쓴다면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 모든 참석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 너무 간단히 응답할 경우 추가로 질문하여 의견을 표출하도록 유도한다.
- 인터뷰 지침 순서와 달리 참석자가 미리 다음 순서의 질문에 대한 응답까지 하는 경우, 관련성 정도에 따라 다음으로 넘기던지 혹은 응답을 끝까지 듣고 난 후 메모하여 이후 순서에서 그 부분을 빼고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심도 깊은 의견을 제시하도록 유도한다.
- 응답 중에 새로운 사실, 특히 중요한 사실이 나올 경우, 사회자의 판단에 따라 지침과 달리 각 참석자들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 질문하여 의견을 이끌어낼 수 있다.
- 참석자의 의견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할 경우, 참석자들에게 거수하도록 하여 파악할 수도 있다.
- 특정 내용에 대해 확실하게 파악된 경우라면 간단히 넘어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확인 시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면 이 부분에 대해 심층적인 의견을 얻는데 집중한다.
- 주제와 벗어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에는 참석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며 본 주제로 돌아가게 하거나, 다음 순서의 참가자에게 질문 기회를 줌으로써 끊도록 한다.

- 말이 너무 많은 참석자의 말은 적절히 통제하는 반면, 말이 너무 적은 참석자에게는 응답 기회를 주고, 추가 질문을 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의견을 얻고자 노력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묻혀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고 묻어가려는 것을 피해야 한다.

### 3) 대화 기록

참석자들이 펼쳐놓는 내용들에 관하여 녹음하고 보조원이 해당 내용을 푸는 작업을 하여 자료 분석을 한다. 이외에 사회자에 의해 중요한 대화 내용의 메모하고, 참관하는 조사 담당자에 의한 메모를 통해 조사 결과를 요약하고 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

### 4) 인터뷰 참관

사회자는 참석자들이 다양하고 심층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진행을 이끌어 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대화 내용 전반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또 다른 조사 담당자가 인터뷰를 관찰하고, 대화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을 찾아내고 메모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잠정적 결론을 도출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다.

### 제 3 절 조사 결과

#### 1.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인식

##### (1)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현황

###### 1) 조례 제정·개정과 관련된 상황

먼저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관련한 문제가 과거에 비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상황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보고자 관련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질문했다. 그 결과 최근 「지방재정법」 등의 개정으로 보조금 지급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개정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가 증가하는 경우, 그리고 의원 조례의 증가가 합쳐져 전반적인 조례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양적으로 늘어난 정도에 비해 질적인 측면에서 양적인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마다 지금 조례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이나 상위법이 바뀌면서 보조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거 규정을 뒤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한 10개 이상 조례가 증가되면서 (후략)... 【전문가 3】

지금 조례의 양적인 증가가 생각보다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장님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외부단체 시민들의 의견이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 실적 평가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일단은

조례의 수를 늘리고 보자. 약간 이런 인식이 좀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 4】

## 2) 조례 제·개정 처리 시 절차와 관련된 상황

다음은 담당 실무자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다. 절차에 대한 파악을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취지에 걸맞게 위임입법의 취지를 살려 지역의 상황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그 결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들은 조례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조례를 검토하고 그와 유사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 담당자들이 유사조례를 참고하여 만든 해당 지역의 조례에 대해 결재권자들 역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나 이 점은 수정되어야 할 문제로 판단된다.

조례 관련 상위법이 제정되면 법제처에서 알림서비스로 안내가 옵니다. 그 알림서비스가 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제정해야 될 부분들, 저희 자치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조항들을 해당 부서에 공문으로서 알리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알렸으면 저희들은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를 해서 언제까지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를 체크하는데... (중략)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유사조례를 전부 다 검토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3】

공무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방식은 이제 타시·군 조례부터 검토를 합니다. (중략) 공무원들은 타시·군 조례를 보게 돼서 ‘그냥 근거가 법에 맞습니까가 아니라 주변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다 오케이, 오케이 해서 넘어가거든요. (중략) 그래서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논리는 주변에서 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전문가 5】



조례를 만들 때 타시군의 조례와 거의 비슷하게 만들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각 지역별로 다 좀 특색이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구나. 【전문가 2】

### 3) 조례에 대한 현장의 인식

조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조례에 대해 실무 담당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그 해결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자 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실무 담당자들은 실무를 위한 단계이며, 두어 달 정도 배우면 가능할만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례를 성과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에 개정 내지 폐기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조차 법제가 변호사로서 지속적인 경력을 쌓아 가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분야라 인식하고 있기에 전문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조례라는 건 그냥 실무를 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인 거지. 뭐 법률적인 전문성 같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는 아직까지는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는 조례의 중요성에 대해 아직 많이 공감을 얻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 4】

변호사들 입장에서 법제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송무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향후에 법률전문가로서 송무 쪽으로 나갈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법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일반적인 행정 공무원분들께서도 한·두 달 정도 이렇게 배우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전문가 5】

조례는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의 근원이 되는, 근거가 되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의 성과물,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함부로 폐기하거나 개정하는 거에 대해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 6】

옛날에 만들어 진 거기 때문에 법이랑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폐지를 하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것을 폐지한다는 거에 대해서 해당 과 자체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전문가 7】

사실은 이 법제업무라는 게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변호사님들은 처음 형사, 민사 이 부분만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전문가 2】

#### 4) 조례 법제업무 담당 인력 구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담당하는 인력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위와 같은 인식이 나타난 이유를 유추하고자 했다.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와 관련하여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들은 법제와 송무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통계업무까지 겸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의 인력들이 법무라는 이름 하에 배정되어 있으며, 이는 업무의 과중으로 말미암아 조례를 비롯한 법제 업무가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원인으로 판단된다.

조례 같은 경우는 법무통계팀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요. 어떤 경우는 팀 소속은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 소속이기도 해요. 【전문가 5】

우리 시의 경우 집행부에 변호사 한 분이 있고, 의회에 변호사 한 분이 있는데, 그 집행부에는 송무팀장이라고 해가지고 심판하

고, 송무 쪽 일만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법제는 다른 일반직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심사가 안 되고 있어요. 【전문가 2】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지금 법제하고 송무 분야가 분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 인력적으로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문가 4】

시·군은 자치법규 업무하면서 다른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통계 업무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리고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그렇게 법에 헌법 합치성 이렇게 다 담당자가 숙지하면서 볼 여유가, 시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지요.

【전문가 7】

어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기획예산과에 의회법무팀이 있더라고요. 의회법무팀에서 조례 업무를 하는데 담당자가, 자치법규담당자가 1명인데 그 분이 송무 업무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혼자 송무 업무도 하고, 자치법규 업무도 하니까 제대로 하기가 어렵지요.

【전문가 1】

## (2) 조례 제·개정 시 발생하는 문제점

### 1) 중복 조례

앞서 조례와 관련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았다. 먼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령에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서 다시금 규정하는 중복 조례에 대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조례에 대한 실무 담당자들의 의견은 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조례에 넣음으로써 이후 조례를 다시 보더라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령의 중복임에도 불구하고 넣고자 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실무 담당자들이 법을 보지 않고, ‘조례만’ 보고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수시로

법령이 제정·개정되는 현실에 즉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무담당자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내용을 넣지 않으면 나도 잘 모르겠다. 이 내용을 빼면 내가 만약에 인사이드가 돼서 다른 후임자가 오면 이 내용을 잊어버릴 수 있겠다. 꼭 이 건 넣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적 내용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빼는 게 맞는데 실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전문가 4】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다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더 법을 찾아보지 않으니까 조례에서 한 번 더 규정한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나중에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전문가 1】

해설집을 만드는 건 상관없지만 조례나 규칙 자체에서 법하고 중복되면 너무 복잡해져버리지요. 【전문가 2】

어떤 조례에서 보조금의 지원조건, 지원자격 이런 것들이 비슷하면 법에 있는 걸 가져와서 쓸 수는 있는데 법령이 바뀌거든요. 법령이 수시로 바뀌어서 적시에 조례를 개정해줘야 하는데 조례를 개정을 못하게 되면 법령과 조례가 충돌되고, 예를 들어 실무담당자들은 조례를 보고 집행을 해버려요. 그러면 법에 위반이 되어 버리거든요. 법이라는 게 수시로 바뀌고, 그러니까 법령을 즉시, 즉시 반영하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 1】

## 2) 표준조례 선호

또 다른 문제점은 지방자치체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역으로 표준조례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표준조례도 실제로 법제처에서 검토를 해

서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존재함에 따라 주무부처에서 내려준 표준조례안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실무 담당자들은 표준조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의 부족 등의 이유로 조례에 대한 실무자들의 중요성 인식 부족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시·군에서도 위임조례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서 위임이 됐으니까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시·군법제 담당자들도 소관 부서에서 이걸 안 만드는 거예요. 법령에서 위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만드냐고 했더니 표준조례... 【전문가 7】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위에서 내려오는 표준조례안을 잘 만들어서 앞େ다가 ○○시만 붙이면 된다는 입장도 좀 있고요.

【전문가 5】

표준조례를 잘 만들어서 내려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그런 경우에는 표준조례가 있으면 빨리빨리 정비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가 1】

표준조례안은 그냥 위에서 옛날에 준칙안 내려오듯이 그렇게 해 버리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전문가 3】

### 3) 위임의 한계 이탈

조례에 대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실무 담당자들이 하나의 성과 내지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구 정도로 인식함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정 등을 넣어 위임의 한계 이탈이라는 법적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법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

로 해석하여 추가로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문제로 파악된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법령상 근거가 없는 손해배상 규정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실무관님들이나 담당자님들이 강제 보험 가입규정을 절대 안 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걸 빼버리면 운영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령의 근거 없이 과도한 조례협약서를 규정함으로써 불공정한 거래 이런 걸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소송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 4】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걸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에서) 정하지 않았는데 법의 취지로 볼 때 이런 것이 들어가서 제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조례를 보면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제안사유를 더 집어넣고 하는(후략)... 【전문가 1】

#### 4) 지방자치단체의 상황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외부의 인식

기초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조례의 취지를 살려 지역의 사정에 맞게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지방자치단체별 상황이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타 지역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며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 공무원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조례의 취지를 살려 운영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법에서 어떤 제한을 두는 규정을 만들고, 그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좀 완화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마다 다르게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원이 들어

오는 거지요. “왜 옆 지방자치단체는 훨씬 더 완화해주는데 우리는 완화 해주지 않느냐?” 그래서 서로 다르게 규정을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중략) 사실상 위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시·군 직원들은 민원을 두려워하고. 【전문가 7】

정말 다른 시·군에서는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조례가 제정되는데 왜 유독 우리는 안 됩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중략) 기관의 장이라든지, 그런 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안 되는지를 정말 모르겠다고 이렇게 간혹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전문가 4】

### (3)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문제점에 대한 원인과 대안

#### 1) 조례 제정권자들의 법제 중요성 인식 부족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결과, 현재 조례 제정권자들이 조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기 때문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완성도가 높은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지 못하고, 관련 인력에 대한 보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나왔던 인력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바탕에는 조례 제정권자들의 중요성 인식 부족이 기인하는 바가 크다. 예산이나 대외적으로 시민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법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인식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중요해야 됴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안 됐다고 보여요. 【전문가 4】

조례제정권자들의 관심도가 너무 낮다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예산 이런 거에는 엄청나게 관심을 쏟으시면서 조례에는 관

심이 낮다는 생각이 들고, 조례를 가져가더라도 여기에서 파생되는 예산가지고만... 【전문가 6】

법제에 대한 인력보강에 대해서 자치단체장님의 인식이 좀 바뀌어서 법제에 대한 최소한 전문가로 양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문가 1】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법제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시고, 임기제라도 좀 더 뽑아주시면 좋은데, 저희가 그래서 변호사를 뽑으려고 노력하는 데도 잘 안돼요. 임기제 더 뽑겠다고 하는데도 이게 자꾸 커트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 필요한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 7】

아무래도 민선에서 표가 되고 뭔가 화려한 광고가 되고 이러지를 았다 보니까 (조례제정권자들이) 법제에 대한 인식은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지요. 【전문가 5】

## 2) 법제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대안

조례를 다루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의 부족과 둘째, 실제 업무 담당자들의 법제 지식 부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① 법제 전문인력 필요성

참석한 전문가들 모두 법제 전문인력의 부족과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인식하고 있으나 예산, 정원 등의 이유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확보한 경우라도 법제가 주력 분



야가 아니므로 체계적인 전문적인 경력을 쌓아가는 경로가 원활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개별 부서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전문가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총괄 팀에 있는, 최소한 거기서 다른 부서를 봐주는 총괄 팀에 있는 담당자들은 최소한 법제업무 전문가로 하고, 또 업무 양도 최소한으로 만들어 줘야 할 것 같아요. 【전문가 1】

지금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또 예산도 열악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본인들이 이제 전문성을 키우기도 어렵거니와 그 다음에 전문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요.

계속해서 관심을 높여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를 찾으려면 없더라고요... 지금은 뭐 딱히 어떻게 (할 방법이...) 이렇게 본인들이 부지런히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 2】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전문가들, 그런 분들께서 체계적인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리가 조금 안 되고 있어요. 【전문가 4】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위에서 살펴본 법제 전문가 필요성과 더불어 이들을 충원하는데 대한 방법도 제시하였다. 즉 예산만 허용된다면, 최근에 정원에 구애받지 않는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데, 다만, 이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역시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지가 필수임을 함께 언급하였다.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예산만 있으면 정원에 없이 임기제는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런 것을 모르는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있더라고요. 위에서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첫 번째이고, 의지만 있으면 다 돼요. 【전문가 2】

아울러 전문가들을 영입한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법제에 관한 전문가를 충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충원한 법률 전문가들에게도 법제 전문 교육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법제처 해설서 이상의 법제 실무에 관한 전문적인 자료가 공유될 수 있는 자료로서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보다 소수의 수십 년 경험을 지닌 전문가들의 암묵지로 구전되는 정도에 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자료화, 체계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법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책을 찾으려고 하면 생각보다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갈구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관님이라든지 로부터 구두로 듣는 거죠. 법제 부분에 대한 지식들이 차곡차곡 쌓인다는 느낌이 생각보다는 많이 없다고 봅니다.

**【전문가 4】**

그 밖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법제 전문인력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를 운영하면서 효율성을 꾀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자문 응답을 성실히 해주는 고문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맡기는 방식으로 고문변호사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고문변호사제도만 잘 운영해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고문변호사들 운영을 할 때 보통 지방자치단체는 월 보수를 매우 적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 공무원들이) 질문도 짧게 했는데 (고문변호사들도) 잘 모르다보니까 답장도 짧게 보내 와요. 그래서 저희가 채택을 했던 방식은 자문을 잘해주는 사람한테 사건을 준다는 거였어요. **【전문가 5】**

## ② 실무 담당자들의 법제 지식 부족

실무 담당자들의 법제 지식 부족에 대해서는 크게 순환근무로 전문성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기본적인 법제 지식의 부족이 그 원인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실무선에서 순환보직이 되다 보니까 법제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이 맞는가, 안 맞는가, 또 조례규칙을 검토하면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 예를 들어 실무자들이 잘 접해보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 3】

담당자들도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벨이 오른다고 했을 때라도 또 기간이 되면 또 다른 기관, 또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는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축적이 되지 않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전문가 4】

저도 여러 부서를 돌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들 일반직 공무원들이 충분히 시인을 합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커리어나 그런 지식들은 남의 것이 되어 버립니다. 【전문가 8】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굉장히 그걸 어려운 걸로 생각해요. 의회에 변호사 한 분이 채용되어 있고, 자치단체에 송무팀장이 한 분이 채용되어 있는데,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의원들이 어떤 안을 내면 그것과 관계있는 부서에서 의견을 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사실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전문가 2】

먼저 순환보직에 따른 문제점의 대안으로 법제 부분에 있어 법제전문가 제도를 도입하거나 법제 전문기관에 파견을 보내는 방법으로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법제 분야에 대한 인식 및 효율

증진을 위해 조직의 분리를 통해 독립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의견도 제시하였다.

어떤 특수 직군에 대해서는 종신적으로 한 직군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퇴직 후에도 다시 일을 한다는 제도가 있다고 뉴스에서 봤는데, 그런 제도를 법제전문가 제도로 도입을 하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시에서는 전문가제도를 도입해서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오랫동안 할 수 있게 해서 전문직으로 키워준다고 합니다.

이런 전문가 제도는 국가정책적으로 추진해서 아무래도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단지 그냥 몇 번만의 교육이 아니라 한 6개월 정도 법제처에 파견을 보낸다든지 해서 마치 신입 공무원, 신규 공직자 과정처럼 한 6개월 정도 훈련을 시킨다면 정말 뛰어난 인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가 5】

법제 부분에 대한 별도의 조직이 전반적인 기관에서 분리가 되어 있다면 그런 조직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다른 부분들도 아, 법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이 분리가 되고, 뭐 이렇게 하나보다. 뭐 이런 인식이 들 수도 있고요. 팀이 분리가 되고 조직 구성이 되면 별도 팀이 있기 때문에 팀 나름대로의 어떤 성과를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 4】

다음으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법제교육을 비롯하여 기본 법률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법제 관련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실무 공무원들의 법제 및 법률 관련 지식의 수준이 향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공무원 특성 상 해당 법률에 대한 지식 정도가 부족할 뿐이지, 현장에서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법률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관련된 사안들도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9급, 8급, 7급 이런 분들 있는데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법학교육을, 적어도 행정법은, 행정법하고 민법 이 정도는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공무원들 전부 다.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주기적으로 그건 교육을 계속해서 시켜서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와야.

이제 법제교육도 중요하지만 기본 법률에 대한, 민법하고 행정법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을 강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전문가 2】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조례 담당) 인력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거나 좀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전문가 4】

교육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교육에 대해 맞춤형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년 단위로 특성별로 교육 일정을 통해 다양한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으며, 그렇게 시행될 때 비로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도에서 법제 교육을 하고는 있는데 그게 좀 효과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제처에서 아마 도움을 받아서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복지공무원, 건축공무원, ○○ 공무원 다 얹혀가지고 한 번에 하는 교육은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 6】

저희 같은 경우는 도에서도 법제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들 자체가 그러니까 교육1, 교육2, 교육3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축적되는 교육이 되어야지요. 【전문가 4】

심화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냥 되풀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교육이 그러니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좋은데 뭔가 좀 더 깊이 알고 싶은데 그런 부분은 그 교육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교육 자체는 이것하고, 저것하고 멈췄다가 또 이것하고 이렇게 해버리는 교육이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들어도, 이걸 지난번에 들었던 내용인데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법제교육은 한번 들으면 끝나는 교육, 약간 이런 맥락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1년 단위 기준으로 통합적으로 좀 운영을 해주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든 아무래도 좀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게 생각합니다. 【전문가 7】

### 3) 재량권 행사를 위한 근거자료 부족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를 만드는 경우, 관련 자료들이 충분하지 않음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중앙 부처의 법제 이외에 조례에 대해서도 관련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었다.

지방자치제로 인해 주어지는 그 재량의 어떤 모호함, 어디까지 우리가 몇 %까지 이 조례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담당자들이나 실무자들이 고민이 많거든요.

“우리 시는 50%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근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어떤 정보라든지, 국책기관이라든지, 외부기관에서 조금 더 그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근거, 백업자료를 마련을 해주면 아무래도 일선 실무자들이나 조례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어느 연구

기관에서 이런 자료를 낸 게 있는데 우리 시의 생각을 해보니까 객관적으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근거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된다면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인 그런 사무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재량성이 조금 더 견고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 3】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중략) 이것을 도입했을 때 얼마큼 파급 효과가 있고, 또 얼마큼 수혜혜택이 있는가를 재정분석이나 아니면 검토의 견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자료가 많이 부족하고요, 국회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기본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얼마큼 수혜성이 있어?”라고 물어보면 실무자는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지 않아 머뭇머뭇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전문가 7】

## 2.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의견

### (1) 조례 일몰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방안들이 제시되었는데, 먼저 실무 담당자들이 담당 조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될 수 있도록 조례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위임조례의 경우 법령에서 위임한 것을 일몰 시점에 재검토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조례에 대해서 유효기간을 좀 넣어가지고 3년이나 5년 정도 그러면 적어도 그 기간 안에는 1번 정도는 검토를 할 기회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유효기간을 넣고 그 기간 안에 담당자가 ‘아, 그래. 이런 조례가 있었구나. 우리 시, 우리 과, 우리 팀에서 이런 조례를 담당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좀 느껴보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바쁜데 이런 부담을 드려야 되나,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동안 잘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우리 과 조례만 유효기간을 뒤서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전문가 4】

조례일몰제, 지금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는 5년 이내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조례일몰제를 도입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필요 없는 조례들을 계속 존치시키는 것은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전문가 1】

법령에서 위임한 거라도 다시 재검토한다는 취지로, 왜냐하면 법은 계속 살아있는데 조례를 없애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없애는 게 아니라 재검토한다는 취지로 이해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 2】

## (2) 조례 영향평가의 필요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효용성이 떨어진 조례들에 대한 정비를 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실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위원회 관련 조례 등 유명무실한 조례들에 대해 통폐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기에 적용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기적으로 조례를 정비해야 하는데 하나의 조례만 딱 빼내서 정비를 하는 건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정비를 한번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준을 세워서 평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1】

한 4, 5년 동안 계속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 조례의 효용성이 떨어지면 그와 관련된 지원했던 조례들을 찾아서 폐지를 지금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에 만들었던 취지하고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조례들은 폐지하고, 또 통합이 될 필요가 있는, 특히 위원회 조례가 그렇습니다. 각종 위원회 조례를 두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이 거의 한 20% 정도 됩니다.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들은 통·폐합해가고 있거든요. 【전문가 3】

조례는 일괄적으로 계속해서 관리가 될 필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조례 중에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특히 도라든지 아니면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문가 5】

지금 연 한 2회 정도 자치법규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필요 없는 조례는 폐지 권고를 하고 있고요. 【전문가 4】

### (3) 상위기관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원 방안 및 외부 컨설팅 필요성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고, 노력을 하려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산이나 인력의 부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법제처 또는 광역 시도에서 기초 시군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공신력을 갖춘 외부 기관의 법제 관련 컨설팅은 기관 내부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도에서도) 크게 중요한 사건에 자문을 해준다든가, 지금 자문팀을 만들어서 하기는 하는데, 도에서 도 예산으로 (시군에) 청문관을 파견해 주든가. 법제처에서 법제협력관 같은 관련 전문가를 파견해 주든가. 이제 외부지원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해요.

【전문가 2】

어떤 전문가가 있으면 금방금방 배울 수가 있는데 공문으로 질의하고 이러는 것은 한참 좀 거리가 있지요. 【전문가 7】

객관적으로 제3자가 우리를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객관성이 담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의회에 가서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결과 의견이 나온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의원님들도 “아, 그랬어요? 그러면서 통과.” 뭐 이런 식의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요.

외부에서 별도로 어떤 단체라든지 법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뢰도 조금 하면 유기적으로 조금 더 자치법규가 정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4】

#### (4) 조례 및 법령의 필요성 인식

기초지방자치단체 실무 담당자들은 조례에 대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보다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 조례만을 보는 상황에서 조례에 법령 상 내용을 중복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위임입법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표시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얻을 수 있었다. 나아가 조례와 법령과의 링크 시스템의 보다 빠른 연동으로 인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었다.

조례만으로도 어느 정도 그 내용 전반이 커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 4】

법령의 위임조항을 명시해서 그것을 항상 찾아볼 수 있게, 아무 것도 찾아볼 근거가 없으니까 이게 몇 조에 근거한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넣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모법이라든지 위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좀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 1】

## 제 6 장 결 론

이상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를 비롯한 1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① 국토·교통 관련 분야, ② 산업·자원 관련 분야, ③ 보건·복지 관련 분야, ④ 농수축산 관련 분야, ⑤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⑥ 환경 관련 분야 총 1,612건의 조례 중 ①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②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③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④ 기타(용어 사용이나 문장 구성 등 형식적 완결성이 떨어지는 경우나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조례 사례) 사례 총 222건을 발굴하여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 &lt;개선 대상 사례 발굴 현황&gt;

분 야	항 목	발굴 내용 및 건수
국토 · 교통	•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평택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제4조” 등 16건 발굴
	•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제3항” 등 7건 발굴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8조 제4호” 등 14건 발굴
	• 기 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등 11건 발굴
	소 계	48건

제 6 장 결 론

분 야	항 목	발굴 내용 및 건수
산업 ·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li> </ul>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 한 조례 제35조 제4호 ” 등 12건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타</li> </ul>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 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등 4건 발굴
	소 계	16건
보건 ·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li> </ul>	“정읍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6조 제1호” 1건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li> </ul>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 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등 2건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li> </ul>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등 13건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타</li> </ul>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 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 례 제7조 제4항” 등 7건 발굴
	소 계	23건
농수 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li> </ul>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 리 조례 제7조” 등 19건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li> </ul>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9조 제3항” 등 15건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li> </ul>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2항” 등 10건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타</li> </ul>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 리 조례 제9조 제2항” 등 6건 발굴

분 야	항 목	발굴 내용 및 건수
	소 계	50건
문화 · 체육 · 관광	•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3항” 등 6건 발굴
	•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별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 관한과징금징수조례 제4조” 등 2건 발굴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제12조 제1호” 등 11건 발굴
	•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 제1호” 1건 발굴
	• 기 타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등 2건 발굴
	소 계	22건
환 경	•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6조” 등 13건 발굴
	•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별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제20조 제3항” 등 43건 발굴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제41조 단서” 등 4건 발굴
	• 기 타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제2항” 등 3건 발굴

분 야	항 목	발굴 내용 및 건수
	소 계	63건
	총 계	222건

이러한 조례 사례 발굴 외에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자치입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초점 집단 면접 조사 방법(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활용하여 자치입법의 문제점 및 운영 현황, 자치입법의 개선을 위한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치입법권은 입법자와 그 수범자 간의 간격을 좁히고 당해 지역 내지 주민에게 적용되는 자율적·탄력적 법형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기결정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sup>103)</sup> 자치법규는 지역적응성·상황즉응성·지역종합성의 성향을 갖는 법규로서<sup>104)</sup>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하고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자치법규가 국가 법령 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주민의 생활 속에서 자치법규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가하는 현실에 비추어 조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헌법·법령에 합치하게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중요한 입법적 과제라 할 것이다.<sup>105)</sup>

이하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헌법·법령에 합치하게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비 방향(내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sup>106)</sup>

103) 문상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입법권 배분 - 자치입법권의 해석론과 입법론 -, 50쪽.

104) 문상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입법권 배분 - 자치입법권의 해석론과 입법론 -, 50쪽.

105) 이세정,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482쪽.

106) 이하의 정비 방향(내지 방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의 이해 편의를 도모

(1) 조례는 법률이나 명령 등 국가법과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이상 무엇보다도 이와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sup>107)</sup> 우리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법」 제22조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법률우위의 원칙과 조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2015년도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상위법령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sup>108)</sup>

최근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필요사항을 법령이 공포하는 즉시 일반국민 및 공무원 등에게 이메일로 알려 주는 ‘법령개정 알림 서비스’를 개시하였고,<sup>109)</sup>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상위법령 개정 알림’을 확인할 수 있다.<sup>110)</sup> 또한 FGI 결과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법제처의 상위법령 개정알림을 참고하여 지속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제정·개정해야 할 조례를 체크하고 있다고 한다.

---

하기 위하여 2015년도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에서 제시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정비 방향(내지 방안)을 기초로 그 내용을 보충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발전시킨 것임을 밝힌다.

107) 박영도, 자치입법의 이론과 실제, 17쪽.

108) 이세정,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483쪽.

109) 법제처, 보도자료(조례 등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인다 - 시·도 법무담당관 대상 조례 정비방안 논의 -), 2016. 4. 27.

<<http://www.moleg.go.kr/news/mglNews?searchCondition=AllButCsfCd&searchKeyword=%EA%B0%9C%EC%A0%95+%EC%95%8C%EB%A6%BC&x=0&y=0>> (최종접속 : 2016. 10. 1)

110) <<http://www.law.go.kr/unOrdinSc.do?menuId=2&schtype=0&query=&nwYn=6>> (최종접속 : 2016. 10. 1)



FGI 결과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법제처의 상위법령 개정 알림 제도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제정·개정 조례 체크는 일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정비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FGI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법령이 썰 새 없이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고쳐지는 상황 속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이를 제때 반영하는 데에는<sup>111)</sup> 여전히 예산 부족, 순환 보직에 따른 입법전문인력 부족, 의회와의 협조 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상위법령 제·개정 상황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조례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인력 확보, 의회와의 협조 노력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도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에도 상위법령의 내용을 조례에서 단순반복하여 규정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항을 새로 규정하는 사례 역시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국가법령의 규정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단순반복하여 규정하는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FGI 결과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조례 관리 및 집행의 편의상 상위법령의 내용을 조례에서 단순반복하여 규정하는 불가피성이 있기는 하나, 법령 입법자의 입법취지·의도에 반하여 상위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내용을 조례에서 단순반복하여 규정하더라도 조례에서 새로운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sup>112)</sup>

---

111) 홍준형, 자치법규 통합관리의 효과, 경향신문, 2015. 8. 1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122057535&code=99030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122057535&code=990304)>  
(최종접속 : 2016. 8. 31) ; 이세정,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483쪽.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122057535&code=99030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122057535&code=990304)>  
(최종접속 : 2016. 10. 25)

112) 이세정,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483-484쪽.

(2)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침해유보론을 채택하고 있다.<sup>113)</sup> 이에 대해서는 위헌 시비가 제기되고 있으나,<sup>114)</sup> 우리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각각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 제1항,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5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그 경우라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제정되는 이른바 위임조례는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정할 수 있으므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그 조례의 성질을 묻지 아니하고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sup>115)</sup>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113)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156쪽.

114)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법률유보원칙과의 관계에서 구체화되는 헌법 제117조 제1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서 합헌설을 취하는 입장(김동희, 앞의 책, 86쪽),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헌법이 부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조례제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박윤훈·정형근, 최신행정법강의(하), 박영사, 2009, 131쪽) 또는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입법권을 부여한 취지에 반하는 것(김남진, 조례제정권의 범위, 고시연구, 1997. 9, 20쪽)으로서 위헌설을 취하는 입장, 법령에 의한 규율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의 위임이 없이도 직접 규율을 할 수 있다고 보아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헌법합치적으로 새기는 입장(류지태·박종수, 행정법신론, 박영사, 2011, 925쪽)으로 학설이 나뉘고 있다.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157쪽.

115) 대판 2007. 12. 13, 2006추52. 그 밖에 대판 1995. 5. 12, 94추28. 대판 2009. 5. 28, 2007추134, 대판 2012. 11. 22, 2010두19270, 대판 2012. 11. 22, 2010두22962 등도 같은 취지의 판례이다.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이를 구체화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례들은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주민들에게 자판기 설치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특히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 소정의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조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한다”<sup>116)</sup>라고 판시하여 이를 합헌으로 이해하고 있다.

2015년도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초지방자치단체 다수의 조례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재산권·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에 관해서 규정하거나 주민에게 등록·신고·준수의무 등 작위의무, 명칭사용금지 등 부작위의무를 규정하거나 가산금 등 새로운 제재를 신설하고 있다.<sup>117)</sup>

이와 같은 사례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비추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법집행시 주민 등 이해관계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며 법적 분쟁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상위법률에 위임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임 근거가 없는 경우 조례에서 이를 새로 정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sup>118)</sup>

---

116) 헌재결 1995. 4. 20, 92헌마264, 279 병합.

117) 이세정,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485쪽.

118) 이세정,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485쪽.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와 그 원리적 배경이 된 법률유보론을 완고하게 해석하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는데, 이는 지방자치 전면복원 이후의 조례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매우 빈약하거나 편향된 조례들이 주로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sup>119)</sup>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하면 조례의 실효성이 저하되고,<sup>120)</sup> 조례제정권과 관련하여 국가법령에 의한 수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순간 이미 조례는 자치입법이 아니라 국가의 하위법령으로서 단순한 집행의 기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조례는 자치입법으로서의 규범적 역할을 본질로 하지만 국가법질서의 구축과 관련하여서도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시범입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sup>121)</sup>에서 자치행정의 의미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sup>122)</sup>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제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sup>123)</sup>에 비추어, 지방분권의 진행에 따른 지방행정 수요의 증대, 주민에 보다 밀

119) 문상덕, 조례와 법률유보 재론, 2쪽.

120)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보도자료(“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채택”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적극적 지방분권 추진 촉구-), 2014. 3. 17.

<<http://www.gaok.or.kr/gaok/bbs/B0000005/view.do?nttId=4286&searchCnd=&searchWrd=&gubun=&delCode=0&useAt=&replyAt=&menuNo=200023&sdate=&edate=&viewType=&type=&siteId=&option1=&option2=&option5=&pageIndex=5>> (최종접속 : 2016. 10. 11)

121) 조성규, 지방자치 20년을 통한 자치입법권 보장의 평가와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5. 6, 143쪽.

122) 이세정,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485-486쪽.

123) 김남진·김연태, 앞의 책, 127쪽.

접한 행정의 구현, 헌법상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 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수권이 없어도 일정한 경우에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입법적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124)</sup>

(3) 조례의 내용은 이행하여야 할 의무자가 다른 도움 없이 그 규범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히 명확해야 한다.<sup>125)</sup> 그런데 2015년도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불명확하거나 중의적으로 해석가능한 용어·문장을 사용하여 조례의 수범자가 그의 의미·내용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조례를 제·개정할 때에는 가급적 확정 개념을 사용하고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법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주민도 그 내용을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규율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sup>126)</sup> 법집행 및 해석상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2015년도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비법률 용어를 사용하거나 문장이 매우 복잡하고, 매끄럽지 않으며 구어체형 문장을 사용하는 경우, 조례의 체계가 정합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그 형식적인 완결도는 매우 떨어진다.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입법전문인력 부족, 조례에 대한 낮은 관심도 등에 비추어 예측가능한 결과라고 할 것이나, 지방자치발전에서의 조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입법 단계에서부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을 참고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 문법

124) 이세정,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486쪽.

125)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162쪽.

126) 이세정,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486쪽.

적으로 적절하며 법문장으로서 적합한 문장 사용 등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sup>127)</sup>

(5) 지방의회의원 간 조례 발의 경쟁 심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사항 이행, 시민단체 등 이익집단의 증대, 상위법령의 제정·개정 사항의 반영 등을 이유로 조례의 제정·개정 수요가 매우 증대하고 있다. 그런데 조례를 입안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 전문지식 및 다양한 행정경험을 필요로 하나<sup>128)</sup> FGI 결과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수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규 담당자의 수가 매우 적고, 이마저도 순환보직에 따라 입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고, 기초지방의회 의원이나 전문위원<sup>129)</sup>의 조례에 대한 관심·전문성도 부족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경우에 따라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답습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참고한 표준조례나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문제점이거나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와 여건에 맞는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답습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거나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가 제정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조례를 제정·개정할 때 표준조례,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하더라도 법령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헌법상 평등·비례·명확성의 원칙 등 조례 입안기준, 해당

127) 이세정,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487쪽.

128) 정준현 외,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구(區) 소관 조례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연구, 법제처, 2015. 12. 9, 1131쪽.

129) 2016. 9. 21에 실시한 자치입법 전문가 개별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경우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집행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약하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전문위원으로 임용될 경우 의원들에 대한 입법보좌와 의정지원 역할이 미약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6) 조례입법관리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입법 전문 인력 및 시스템이 필요하고, FGI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률자문관제를 도입하거나 법제 검토지침 등을 만들어 참고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다수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련 예산 및 전문 인력의 확보의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는바, 임기제나 개방형 법제전문인력 채용 확대, 조례의 제정·개정 시 입법 전문가의 참여,<sup>130)</sup> 중앙 부처 차원에서의 법제전문인력 파견지원 등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법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마지막으로 FGI 참석자들은 전체적으로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의 입법 관련 지식 및 능력 함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조례를 법령 및 헌법에 맞게 제정·개정하고 제대로 이해하며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헌법, 행정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및 「법령 입안 심사 기준」,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대한 단계적·심층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관심 및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130) 정준현 외, 앞의 보고서, 1131쪽.

## 참 고 문 헌

- 김남진, 조례제정권의 범위, 고시연구, 1997. 9.
- \_\_\_\_\_ · 김연태, 행정법 II, 법문사, 2015.
- 김동희, 행정법 II, 박영사, 2015.
- 김춘환, 법률과 조례의 관계, 토지공법연구 제24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4.
- 류지태 · 박종수, 행정법신론, 박영사, 2011.
- 문상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입법권 배분 - 자치입법권의 해석론과 입법론 -, 지방자치법연구 제12권 제4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2. 12,
- \_\_\_\_\_, 조례와 법률유보 재론, 행정법연구 제19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7. 12.
-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15.
- 박순중, 자치입법 처리 소요기간의 영향요인 분석-광역자치단체 조례 제정안을 중심으로 -,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16. 2.
- 박영도, 자치입법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1998.
- \_\_\_\_\_ 외,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정비 방안 연구, 법제처, 2012.
- 박윤훈 · 정형근, 최신행정법강의(하), 박영사, 2009.
-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 2014.
- 이기우, 부담적 조례와 법률유보에 관한 비판적 검토, 헌법학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07. 9.



참 고 문 헌

- 이기우, 지방의회운영의 자율성 향상방안 - 자치입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09.
- 이세정,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10.
- \_\_\_\_\_, 행정절차법 개선을 위한 청문제도 내실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6.
- \_\_\_\_\_, 외,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 방안, 법제처, 2013.
- 정준현 외,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구(區) 소관 조례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연구, 법제처, 2015. 12. 9.
- 조성규, 법치행정의 원리와 조례제정권의 관계 - 조례에 대한 법률유보의 문제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3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5. 5.
- \_\_\_\_\_, 지방자치 20년을 통한 자치입법권 보장의 평가와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5. 6.
- 최승원 외,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군(郡)소관 조례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연구, 법제처, 2015. 11.
- 한귀현, 독일 지방자치법상의 조례론에 관한 소고 - 그 역사적 구조를 중심으로 -, 독일학연구 제14권, 동아대학교 독일학연구소, 1998.
-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15.
- \_\_\_\_\_,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15.
- A. Gern, Kommunalrecht, Baden-Württemberg, 9. Aufl., 2005.
- G. Waibel, Gemeindeverfassungsrecht, Baden-Württemberg, 5. Aufl, 2007.
- R. A. Krueger, *Focus Groups*. Newbury Park, 1988.

R. Stober, Kommunalrech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3. Aufl., 1996.

“궁박? 구거? 어려운 민법 표현 사라진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이투데이, 2015. 8. 25.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187082>>

“민법 어려운 한자·일본식 표현 57년 만에 사라진다”, 법률저널, 2015. 8. 28.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811>>

“‘일본식’ 민법 표현, 57년 만에 사라진다” 헤럴드경제, 2015. 8. 25.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825000975&md=20150826003218\\_BL](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825000975&md=20150826003218_BL)>

기록으로 보는 지방자치의 발자취, “지방선거”, 국가기록원.

<<http://theme.archives.go.kr/next/localSelf/vote.do?page=2>>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보도자료(“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채택”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적극적 지방분권 추진 촉구-), 2014. 3. 17.

<<http://www.gaok.or.kr/gaok/bbs/B0000005/view.do?nttId=4286&searchCnd=&searchWrd=&gubun=&delCode=0&useAt=&replyAt=&menuNo=200023&sdate=&edate=&viewType=&type=&siteId=&option1=&option2=&option5=&pageIndex=5>>

법제처, 보도자료(조례 등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인다 - 시·도 법무담당관 대상 조례 정비방안 논의 -), 2016. 4. 27.

<<http://www.moleg.go.kr/news/mglNews?searchCondition=AllButCsfc&searchKeyword=%EA%B0%9C%EC%A0%95+%EC%95%8C%EB%A6%BC&x=0&y=0>>

참 고 문 헌

행정자치부·법제처, 보도자료(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자치  
법규 13,946건 정비 완료- 2015년 자치법규 정비 및 법제협  
력관 운영 성과보고회 개최 -), 2015. 12. 24.

<<http://www.moleg.go.kr/news/report?pstSeq=71226&pageIndex=20>>

행정자치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2015년  
1월 1일 현재), 2015, 4쪽.

<[http://www.moi.go.kr/fi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  
o?bbsId=BBSMSTR\\_000000000055&nttId=46105](http://www.moi.go.kr/fi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55&nttId=46105)>

홍준형, 자치법규 통합관리의 효과, 경향신문, 2015. 8. 1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1  
22057535&code=99030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122057535&code=990304)>

## 연구대상 조례 목록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토·교통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강릉, 원주, 포항, 창원, 여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강릉, 원주, 포항, 창원, 청주, 아산(소규모), 여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포항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기술통합위원회조례	창원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지부담금 징수조례	포항, 창원, 청주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평택, 강원, 원주, 포항, 청주, 아산, 창원, 정읍, 여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평택, 강원,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정읍, 여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		○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 대한보상금지급조례		○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평택, 강릉, 원주, 창원, 청주	

《부록》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평택, 강원, 포항, 청주, 아산, 여수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 관한 조례		○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평택, 강원, 원주, 포항, 청주, 아산, 창원, 정읍, 여수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개발사업시행조례		○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평택,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여수	

■ 산업·자원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강릉, 청주, 아산, 여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평택, 강릉, 포항, 창원, 청주, 정읍, 여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평택, 강릉, 원주, 포항, 창원, 아산, 정읍, 여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강릉, 원주,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정읍, 여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보건·복지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강릉, 여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원주, 포항, 창원, 아산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평택, 강원, 원주, 포항, 청주, 아산, 창원, 정읍, 여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평택, 원주, 청주, 아산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취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평택, 포항, 창원, 아산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포항, 청주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강릉, 포항, 청주, 여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창원, 청주, 정읍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평택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청주, 여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평택, 청주	

《부록》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평택, 강원, 원주,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여수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평택, 원주, 창원, 청주, 아산, 여수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평택, 강릉,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정읍, 여수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아산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강릉, 포항, 창원, 정읍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평택, 강릉, 원주, 포항, 창원, 청주, 정읍, 여수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원주, 청주, 아산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평택, 강릉, 원주, 포항, 청주, 아산, 정읍, 여수	
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평택, 강릉,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여수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평택, 원주, 창원, 청주, 아산, 여수	
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평택, 강릉, 아산, 정읍, 여수	
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여수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원주, 창원, 여수	
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
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릉, 창원	
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증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
3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증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평택, 아산, 여수	
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평택, 강릉, 원주, 창원, 청주, 아산, 정읍	
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평택, 강릉, 원주, 청주, 아산, 정읍	
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강릉, 포항, 청주, 아산, 여수	○
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평택, 강릉, 원주, 포항, 창원, 청주, 정읍, 여수	
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강릉, 포항, 창원	
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원주, 포항, 아산	
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택, 아산	
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평택, 강릉, 원주, 청주, 아산, 정읍, 여수	

■ 농수축산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평택, 강릉, 포항, 여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주, 아산, 여수	

■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사업에 관한 규정		○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	원주, 창원, 아산, 정읍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창원, 아산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택, 강릉, 원주, 포항, 창원, 정읍, 여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평택, 강릉, 원주,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정읍, 여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에 관한 조례		○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창원, 청주, 정읍, 여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택, 강릉, 원주,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정읍, 여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평택, 강릉, 원주, 포항, 청주, 아산, 정읍	

■ 환경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평택, 포항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집·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평택, 원주,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정읍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여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평택, 강릉, 원주, 포항, 창원, 아산, 여수	

《부록》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평택, 창원, 청주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평택, 강릉, 원주,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정읍, 여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평택, 강릉, 원주,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정읍, 여수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	평택, 강릉, 원주,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정읍, 여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아산	

## 경기도 평택시

■ 국토·교통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평택 서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		○
2	평택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체빙에 관한 조례	강원, 원주,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정읍, 여수	
3	평택시 건축 조례	강원, 원주,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정읍, 여수	
4	평택시 견인자동차운행및사용료징수에 관한조례	강릉, 원주,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정읍, 여수	
5	평택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원주, 여수	
6	평택시 경관 조례	강릉, 원주,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정읍, 여수	
7	평택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강릉, 청주, 아산, 정읍, 여수	
8	평택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원주, 창원, 여수	
9	평택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릉, 원주, 창원, 청주, 아산, 정읍, 여수	
10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강릉, 원주,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여수	

《부록》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1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 관한조례	강릉,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여수	
12	평택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
13	평택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원주, 포항, 창원	
14	평택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15	평택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범명개정)		
16	평택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포항	
18	평택시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9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청주, 아산, 정읍, 여수	
20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21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강릉,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정읍, 여수	
22	평택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릉,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여수	
23	평택시 도시재정비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24	평택시 버스운영개선위원회 조례	포항	
25	평택시 보도구역안형단차도설치에 관한 조례	창원, 청주, 여수	
26	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27	평택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28	평택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여수	
29	평택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운영 조례	원주, 정읍	
30	평택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청주	

2. 경기도 평택시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31	평택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강릉	
32	평택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 조례	아산	
33	평택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원주, 아산	
34	평택시 조경 및 가로수 관리 조례		○
35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36	평택시 주택 조례	아산, 정읍	
37	평택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관련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조례		○
38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39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강릉, 원주,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정읍, 여수	
40	평택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1	평택시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강릉, 원주,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정읍, 여수	
42	평택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
43	평택시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
44	평택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
45	평택용이구역도시개발사업조례		○

■ 산업·자원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평택시기업애로해소음부즈만운영조례		○
2	평택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
3	평택시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4	평택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		○
5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강릉, 원주, 포항, 창원, 청주, 정읍	
6	평택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및지역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
7	평택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
8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여수	
9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강릉, 청주, 아산	
10	평택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원주, 포항, 아산, 정읍	
11	평택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아산, 여수	○
12	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		
13	평택시 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14	평택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2. 경기도 평택시

■ 보건·복지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평택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2	평택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3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		○
4	평택시 공공시설내 취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5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6	평택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
7	평택시 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포항, 청주, 정읍, 여수	
8	평택시 노인요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정읍, 여수	
9	평택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10	평택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창원, 아산	
11	평택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 지원 조례	아산	
12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13	평택시 보건소수가조례(평택시 보건진료소진료수가 조례 check)		
14	평택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
15	평택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강릉, 원주,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정읍, 여수	
16	평택시 보건진료소진료수가 조례		

《부록》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7	평택시 복지위원정수 조례	원주, 창원	
18	평택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
19	평택시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0	평택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강릉, 여수	
21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강릉, 원주, 포항, 창원, 아산, 여수	
22	평택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3	평택시 읍·면·동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정읍, 여수	
24	평택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아산	
25	평택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26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원주, 창원, 청주, 아산, 정읍, 여수	
27	평택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포항, 창원, 청주, 아산	
28	평택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9	평택시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조례	아산	
30	평택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주	
31	평택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32	평택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33	평택시 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강릉, 원주, 포항, 창원	
34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35	평택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2. 경기도 평택시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36	평택시지역보건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37	평택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원주, 창원, 청주	
38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9	평택시차세대위원회운영조례		○
40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41	평택시 청소년지도위원회의위촉에관한조례	아산, 정읍	
42	평택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강릉, 원주,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정읍, 여수	
43	평택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조례		
44	평택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45	평택시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46	평택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아산	

■ 농수축산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2	평택시공수의조례	강원, 원주, 포항	

《부록》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3	평택시 과학영농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읍	
4	평택시 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창원, 여수	
5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포항, 창원, 아산, 여수	
6	평택시 농어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평택시 농업인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강릉, 원주, 포항, 창원, 청주	
8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원주, 포항, 청주, 정읍, 여수	
9	평택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	창원, 청주, 아산, 정읍	
10	평택시 자랑스러운 농어민대상 조례		○

■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		○
2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3	평택시 문화상 조례	창원	
4	평택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5	평택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포항	
6	평택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강릉, 원주, 포항, 청주, 정읍, 여수	

2. 경기도 평택시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7	평택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원주, 포항, 창원	
8	평택시 예술인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정읍, 여수	
9	평택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		○
10	평택시진위천시민유원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
11	평택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12	평택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및체육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	강릉, 원주, 청주, 여수	
13	평택시평택농악전수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
14	평택시평택호관광단지관리조례		○
15	평택시평택호관광단지주차장이용료징수조례		○
16	평택시평택호예술관관리·운영조례		○
17	평택시한국소리터설치및운영조례		○
18	평택시향토유적보호조례	청주	

■ 환경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평택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과태료부과및징수조례		
2	평택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원주, 청주, 정읍, 여수	

《부록》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3	평택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청주, 정읍	
4	평택시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시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		○
5	평택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6	평택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원주, 창원, 청주	
7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강릉, 원주, 창원, 청주, 아산, 정읍	
8	평택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강릉, 원주, 포항, 청주, 아산, 정읍, 여수	
9	평택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포항	
10	평택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11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강릉, 원주, 포항, 청주, 아산, 정읍, 여수	
12	평택시 수도사업조례	강릉, 원주,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정읍, 여수	
13	평택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강릉, 원주,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정읍, 여수	
14	평택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15	평택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16	평택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강릉, 원주, 포항, 창원, 아산, 정읍, 여수	
17	평택시 지하수관리 조례	강릉, 원주, 창원, 청주, 아산	

2. 경기도 평택시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8	평택시 칠괴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
19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20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강릉, 원주,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정읍, 여수	
21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강릉, 원주,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정읍, 여수	
22	평택시 환경기본 조례		

강원도 강릉시

▣ 국토·교통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강릉시 건설기계 관리조례		○
2	강릉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3	강릉시 건축 조례		
4	강릉시 경관형성 조례		
5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6	강릉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원주, 포항	
7	강릉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8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9	강릉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
10	강릉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1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12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14	강릉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15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16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부록》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7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8	강릉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19	강릉시 부동산신탁가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
21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22	강릉시 여객 및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조례		
23	강릉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24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5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26	강릉시 지하수 조례		

■ 산업·자원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강릉시 경제살리기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
2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현장 운영 조례		○
3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4	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3. 강원도 강릉시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5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6	강릉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로 지원조례	창원	
7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중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8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9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원주	
10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원주, 창원, 청주, 아산, 정읍, 여수	

■ 보건·복지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강릉시 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2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3	강릉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강릉시 경로당 지원조례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정읍	
5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6	강릉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7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록》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8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9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원주, 창원	
10	강릉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11	강릉시 사회복지봉사증 수여조례		○
12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13	강릉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14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정읍	
15	강릉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16	강릉시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7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18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
19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창원	
20	강릉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21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22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창원, 청주, 아산, 여수	
23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24	강릉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5	강릉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6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3. 강원도 강릉시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27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28	강릉시 지역보건료심의위원회조례		
29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30	강릉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31	강릉시 진폐근로자 지원 조례	원주	
32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33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원주, 창원, 청주, 여수	
34	강릉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		
35	강릉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6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37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38	강릉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
39	강릉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0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
41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아산	

■ 농수축산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강릉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원주	
2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3	강릉시 공수의 예비조례		
4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	원주, 포항	
5	강릉시 농공단지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원주, 아산	
6	강릉시 농사달력 및 영농기록장 지원 조례	원주	
7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청주	
8	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창원, 아산	
9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창원, 청주, 아산, 정읍	○
10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11	강릉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청주, 정읍, 여수	
12	강릉시 농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3	강릉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원주	
14	강릉시 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	아산, 정읍, 여수	
15	강릉시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	원주	
16	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		○
17	강릉시 수산물폐수처리장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

3. 강원도 강릉시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8	강릉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창원	
19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원주, 아산	
20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원주,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정읍, 여수	
21	강릉시 양수기 관리 및 운영 조례	원주, 창원, 청주, 아산	
22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원주, 청주, 아산, 정읍	
23	강릉시 (주)강릉농산물도매시장 출자에 관한 조례		○
24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원주, 포항, 청주, 아산, 정읍, 여수	

■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		○
2	강릉단오제운영조례		○
3	강릉시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
4	강릉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포항, 창원, 아산	
5	강릉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
6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원주	

《부록》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7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원주, 창원, 청주, 정읍, 여수	
8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9	강릉시립복지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창원	
10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운영조례		○
11	강릉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12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원주, 포항, 청주, 아산, 정읍	
13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청주	
14	강릉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원주, 여수	
15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16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원주	
17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
18	강릉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아산	
19	강릉시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조례		○
20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
21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		
22	강릉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23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포항, 정읍	
24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조례		
25	강릉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원주, 청주	

3. 강원도 강릉시

■ 환경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
2	강릉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
3	강릉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포항, 창원, 청주, 아산	
4	강릉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 징수조례	원주	
5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6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7	강릉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8	강릉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포항	
8	강릉시 수도사업설치에 관한 조례		
10	강릉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11	강릉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12	강릉시 자연환경보전조례	포항, 창원, 정읍	
13	강릉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14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
15	강릉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여수	
16	강릉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17	강릉시 폐기물 등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



《부록》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8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
19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	강릉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포항, 창원, 청주, 아산	
21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22	강릉시 환경기본조례		

강원도 원주시

■ 국토·교통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2	원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아산, 여수	
3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4	원주시 건축조례		
5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	원주시 경관 조례		
7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	정읍	
8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9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포항, 창원, 청주	
10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11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12	원주시 공용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창원, 청주, 여수	
13	원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포항, 청주, 여수	
14	원주시 교통안전시설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

《부록》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5	원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6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17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18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9	원주시 도로복구 원인가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20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21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22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23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		
24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5	원주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조례		
26	원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27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28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9	원주시 지하수 조례		
30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창원	

4. 강원도 원주시

■ 산업·자원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원주시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2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3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4	원주시 부른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5	원주시 산업단지조례		
6	원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정읍, 여수	
7	원주시 에너지 조례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여수	
8	원주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차보조금 지급조례		
9	원주시 옷·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10	원주 옷·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
11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12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 조례		○
13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14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15	원주시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

《부록》 연구대상 조례 목록

■ 보건·복지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2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3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4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5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6	원주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창원	
7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		○
8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9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10	원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11	원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12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13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창원, 정읍	
14	원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15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16	원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17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4. 강원도 원주시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8	원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19	원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20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21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22	원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23	원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4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5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6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27	원주시 정신보건조례		
28	원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9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30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31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조례		
32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33	원주시 진폐제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34	원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조례		
35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36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록》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37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38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		

■ 농수축산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원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
2	원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		
3	원주시 공수의 예비조례		
4	원주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		
5	원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	원주시 농가경영기록유희력 제작·배부에 관한 조례		
7	원주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조례		
8	원주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포항	
9	원주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10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11	원주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 조례	여수	
12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4. 강원도 원주시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3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4	원주시 농촌지도자 실비보상조례		
15	원주시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16	원주시 동물보호조례	포항, 창원, 아산	
17	원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18	원주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19	원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		
20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		
21	원주시 정지플랜트고추장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22	원주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조례	아산	
23	원주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4	원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25	원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
26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7	원주푸드 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28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 조례		○
2	원주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3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4	원주시 국어 진흥 조례		
5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6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
7	원주시 문학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
8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9	원주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10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11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12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
13	원주시 삼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
14	원주시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15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포항, 창원, 청주, 여수	
16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	아산	
17	원주시 시시편찬위원회조례		

4. 강원도 원주시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8	원주열 함양을 위한 향토문화유산 등 답사 지원조례		○
19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
20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21	원주시 한국웃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		○
22	원주시 재단법인 원주국제따뚜 지원조례		○
23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4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25	원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26	원주시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		○
27	원주한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
28	원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29	원주형성문화정보센터 카나비 지원조례		○
30	재단법인 대한건기연맹 지원조례		○

■ 환경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부록》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2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3	원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4	원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운영조례		
5	원주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 징수조례		
6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7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8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아산	
9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검사·시험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10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 조례		
11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12	원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13	원주시 수도시설의 원인가부담금 징수조례		
14	원주시 수도물평가위원회조례		
15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16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17	원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18	원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19	원주시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20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4. 강원도 원주시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21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22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23	원주시 하수도 조례		
24	원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25	원주시 환경기분조례		
26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

경상북도 포항시

■ 국토·교통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포항시 건설공사의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		○
2	포항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3	포항시 건축 조례		
4	포항시 경관 조례		
5	포항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6	포항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7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8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9	포항시 교통안전 및 도시교통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
10	포항시 교통안전 조례		○
11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12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13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 조례		○
14	포항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5	포항시 도로복구비 원인지부담금 징수 조례		

《부록》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6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17	포항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18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19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20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1	포항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2	포항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정읍	
23	포항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24	포항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청주, 아산	
25	포항시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26	포항시 어린이 교통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
27	포항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
28	포항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29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30	포항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		○
31	포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32	포항시 지적제조사 등에 관한 조례		
33	포항시 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34	포항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창원	

■ 산업·자원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2	포항시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3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4	포항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5	포항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		○
6	포항시 소비자보호 조례		
7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8	포항시 에너지기본 조례		
9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육성 및 지원 조례		○
10	포항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11	포항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용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12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13	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14	포항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용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여수	○
15	포항시 지역경제협의회 운영 조례		
16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		○

■ 보건·복지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포항시 건강도시 조성 조례		
2	포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3	포항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4	포항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5	포항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정읍	
6	포항시 공연장 등의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조례		
7	포항시 공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8	포항시 공연지도원 운영 조례		
9	포항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
10	포항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11	포항시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12	포항시 노인 활동 보조기구 지원 조례		○
13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14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15	포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16	포항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17	포항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



5. 경상북도 포항시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8	포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19	포항시 성인 발달 장애인 교육 지원 조례		○
20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21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22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
23	포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24	포항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25	포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26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27	포항시 장애인상 조례		○
28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29	포항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30	포항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31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자금 운용 조례		
32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33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34	포항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5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 조례		
36	포항시 청소년지도 육성 및 지원 조례		

《부록》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37	포항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38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39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

■ 농수축산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2	포항시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조례		○
3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창원	
4	포항시 공수의 동원여비 지급 조례		
5	포항시 파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 관리 조례		○
6	포항시 귀농인 지원 조례		
7	포항시 나잠어업(해녀)보호 및 육성 조례		○
8	포항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9	포항시 농기계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10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11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창원, 청주, 정읍	

5. 경상북도 포항시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2	포항시 농업경영안정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창원	
13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14	포항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
15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16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7	포항시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
18	포항시 수리계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읍, 여수	
19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20	포항시 어업경영안정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
21	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22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23	포항시 포항 구룡포 파메기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		○

■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포항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부록》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3	포항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4	포항시 근림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여수	
5	포항시 근림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
6	포항시 문화예술킨흥조례		
7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8	포항시 민속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창원, 아산, 여수	
9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0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11	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주, 정읍	
12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창원, 청주, 정읍, 여수	
13	포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14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15	포항시 장두건미술상 운영 조례		○
16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정읍	
17	포항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8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19	포항시 체육진흥 조례		
20	포항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아산, 여수	
21	포항시 한옥구 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5. 경상북도 포항시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22	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 환경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2	포항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
3	포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4	포항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
6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7	포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창원, 아산, 정읍	
8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9	포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 평가 조례		
10	포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
11	포항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조례		
12	포항시 소음·먼지·악취 줄이기 실천 조례		
13	포항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창원, 청주, 아산, 정읍, 여수	

《부록》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4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15	포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16	포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17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18	포항시 자연경관보전 조례		
19	포항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
20	포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21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 조례		○
22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23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24	포항시 포항환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
25	포항시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
26	포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27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28	포항시 환경기본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 국토·교통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마산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유보 조례)근거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부칙 제 4 조 경과조치)		○
2	창원 도시계획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유보 조례)근거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부칙 제 4 조 경과조치)		○
3	창원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4	창원시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		○
5	창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체빙 책임에 관한 조례		
6	창원시 건축 조례		
7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8	창원시 경관 조례		
9	창원시 경차 우대 조례		○
10	창원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자 등 징수 조례		
11	창원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2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13	창원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부록》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4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15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6	창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17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18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19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20	창원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1	창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2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가부담금 징수 조례		
23	창원시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24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25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유보 조례)근거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부칙 제 4 조 경과조치)		○
26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27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적용허가에 관한 조례		
28	창원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조례		○
29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청주	
30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1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
32	창원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청주	



6. 경상남도 창원시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33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34	창원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35	창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36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37	창원시 시대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여수	
38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
39	창원시 시영임대주택 관리 조례		
40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41	창원시 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
42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43	창원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
44	창원시 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
45	창원시 제황산공원 케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46	창원시 종합버스터미널 운영 조례		○
47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48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설치 조례		○
49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50	창원시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및 추진단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51	창원시 지하수 조례		

《부록》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52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53	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54	창원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55	창원시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창주, 정읍, 여수	

■ 산업·자원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2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3	창원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여수	
4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5	창원시 소규모상가 육성 지원 조례		
6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7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8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9	창원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10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6. 경상남도 창원시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1	창원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12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13	창원시 중리공단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14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보건·복지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		
2	창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위원회 조례		
3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4	창원시 공공시설 내 취약자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5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6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7	창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8	창원시 내서·자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9	창원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10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부록》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1	창원시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 지원 조례		
12	창원시립 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3	창원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수	
14	창원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15	창원시민 복지 조례		○
16	창원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17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18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19	창원시 복지위원 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	창원시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1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2	창원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3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4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5	창원시 아동급식위원회 조례		
26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27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8	창원시 아동·여성인권에 관한 조례		
29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 경상남도 창원시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30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31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32	창원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여수	
33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34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
35	창원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36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청주, 아산	
37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38	창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39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40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41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42	창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43	창원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44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45	창원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청주, 정읍	
46	창원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조례		
47	창원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48	창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부록》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49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0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
51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52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53	창원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주	
54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55	창원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6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57	창원시 헌혈장려 조례		
58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

■ 농수축산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2	창원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3	창원시 귀산동 어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4	창원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 경상남도 창원시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5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6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7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8	창원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9	창원시 농수산물각관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0	창원시 농수특산물 창원물 운영 조례		○
11	창원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12	창원시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 운영 조례		
13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
14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15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6	창원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 조례	정읍	
17	창원시 양수기 대부 조례		
18	창원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주	
19	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20	창원시 후계농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사업자금 지원에 관한 용자 조례		

■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주, 아산	
2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3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4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5	창원시 김달진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6	창원시 내서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		○
7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8	창원시립 꿈두리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
9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
10	창원시립 마산문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		○
11	창원시립 마산음악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2	창원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13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14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15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16	창원시 문신미술상에 관한 조례		○
17	창원시 문화상 조례		



6. 경상남도 창원시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8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주	
19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21	창원시 문화유적 시설관리 운영 조례		○
22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3	창원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24	창원시 삼진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25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26	창원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27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28	창원시 응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29	창원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30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1	창원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		
32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
33	창원시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관리 운영 조례		○
34	창원시 진해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
35	창원시 진해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
36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부록》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37	창원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38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추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39	창원시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40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41	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		○

■ 환경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	창원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
3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
4	창원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5	창원시 녹색창원 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6	창원시 마을상수도에 관한 조례		
7	창원시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8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6. 경상남도 창원시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0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11	창원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12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
13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14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15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16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17	창원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8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
19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20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21	창원시 자연경관 보전 조례		
22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23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24	창원시 재활용품 상설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5	창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26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
27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28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

《부록》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29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30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31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32	창원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33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34	창원시 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35	창원시 환경경영 기업대상 조례		○
36	창원시 환경기본 조례		
37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		○

충청북도 청주시

■ 국토·교통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청원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2	청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창원, 아산	
3	청주시 건축 조례		
4	청주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
5	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7	청주시 경관 조례		
8	청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
9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10	청주시 공공(도시)개발사업 편입지역 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11	청주시 공동구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여수	
12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13	청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14	청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5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부록》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6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17	청주시 대중교통정책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8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19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20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21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22	청주시 도시개발 조례		
23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24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25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6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아산	
27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28	청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29	청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관한 조례		
30	청주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31	청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32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33	청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34	청주시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7. 충청북도 청주시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35	청주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36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37	청주시 주차장 조례		
38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39	청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40	청주시 지하수 조례		
41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여수	
42	청주시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43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 산업·자원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3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4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정읍, 여수	

《부록》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5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6	청주시 상생발전방안 이행에 관한 조례		
7	청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8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9	청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10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11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12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13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14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15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 보건·복지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2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7. 충청북도 청주시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3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5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6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7	청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8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9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0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11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읍	
12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
13	청주시 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14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15	청주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16	청주시 보육 조례		
17	청주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18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19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20	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21	청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록》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22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23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4	청주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25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		
26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27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28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29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30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
31	청주시 장애인 자립자금 이차차액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
32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33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34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35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36	청주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37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38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39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40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7. 충청북도 청주시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41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42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43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4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
45	청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6	청주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7	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정읍	
48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49	청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50	청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51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
52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53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아산	
54	청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55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56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농수축산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청원군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2	청주시 귀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3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4	청주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5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6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7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 조례		
9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0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1	청주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12	청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3	청주시 우수농수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14	청주시 주민소득사업자금 운용·관리 조례		○
15	청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청주시 1인 1책 보내기 운동 지원 조례		○
2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3	청주시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4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5	청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조례		
6	청주시 금속활자 구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7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8	청주시 명암관망탑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9	청주시 명암보트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10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11	청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산	
12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13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 조례		
14	청주시 문화예술시설 관리·운영 조례		
15	청주시 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16	청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		
17	청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정읍	

《부록》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8	청주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19	청주시 배척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20	청주시 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21	청주시 옹기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아산	
22	청주시 유네스코 직지상 지원 조례		○
23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4	청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		
25	청주시 직지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
26	청주시 직지세계화 사업 및 교육·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27	청주시 직지의 날 조례		○
28	청주시 직지찾기운동 지원사업 운영 조례		○
29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30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
31	청주시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32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33	청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34	청주시 총렬사 관리 조례		○
35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정읍	
36	청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7. 충청북도 청주시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37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		○
38	청주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 환경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3	청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4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관리 조례		○
5	청주시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6	청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7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8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9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10	청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11	청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부록》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2	청주시 수질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13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14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15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16	청주시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17	청주시 중수도 운영조례		○
18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19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0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21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22	청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23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24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		
25	청주시 환경대상 운영 조례		○



충청남도 아산시

■ 국토·교통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아산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
2	아산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
3	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4	아산시 건축 조례		
5	아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6	아산시 경관 조례		
7	아산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8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	아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10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11	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12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13	아산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14	아산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15	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부록》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6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17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18	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9	아산시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
20	아산시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
21	아산시 범곡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22	아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23	아산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24	아산시 부설공사 방지 조례		
25	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26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27	아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28	아산시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29	아산시 안전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30	아산시 여객자동차 스마일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31	아산시 용화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
32	아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관리·운영 조례		
33	아산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34	아산시 주차장 조례		

8. 충청남도 아산시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35	아산시 주택 조례		
36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37	아산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38	아산시 지하수 조례		

■ 산업·자원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아산시 기술연구집단지원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
2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3	아산시 기업인 애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4	아산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5	아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6	아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
7	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8	아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9	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10	아산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부록》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1	아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12	아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3	아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중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14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15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 보건·복지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아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2	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3	아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4	아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5	아산시 건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6	아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7	아산시 공공시설 내 취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및 설치·운영 조례		
8	아산시 공공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

8. 충청남도 아산시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9	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10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11	아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12	아산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13	아산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서비스 지원 조례		
14	아산시 발달 및 정신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15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16	아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17	아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8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19	아산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20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1	아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22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23	아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4	아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5	아산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26	아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27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부록》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29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29	아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30	아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31	아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32	아산시 장애인권 및 장애극복상 조례		○
33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4	아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35	아산시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36	아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37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가구 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		○
38	아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39	아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40	아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41	아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42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43	아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44	아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45	아산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6	아산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8. 충청남도 아산시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47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48	아산시 치매관리·지원 조례		
49	아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50	아산시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51	아산시 홀로사는 노인 교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52	아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농수축산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
2	아산시 3 동력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3	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
4	아산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5	아산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6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
7	아산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8	아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

《부록》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9	아산시 농어촌주택사업비 이자 특별지원 조례		○
10	아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		
11	아산시 농업기반공사구역 외 수리시설물 관리 조례		○
12	아산시 농업대상 조례		○
13	아산시 농업용 시설하우스 재해피해농가 용자금 이자 지원 조례		○
14	아산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15	아산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정읍	
16	아산시 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정읍	
17	아산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18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
19	아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1	아산시 법정전염병 피해 축산농가 재할지원에 관한 조례		○
22	아산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 지원 조례		○
23	아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24	아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25	아산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26	아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7	아산시 용기 및 발효음식 전신·체험관 설치운영 조례		



8. 충청남도 아산시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28	아산시 축산업육성 및 조사료생산지원에 관한 조례		○
29	아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아산 코미디홀 설치·운영 조례		○
2	아산시 관광발전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아산시 관광진흥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4	아산시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5	아산시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6	아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7	아산시 무형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	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	아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10	아산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11	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2	아산시 온양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부록》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3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 관람료 징수 조례		○
14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보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5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시설물 등 사용허가에 관한 조례		○
16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저장거리 운영 조례		○
17	아산시 은행나무길 문화시설 설치·운영 조례		○
18	아산시 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9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20	아산시 체육진흥 조례		
21	아산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2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23	은양운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

■ 환경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2	아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3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8. 충청남도 아산시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4	아산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5	아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6	아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7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8	아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9	아산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10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11	아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12	아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13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영 조례		○
14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15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16	아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17	아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18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19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21	아산시 환경 기본 조례		
22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

《부록》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23	아산시 환경기초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4	아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

## 전라북도 정읍시

■ 국토·교통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정읍시 건축 조례		
2	정읍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3	정읍시 견인자동차운영 조례		
4	정읍시 경관 조례		
5	정읍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6	정읍시 공공디자인 조례		
7	정읍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	정읍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9	정읍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10	정읍시 도로부속물손괴자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
11	정읍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12	정읍시 도시가꾸기협의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3	정읍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14	정읍시 도시개발 조례		
15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부록》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6	정읍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17	정읍시 복지택시 운영 조례		
18	정읍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19	정읍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20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21	정읍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22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
23	정읍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24	정읍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25	정읍시 자연취락 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
26	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
27	정읍시 주차장 조례		
28	정읍시 주택 조례		
29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9. 전라북도 정읍시

■ 산업·자원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2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3	정읍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4	정읍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	정읍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지급 조례		
6	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7	정읍시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8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9	정읍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보건·복지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부록》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2	정읍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3	정읍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4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5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
6	정읍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7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8	정읍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9	정읍시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0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1	정읍시 노인전문병원설치 및 운영 조례		
12	정읍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13	정읍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운영 조례		
14	정읍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5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16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17	정읍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18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19	정읍시 실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0	정읍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 전라북도 정읍시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21	정읍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2	정읍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23	정읍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수	
24	정읍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25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6	정읍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7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8	정읍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
29	정읍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30	정읍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31	정읍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32	정읍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33	정읍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4	정읍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35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36	정읍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7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38	정읍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
39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 농수축산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정읍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2	정읍시 BM 활성화 생산시설 운영·관리 조례		○
3	정읍시 구절초축재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
4	정읍시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		
5	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		
6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7	정읍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8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9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10	정읍시 농업기계순회수리 봉사반설치운영 조례		
11	정읍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
12	정읍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13	정읍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14	정읍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조성에 관한 조례		○
15	정읍시 농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
16	정읍시 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7	정읍시 농촌 소득기반시설 운영관리 조례		○

9. 전라북도 정읍시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8	정읍시 농촌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19	정읍시 농촌용수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20	정읍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21	정읍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22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관매장 운영관리 조례		○
23	정읍시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
24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품질 및 상표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
25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전시판매장 관리·운영 조례		○
26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 조례		○
27	정읍시 단풍미인쌀 품질관리 조례		○
28	정읍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9	정읍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30	정읍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
31	정읍시 수리계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2	정읍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33	정읍시 실증시험연구포 및 첨단과학영농시설 설치 조례		
34	정읍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35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
36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

《부록》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37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
38	정읍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39	정읍시 후계농업인 융자금이자에 대한 보조금지급 조례		
40	정읍시 힐링푸드센터(Healing Food Center) 설치 및 운영 조례		○

■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백제가요 정읍시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		○
2	정읍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 조례		○
3	정읍선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
4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운영 조례		○
5	정읍시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6	정읍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7	정읍시 구과백정기 의사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8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9	정읍시 국어 진흥 조례		
10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9. 전라북도 정읍시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1	정읍시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 진흥 지원 조례		○
12	정읍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3	정읍시 문화의 집관리운영 조례		
14	정읍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15	정읍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16	정읍시 수계천보존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17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18	정읍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 조례		
19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 조례		○
20	정읍시 역사·문화마을 육성지원 조례		○
21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22	정읍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23	정읍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24	정읍시 전통공예관 운영 조례		
25	정읍시 정읍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26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 조례		○
27	정읍시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
28	정읍시 청소년문화체육관 관리·운영 조례		
29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부록》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30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31	정읍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2	정읍시 칠보물테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		○
33	정읍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34	정읍시 향토현수련원 운영조례		○
35	정읍시 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36	정읍시 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37	정읍시 민예슬촌 설치 및 운영 조례		○

■ 환경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	정읍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3	정읍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4	정읍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5	정읍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 조례		

9. 전라북도 정읍시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6	정읍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8	정읍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9	정읍시 수도시설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조례		
10	정읍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11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12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13	정읍시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14	정읍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파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15	정읍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16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18	정읍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		
19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20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 국토·교통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2	여수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3	여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4	여수시 건축 조례		
5	여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6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7	여수시 경관 조례		
8	여수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9	여수시 공동구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10	여수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11	여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12	여수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13	여수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14	여수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5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부록》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6	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17	여수시 도로공사 원인가 부담금 징수 조례		
18	여수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19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20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21	여수시 도시계획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
22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23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4	여수시 동상 등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25	여수시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26	여수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27	여수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28	여수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29	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30	여수시 여서·문수지구도시개발사업택지공급 조례		○
31	여수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
32	여수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33	여수시 주차장 조례		
34	여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10. 전라남도 여수시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35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36	여수시지구 토지구획정리분담금 부과·징수 조례		○

■ 산업·자원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여수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조례		
2	여수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3	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4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5	여수시 소비자보호 조례		
6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7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8	여수시 에너지 기본 조례		
9	여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11	여수시 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12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부록》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3	여주시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14	여주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15	여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16	여주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

■ 보건·복지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2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3	여주시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4	여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5	여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6	여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7	여주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8	여주시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9	여주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10. 전라남도 여수시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0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		○
11	여수시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		
12	여수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3	여수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14	여수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15	여수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16	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17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18	여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19	여수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20	여수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21	여수시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2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23	여수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24	여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5	여수시 읍·면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26	여수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27	여수시 의사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8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부록》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29	여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30	여수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31	여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32	여수시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 조례		
33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34	여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35	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36	여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37	여수시 지역보건법위반자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38	여수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39	여수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0	여수시 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		
41	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		
42	여수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43	여수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44	여수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45	여수시 희망복지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

■ 농수축산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2	여수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3	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4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5	여수시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6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		
7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
8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9	여수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10	여수시 농업체험학습장 운영 조례		○
11	여수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12	여수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3	여수시 돌산갭 육성 및 특산단지 운영 조례		○
14	여수시 수리개 관리 조례		
15	여수시 종자산업육성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16	여수시 청정농수산물등록상표 사용 관리 조례		○
17	여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여수민속진시관 관리 운영 조례		
2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3	여수시 관광홍보달력 제작·배부에 관한 조례		
4	여수시 국립공원 관리 조례		○
5	여수시 콜전 여기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6	여수시 금오도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7	여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8	여수시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		
9	여수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10	여수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11	여수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		○
12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
13	여수시 여수거북신호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
14	여수시 예술인촌 설치 및 운영 조례		
15	여수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6	여수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17	여수시 전라좌수영거북신 관리 및 운영 조례		○

10. 전라남도 여수시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8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19	여수시 체육진흥 조례		
20	여수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21	여수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2	여수시 특산품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23	여수시 평화테마촌 운영 및 관리 조례		○
24	여수시 하멜전시관 운영 조례		○
25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26	여수시립예술훈단 설치 조례		
27	여수시민의 노래 및 찬가에 관한 조례		○

■ 환경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여수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2	여수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3	여수시 상수도 원인지부담금 징수 조례		



《부록》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4	여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5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6	여수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7	여수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8	여수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9	여수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10	여수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11	여수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12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13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14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15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16	여수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17	여수시 환경기본 조례		